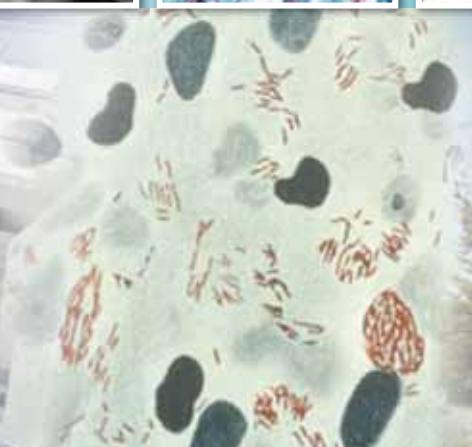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159-000596-10

2017 한센사업 지침

<http://www.cdc.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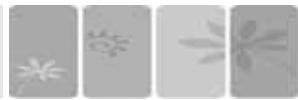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7년 한센 관련 민간경상보조사업 관리지침 주요 개정사항

2016년	2017년																														
<p>다. 서비스의 원칙</p> <p>가) 신규 요치료자</p> <p>② <u>과거 자가 치료 등으로 치유된 자가 재발하여 한센병 치료가 필요한 자</u></p>	<p>다. 서비스의 원칙</p> <p>가) 신규 요치료자</p> <p>② <u>재발한자</u></p>																														
<p>마) 현황 보고</p> <p>②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은 한센병이동진료반당일 활동보고(제7호 서식)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u>제4조</u>에 의한 한센병환자 발생신고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한다.</p>	<p>마) 현황 보고</p> <p>②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은 한센병이동진료반당일 활동보고(제7호 서식)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u>제11조</u>에 의한 한센병환자 발생신고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한다.</p>																														
<p>나.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p> <p>3) 행정 사항</p> <p><u>신설</u></p>	<p>나.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p> <p>3) 행정 사항</p> <p>○ <u>간이양로주택 생활 불편 시설(도배, 장판, 수도 등)은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u></p>																														
<p>2.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p> <p>나. 지원대상</p> <p>○ 한센사업대상자 중 <u>생계급여, 의료급여</u>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p> <p>※ <u>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피부양자를 가구수에 포함하여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u></p> <p><u>신설</u></p>	<p>2.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p> <p>나. 지원대상</p> <p>○ 한센사업대상자 중 <u>생계급여와 의료급여</u>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p> <p>※ <u>피부양자³⁾가 있는 경우, 피부양자를 가구 수에 포함하여 소득 및 재산조사 실</u></p> <p>3) <u>피부양자: 근로능력이 없어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법령상 19세 이하 60세 이상의 남자와 19세 이하 50세 이상의 여자</u></p>																														
<p>사. 소득 및 재산 조사 실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1인가구</th> <th style="text-align: center;">2인가구</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u>2016년 중위소득(원/월)</u></td> <td style="text-align: center;"><u>1,624,831</u></td> <td style="text-align: center;"><u>2,766,603</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u>생계비지율기준</u></td> <td style="text-align: center;"><u>974,899</u></td> <td style="text-align: center;"><u>1,659,962</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u>2015년 최고재산액(원)</u></td> <td style="text-align: center;"><u>69,585,909</u></td> <td style="text-align: center;"><u>80,538,158</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u>생계비지율기준</u></td> <td style="text-align: center;"><u>104,378,863</u></td> <td style="text-align: center;"><u>120,807,237</u></td> </tr> </tbody> </table>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u>2016년 중위소득(원/월)</u>	<u>1,624,831</u>	<u>2,766,603</u>	<u>생계비지율기준</u>	<u>974,899</u>	<u>1,659,962</u>	<u>2015년 최고재산액(원)</u>	<u>69,585,909</u>	<u>80,538,158</u>	<u>생계비지율기준</u>	<u>104,378,863</u>	<u>120,807,237</u>	<p>사. 소득 및 재산 조사 실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1인가구</th> <th style="text-align: center;">2인가구</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u>2017년 중위소득</u></td> <td style="text-align: center;"><u>1,652,931원</u></td> <td style="text-align: center;"><u>2,814,449원</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u>생계비지율 소득기준</u></td> <td style="text-align: center;"><u>991,759원</u></td> <td style="text-align: center;"><u>1,688,669원</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u>2017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u></td> <td style="text-align: center;"><u>69,855,453원</u></td> <td style="text-align: center;"><u>80,997,113원</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u>생계비지율 재산기준</u></td> <td style="text-align: center;"><u>104,783,180원</u></td> <td style="text-align: center;"><u>121,495,669원</u></td> </tr> </tbody> </table>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u>2017년 중위소득</u>	<u>1,652,931원</u>	<u>2,814,449원</u>	<u>생계비지율 소득기준</u>	<u>991,759원</u>	<u>1,688,669원</u>	<u>2017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u>	<u>69,855,453원</u>	<u>80,997,113원</u>	<u>생계비지율 재산기준</u>	<u>104,783,180원</u>	<u>121,495,669원</u>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u>2016년 중위소득(원/월)</u>	<u>1,624,831</u>	<u>2,766,603</u>																													
<u>생계비지율기준</u>	<u>974,899</u>	<u>1,659,962</u>																													
<u>2015년 최고재산액(원)</u>	<u>69,585,909</u>	<u>80,538,158</u>																													
<u>생계비지율기준</u>	<u>104,378,863</u>	<u>120,807,237</u>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u>2017년 중위소득</u>	<u>1,652,931원</u>	<u>2,814,449원</u>																													
<u>생계비지율 소득기준</u>	<u>991,759원</u>	<u>1,688,669원</u>																													
<u>2017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u>	<u>69,855,453원</u>	<u>80,997,113원</u>																													
<u>생계비지율 재산기준</u>	<u>104,783,180원</u>	<u>121,495,669원</u>																													
<p>④ 조사결과의 처리</p> <p>- 대상 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통지</p> <p><u>신설</u></p>	<p>④ 조사결과의 처리</p> <p>- 대상 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통지</p> <p>※ <u>(통지기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u></p>																														

※ 매년 지침 검토 및 개정 작업을 실시하였음

차 례



I. 한센사업 기본 방향	1
1. 목 표	3
2. 한센사업 기본방침	4
3. 한센사업 관리체계도	5
II. 한센병 의료관리	13
1. 신환자발견(Case Finding)사업	15
2. 한센사업 대상자 서비스(Case Holding)	20
3. 유입 감염원에 대한 관리 대책	28
4. 한센병 진단과 치료	29
5. 한센병 전문진료기관의 입·퇴원관리	45
6.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	47
III. 한센사업 대상자 사회복지	51
1.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53
2.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60
3. 정착마을 관리	96
4. 재가 한센사업 대상자 관리	97
5.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환수	98
IV. 한센생활시설 운영(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름)	99
1. 한센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등 종사자 관리	101
2. 한센생활시설 운영 개선	115
3. 한센생활시설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133

V. 홍보·연구 등 한센병 관련사업	137
1. 홍보	139
2.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 등	141
VI. 한센사업협의회 운영 지침	143
1. 목적	145
2. 중앙 및 지역 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법	145
3. 치료(MDT)종결 협의 판정 세부지침(지역협의회 시행사항)	147
VII. 한센병관리 교육훈련 계획	151
1. 목적	153
2. 기본방향	153
3. 2017년도 교육훈련 세부계획	157
VIII. 참고자료	161
1. 진료기관별 한센사업 분담표	163
2. 보고체계 및 한센사업 관련서식	165
3.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지원 사업	225
4. 한센병 관련기관·시설·단체의 명칭 및 주소지 등	237
5. 한센병 관련용어	246

I

한센사업 기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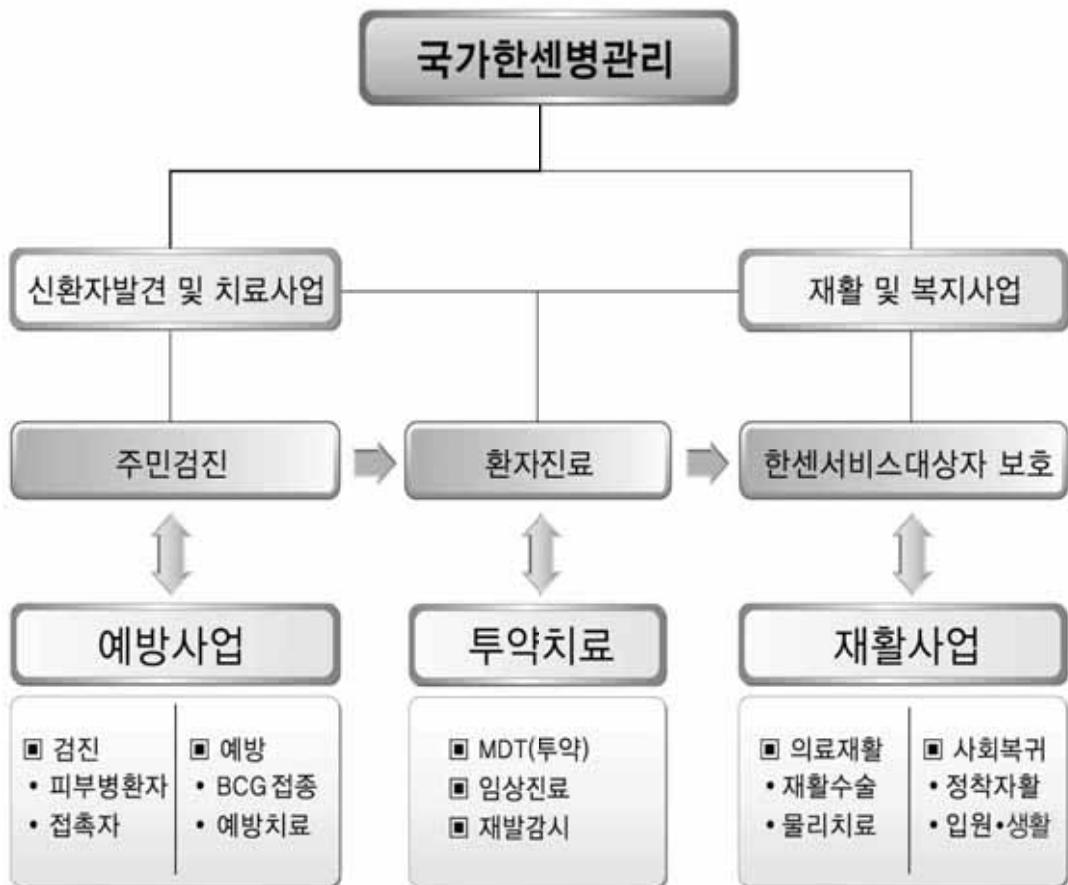
2017년 한센사업 지침

1. 목표
2. 한센사업 기본방침
3. 한센사업 관리체계도

I. 한센사업 기본 방향

1. 목표

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한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유지하고, 한센 사업 대상자에 대한 투약치료, 재발 관리, 장애예방, 재활치료, 생계지원 등 의료 및 복지지원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조기 복귀 도모



2. 한센사업 기본방침

가. 국가한센사업

- 한센사업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한센병을 퇴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한센병 환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고·관리하며 치료(MDT: multidrug therapy) 종결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에서 제외된다.
 - 한센병이 치유된 한센서비스대상자에 대해서는 재발 예방, 후유증치료, 재활 사업, 생계 지원 등 복지차원의 보호를 한다.

나. 한센사업 개관

1) 한센병 관리

- 가) 신환자 발견사업 강화
 - ① 피부질환자 검진
 - ② 환자 가족이나 접촉자에 대한 검진
 - ③ 발생률 및 유병률이 높은 지역의 주민 검진
- 나) 한센사업대상자 진료 및 한센병 연구
 - ① 한센사업대상자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 ② 병형별 다제요법(MDT)에 의한 요치료자 중점관리
 - ③ 약제내성 및 재발환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
 - ④ 한센병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의 사전 예방
 - ⑤ 국제학술교류 및 연구활동을 통한 진료기술 개선 등

2) 재활 및 복지사업

- 가) 재활사업
 - ① 손상된 신체 부위에 대한 재활 수술(한센병전문진료기관)
 - ② 약화된 신체 기능 회복을 위한 물리요법, 각종 보장구 등 제공 등
- 나) 사회복지 지원
 - ① 노동력 감퇴·상실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및 지원
 - ② 무의무탁 한센장애인·한센양로자를 위한 생활시설의 지원수준 향상 및 기능 보강
 - ③ 정착마을 자립기반 확충
 - ④ 한센인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지원 등
 - ⑤ 한센인 사회복지센터 운영지원

3) 교육과 홍보사업

가) 홍보사업 강화

- ① 한센인 인권 및 한센병 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사업
- ② 한센병 관련 학회 및 피부과 진료과목이 있는 병·의원, 약국 등을 통한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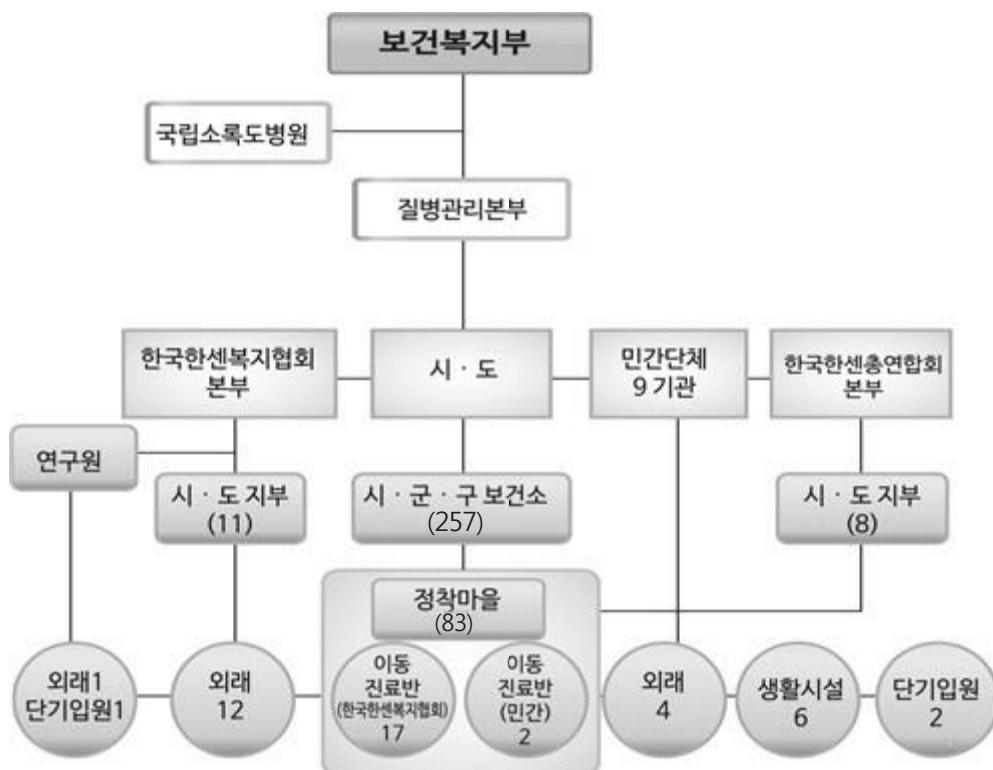
나) 전문기술인력 교육훈련 강화

- ① 한센병 전문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 ② 한센병 퇴치를 위한 최신 진단기법, 치료 등의 진료기술 중점 교육
- ③ 한센인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 내용 강화

다) 국제교류 등

- ① 국제학술교류 및 연구 활동을 통한 한센병 관련 진료기술 개선
- ② 자료 분석 등에 의한 한센사업의 재조명
- ③ 국가 간 정보교환을 통해 한센인을 위한 복지정책 수립에 기여

3. 한센사업 관리체계도



가. 기관별 주요업무

1) 보건복지부

- 가) 한센사업 관련정책의 종합·조정 및 법령의 제·개정
- 나) 국립소록도병원의 지원·육성
- 다) 한센사업관련 법인·단체의 지원, 정관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
- 라)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

2) 질병관리본부

- 가) 한센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나) 한센병관리를 위한 소요약품 수급계획 수립 및 조정
- 다) 시·도 및 한센사업관련단체 지도·감독
- 라) 한센사업관련단체 및 민간전문진료기관에 대한 지원

3) 시·도 보건(위생·정책)과

- 가) 시·도 한센사업의 계획수립
- 나) 한국한센복지협회 및 한국한센총연합회 시·도 지부에 대한 사업비 보조 및 지도·감독
- 다) 사회복지법인 및 민간 한센병전문진료기관 지도·감독
- 라) 한센사업대상자 관련 사회복지 미인가 시설의 보건 증진을 위한 지도·감독
- 마) 정착마을의 보건증진을 위한 지도·감독 등

4) 시·군·구 보건소

- 가) 관내 한센사업 기관에 대한 지원·지도
- 나) 신환자발견사업 및 한센사업대상자의 정기검진
- 다) 한센사업대상자 명부 관리
- 라) 한센사업대상자 정기진료일 홍보
- 마) 재가치료가 어려운 한센사업대상자는 단기 또는 장기입원시설에 입원 조치
- 바) 무의무탁 한센양로자 및 한센장애인 등에 대한 시설생활 조치
- 사) 정착마을의 보건증진을 위한 관리 및 지도·감독
- 아) 한국한센복지협회 시·도 지부의 이동진료에 대한 진료비 보조 등 한센병 이동진료반 활동 지원 및 협조
- 자) 재가 한센인 등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

5) 국립소록도병원

- 가) 한센사업대상자 등의 전문적 진료 및 진료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 나) 한센사업대상자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후생 및 복지사업 수행
- 다) 한센사업대상자 등의 자활 정착을 위한 지도와 지원
- 라) 자원봉사자의 교육과 관리

6) 한국한센복지협회

가) 본부 및 연구원

- ①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
- ② 한센병에 관한 교육 · 홍보 및 조사연구
- ③ 한센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
- ④ 한센병에 관한 국제적 학술교류 및 협력 지원
- ⑤ 한센사업에 관한 기술 훈련
- ⑥ 난치성 한센사업대상자의 입원 치료
- ⑦ 한센사업대상자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강구
- ⑧ 일반 피부과 환자의 검진 및 치료
- ⑨ 한센병이동진료사업 총괄, 외래진료, 장 · 단기입원에 관한 사업
- ⑩ 기타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 또는 지시를 받은 사업

나) 지 부

- ①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
- ② 한센병에 관한 교육 · 홍보 및 조사 연구
- ③ 한센병이동진료, 외래진료
- ④ 이동진료 관할지역 정착마을, 한센시설에서의 진료
- ⑤ 일반 피부과 환자의 검진 및 치료
- ⑥ 시 · 도 및 보건소의 한센담당자, 정착마을 보건요원에 대한 기술 지도
- ⑦ 관내 민간 한센병전문진료기관 등과의 사업 협조
- ⑧ 시 · 도 보건(위생 · 정책)과와 업무 협조
- ⑨ 한센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사회복귀사업 등

7) 한국한센총연합회

가) 본부

- ① 한센사업대상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 ② 축산기술 보급 및 교육
- ③ 축산물 냉동저장 사업, 난가공 및 육가공 공장 운영 등 정착마을 생산물의 공동판매 · 유통망 개척
- ④ 정착마을 분규조정 및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 계몽
- ⑤ 부랑 한센사업대상자 지도
- ⑥ 한센사업대상자들의 진료참여 보조 및 교육 · 홍보
- ⑦ 한센사업대상자들의 인권회복 및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 ⑧ 양로시설(실버타운) 건립운영, 한센사업대상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시설 운영, 한센인 사회복지센터 운영지원

- ⑨ 재가환자 및 한센 서비스 대상자 2세들을 위한 복지사업
- ⑩ 한센병으로 인한 장애인의 직업재활 관련 수의사업 등 장애인 복지사업
- ⑪ 국제교류사업
- ⑫ 기타 주무부장관이 지시하는 사업 등

나) 지부

- ① 한센사업대상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 ② 정착마을 분교조정 및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 계몽
- ③ 부랑 한센사업대상자 지도
- ④ 한센사업대상자들의 진료참여 보조 및 교육·홍보
- ⑤ 한센사업대상자들의 인권회복 및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 ⑥ 간이양로주택 건립운영
- ⑦ 재가환자 및 한센 서비스 대상자 2세들을 위한 복지사업
- ⑧ 기타 본부가 지시하는 사업 등

8) 민간 한센병전문진료기관

- 가) 외래진료소에서의 환자발견을 위한 진료사업
- 나) 한센병이동진료반 관할 지역의 보건소 한센사업에 관한 기술지도 및 실무 협조
- 다) 한센병에 대한 계몽·교육사업
- 라) 한센병 담당자 및 간호조무사의 기술지도
- 마) 관내 민간 한센병전문진료기관 등 관련단체와의 유대
- 바) 한센사업대상자를 위한 복지사업
- 사) 한국한센복지협회 및 한국한센총연합회 시·도 지부와 업무유대 강화 등

9) 한센생활시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한센장애인 등 무의무탁 한센사업대상자의 생활보호 및 진료

나. 한센병관리자

1) 한센병관리 지도의사

- 가) 중앙지도의사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지명 위촉하며, 지역지도의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나) 지역지도의사는 전국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 근무하는 한센병관리의사 중에서 질병관리본부장이 한국한센복지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 ① 자격 기준(중앙 및 지역지도 의사)

- 한센병관리 사업에 수년간의 임상경험이 있는 전문의자격을 가진 자
- 한국한센복지협회에서 의사반 교육을 이수하고 임상경험이 있는 의사

② 임무

- 지역 내 한센병 이동진료반 활동과 각 시·군·구 보건소 및 한센병 관련 기관의 한센병관리 진료업무 지도
- 일선 한센병 사업수행에 문제점 발생 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중앙지도의사에게 보고
다) 한센병관리 지도의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로 인해 위촉된 의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보건소 한센병담당자

- 가) 보건소장의 지도·감독 하에 한센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나) 지역 내 재가 및 정착마을의 한센사업대상자의 명부를 비치한다.
- 다) 지역담당 한센병 관리의사의 기술적 지도를 받아 한센병이동진료반의 진료 업무를 지원한다.
- 라) 각종 지역사회단체의 협조를 얻어 한센병에 대한 교육 및 환자발견에 노력 한다.
- 마) 한센병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거나 관련정보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검진을 받도록 조치한다.

3) 정착마을 보건요원

- 가) 정착마을 거주자 중 건강 이상자 발견 시 지역 병·의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나) 한센사업대상자의 치료에 관하여 보건소장이나 한센병 이동진료반장이 위임한 한센병 치료약품·보조약품의 전달 및 확인투약을 보조한다.
- 다) 정착마을 주민의 변동에 따른 상황을 파악하여 지역지도의사의 활동을 돋는다.
- 라) 이동진료반의 정기 진료일에 한센사업대상자를 진찰·진료에 참여토록 한다.
- 마) 임용 및 배치
 - ① 보건요원은 정착마을 주민 중에서 의료에 관한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나 정착마을관리에 관심이 많은 자 중 정착마을 대표자가 추천한 자를 한국한센총연합회장이 임명한다.
 - ② 정착마을마다 1인을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수가 200명 이상인 곳은 추가 200명마다 1인의 보건요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 ③ 한국한센총연합회장은 보건요원 임명 시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며, 매년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선도요원

- 가) 주거가 불분명한 한센인의 선도 사업
- 나) 불법행위 단속 및 계몽
- 다) 자활정착생활 방해자 지도
- 라) 한국한센총연합회의 업무 보조
- 마) 임용 및 배치
 - ① 신규 임용 대상
 - 생활이 안정된 한센 서비스 대상자 및 정착마을 거주자
 - 한국한센총연합회 임직원 중 관련업무 종사자
 - ② 한국한센총연합회 시·도지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한국한센총연합회장이 임명한다.
 한국한센총연합회장은 매년 1회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각 시도별로 업무량을 감안하여 1~5명을 임용한다.

다. 진료기능별 한센사업

1) 이동진료반

가) 구성

- ① 한국한센복지협회 시·도지부는 시·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지역에 대한 한센병진료와 관련된 임무수행을 위해 민간 한센병전문진료기관과 협의 하여 이동진료반을 구성·운영한다.
- ② 이동진료반은 의사를 중심으로 환자진료와 주민검진에 필요한 요원으로 구성한다.
 - 진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한센병치료 전문 의료인을 포함시킨다.

나) 사업수행 방법

- 이동진료반은 보건소와 협의하여 정기방문 출장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진료업무를 수행한다.
 - 보건소 및 정착마을에 대해 월1회 출장·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 조정·시행할 수 있다.

다) 임무

- ① 시·군·구 보건소에 출장하여 한센사업 지원 및 진료
- ② 보건소에 출장하여 재가 한센사업대상자 진료 및 유병률이 높은 지역 주민에 대한 검진 실시
- ③ 정착마을에 출장하여 마을대표 및 보건요원의 협조를 받아 한센사업대상자 투약 및 진료
- ④ 정착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검진

- ⑤ 이동진료 시 장애인 재활관리사업
- ⑥ 한센병 후유증 예방 및 노인성 질환 등에 대한 서비스
- ⑦ 거동이 불편한 자 등에 대하여는 가정방문 진료 수행
- ⑧ 신규환자 발생 시 접촉자에 대한 검진

라) 행정사항

- 현지 이동진료 시 진료와 관련된 모든 조치는 이동진료반장이 결정하며 진료 당일 아래 사항을 보건소에 보고한다.
 - 한센병이동진료반 당일 활동보고 (제7호 서식)
 - 한센사업대상자 명부 공동 정리
 - 미치료자에 대한 조치
 - 보건소 한센병담당자에게 미치료자에 대한 조치(방문투약, 처치 등)를 시행토록 하고, 조치한 사항을 병력지에 기록한다.
 - 다음달 진료 시에는 기 조치 사항의 이행실적을 확인하여 병력지에 기록한다.

2) 외래진료소

- 가) 신환자발견, 한센사업대상자 진료, 재활수술 등의 사업 수행
- 나) 신환자 발견사업 및 정밀진찰은 외래 한센병 관리사업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한센사업대상자에 대한 적정한 서비스와 재발 예방 등의 업무 수행
- 장애인에 대한 재활사업
- 한센병 후유증 예방 및 노인성 질환 등에 대한 서비스

3) 단기입원시설

양성환자, 나반응환자, 후유증 및 병발증 등의 질환으로 재가치료가 어려운 한센사업대상자를 위한 단기 입원치료시설
(한국한센복지협회 연구원, 여수애양병원, 가톨릭피부과의원 등)

4) 입원 · 생활시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재가치료나 지역의 단기입원시설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기 어려운 한센 사업 대상자를 장기적으로 치료하고 생활하는 시설
(국립소록도병원 및 민간한센생활시설)

II

한센병 의료관리

2017년 한센사업 지침

1. 신환자발견(Case Finding)사업
2. 한센사업대상자 서비스(Case Holding)
3. 유입 감염원에 대한 관리 대책
4. 진단과 치료
5. 한센병 전문진료기관의 입·퇴원관리
6.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

II. 한센병 의료관리

1. 신환자발견(Case Finding)사업

가. 목적

- 한센병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하게 치료함으로써 한센병 전파방지 및 장애 예방

나. 대상자

- 한센병전문진료기관 외래 수진자
- 의료기관 및 피부과 병·의원 수진자 등
- 한센병환자와 접촉이 많거나, 유병률이 높은 지역 거주자

다. 환자발견 수단

- 피부병소 및 병원체를 가진 피부병 환자 검진
- PGL-I 항체검사(크로마토그래피법, ELISA법) 등 면역검사 결과 분석에 의한 접촉 여부 판단 및 유병지역 검진

라. 의료단체의 역할

- 모든 의료인과 의료단체는 한센병전문진료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여 신환자 발견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 1차 공중보건망(시·군·구 보건소)
 - 한센병전문진료기관(국립소록도병원 등 22개)
 - 일반 의료기관(피부과 등에 근무하는 의료인)
 - 기타 약국 등

마. 사업수행 방법

1) 이동진료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의 이동진료반과 보건소 한센병담당자가 협의하여 시행
하되 인권을 침해하거나 강제적인 검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가) 접촉이 뚜렷한 가족 등 특정인 검진

- 본인 또는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검진한다.

나) 접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웃, 친지 등의 준 특정인 검진

- 지역단위로 “일반인 건강검진 무료서비스”등의 행사를 마련하여 실시하되,
한센사업대상자의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정착마을을 제외한 소규모의 일반 지역의 검진은 유병률이 유의하게 높은
경우에 실시한다.

다) 접촉이 불분명한 일반시민 등 불특정 다수인 검진

- 학술적인 표본조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2) 외래진료

-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이 외래진료소를 통한 일반주민 검진 및 참여유도
- 피부병변 또는 신경손상과 관계되는 한센병 유사 질병 감별진단

3) 의료기관 협력 한센병 진단

- 한센병 진단이 곤란한 의료기관은 한국한센복지협회(연구원)에 한센병 진단
(확진) 의뢰 또는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신환자 발견사업에 동참
- 주요검사 항목 : PGL-I항체, 진단PCR, DNA-PCR, 나균DNA, 약제내성변이,
육아종질환, 유사마이크로박테리움, 기타역학요인 검사 등

4) 신환자발견 및 검진 시행 시 유의사항

- 감염원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정밀 검진대상으로 선정
- 임상진찰과 필요시 피부도말검사 등을 실시하되, 가능하면 생체조직검사
(biopsy) 또는 PGL- I 항체 검사를 실시한다.
- 당해 진료기관을 이용하는 피부병환자는 기관 고유의 병력지를 사용하되, 한센병과의
감별진단 차원에서 피부병소와 말초신경의 검진사항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 한센병과의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의 환자는
 - 피부병소의 반점 수, 성상, 정도, 모양, 지각 이상 등을 세심히 관찰
 - 한센병 특유의 말초신경의 변화를 점검하며,
 - 의심되는 부위의 피부도말검사, 생체조직 검사와 PGL- I 항체 검사, 나균
특이유전자 검사(PCR) 등 최첨단 진단기법을 활용한다.

바. 행정사항

1) 검진실적보고

이동진료반장은 가족검진 시 접촉자(가족·친지)명단 및 검진기록부(제14호 서식)를 바탕으로 검진을 실시한 후 접촉자 검진실적 보고(제15호 서식)에 의거 그 실적을 분기별로 한센사업자료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신규 한센사업대상자

- 신규 한센사업대상자는 보건소와 관내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이동진료반장)의 긴밀한 협조하에 요치료(한센병환자) 또는 한센 서비스 대상자로 구분하여 적절한 치료와 서비스에 임한다.
- 한센사업기록표(제1호 서식)를 작성하고 한센사업대상자 명부(제2호 서식)에 요치료(한센병 환자) 또는 한센서비스 대상자로 구분 등재한다.
- 한센병환자를 진단 혹은 사체검안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의사, 한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장에 보고하여야 한다.(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는 의사, 한의사는 보건소장에게 신고)
- 보고 받은 의료기관장은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감염병발생 신고(보고) 서식(전자문서로된 신고서 포함)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 받은 보건소장(보건소업무담당자)은 감염병 보고절차에 따라 감염병웹 보고시스템(<http://is.cdc.go.kr>)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업무담당자는 「통계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의거 환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분류

- 대상자별 및 병형별 분류
 - 신규 대상자는 역학적 배경분석을 위하여 임상학적 측면에서 활동성, 비활동성, 재발자 및 추가 대상자 등으로 분류한다.
 - 감염지표의 강도측정을 위해 L, B, T, I(나종형, 중간형, 결핵양형, 부정형균)로 또는 MB, PB(다균형, 희균형)로 분류하며, 연령분포별로 분류한다.
- 발견방법별 분류는
 - 접촉자검진(Contact Survey): 가족, 친지 등 지속적으로 접촉한 사람
 - 자의검진(Voluntary): 환자 스스로 의료기관에 찾아온 사람
 - 집중검진(Intensive Survey): 집단검진(Group Survey): 부락 검진, 학교 검진 등
 - 정보검진(Notification): 타 의료기관(의료인)에서 진단을 의뢰받은 사람
 - 기타검진(Others) 및 미분류(Unknown) 등으로 구분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6. 6. 30.>

감염병 발생 신고서

* 뒷쪽의 작성방법 및 신고방법 안내를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수신자: _____ 보건소장 팩스번호: _____

[환자의 인적사항]

성명 (만 19세 이하인 경우 보호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별: []남 []여 이동전화번호
거주지 주소 및 우편번호: □□□□□□	
[]거주지 불명 [] 신원 미상	직업 []

[감염병명]

제1군	[]콜레라 []장티푸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파라티푸스 []A형간염	[]세균성이질
제2군	[]디프테리아 []백일해 []유형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B형간염(□ 급성)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파상풍 []폴리오 []	[]홍역 []일본뇌염 []폐렴구균
제3군	[]밀라리아 []레지오넬라증 []쭈쓰가무시증 []공수병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한센병 []비브리오파혈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매독([]1기 []2기 []선천성)	[]수막구균성수막염 []발진열 []탄저 []선천성)
제4군	[]페스트 []황열 []보툴리눔독소증 []증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신증인플루엔자 []야토병 []라이병 []치쿤구니야열 []신증감염병증후군(증상 및 징후)	[]뎅기열 []발진티푸스 []큐열 []진드기매개뇌염 []바이러스성출혈열 []매독([]1기 []2기 []선천성)	[]두창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웨스트나일열 []유비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감염병 발생정보]

발병일	년 월 일	진단일	년 월 일	신고일	년 월 일
확진검사결과 []양성 []음성 []검사 진행중 []검사 미실시		입원여부 []외래 []입원 []기타			
환자 등 분류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검사결과 구분	[]기타(환자아님)		

비고(특이사항)

사망여부 []생존 []사망

[신고의료기관]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명	전화번호
의료기관 주소: □□□□□□		

진단 의사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고기관장
----------	------------	-------

[보건소 보고정보]

소속 주소 및 우편번호: □□□□□□	소속명:
----------------------	------

국적(외국인만 해당합니다)

추정 감염지역 : []국내 []국외(국가명:) (체류기간: ~)

입국일(추정감염지역이 국외인 경우만 해당):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작성방법

서명 난은 컴퓨터통신 이용 시에는 생략합니다.

신고방법에 관한 안내

1.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는 자체 없이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다만, 이미 신고한 제1군~제4군감염병 환자 중 검사결과에 따라 환자분류기준이 변경되거나 환자가 아님으로 확인된 경우, 반드시 그 결과를 변경하여 신고하거나 관할보건소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제2군감염병 중 B형간염은 급성 B형간염 환자만 신고합니다.
3. 감염병에 따라 환자상태 및 감염병 원인 파악을 위한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감염병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와 사망신고를 모두 하여야 하며, 이미 신고한 제1군~제4군감염병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제3군감염병 중 결핵은 「결핵예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후천성면역결핍증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발생 및 사망을 신고합니다.
6. 표본감시대상감염병(제3군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발생시에는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보건의료기관 시설 및 단체의 장이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별도의 서식으로 7일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7. 팩스 또는 웹[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내 감염병웹신고]의 방법으로 신고합니다.
8. 관할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 받은 보건소에서는 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보건소로 이전 보고합니다.

감염병 발생 신고서 작성 및 시스템 입력방법 안내

[수신자] 신고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장

[환자의 인적사항]

- (1) 성명: 특수기호나 공백 없이 한글로 기입[외국인의 경우도 한글로 기입하며 영문명은 비고(특이사항)란에 별도 기재함]
-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기입하며,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함
- (3) 성별, 연령: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자동생성되며, 연령은 진단일 기준으로 자동 생성됨

[감염병명] 해당 감염병명에 체크하며, 제4군의 신종감염병증후군의 경우 그 증상 및 징후를 별도 기입함

[감염병 발생정보]

- (1) 발병일: 환자의 증상이 시작된 날짜를 기입함[단, 병원체보유자의 경우 0000-00-00으로 기재]
- (2) 진단일: 신고의료기관에서 해당 감염병으로 처음 진단한 날짜를 기입함
- (3) 신고일: 신고의료기관에서 관할 보건소로 처음 신고한 날짜를 기입함(팩스신고는 팩스 송신일, 시스템신고는 시스템 입력일자임)
- (4) 확진검사결과, 환자 등 분류: 각 감염병별 진단·신고기준을 참고하여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함
- (5) 검사결과구분: 해당 감염병환자등(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타(환자아님)'에 체크함
- (7) 사망여부: 감염병환자등이 사망한 경우 '사망'에 체크하며,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를 함께 작성하여 신고함

[신고의료기관]

- 신고의료기관의 정보와 진단의사성명, 신고기관장 기입함
- '요양기관검색' 버튼을 이용하여 해당 기관을 선택하며, 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 주소, 기관장 정보가 자동 입력됨

[보건소 보고정보]

- 소속: 직장(사업장), 학교(어린이집 및 유치원 포함) 및 군부대 등의 주소와 소속명을 작성합니다.
- 국적: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란에 체크하고, 국적은 '국가검색' 버튼을 이용하여 입력함
- 추정감염지역, 국가명, 체류기간, 입국일
 - 국외 체류 중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국외'에 체크하고, 국가명(검색 버튼 이용)과 체류기간, 입국일자를 기재함
 - 체류국가가 여러개인 경우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를 선택하고, 나머지 국가는 비고(특이사항)란에 별도 기재함

2. 한센사업대상자 서비스(Case Holding)

가. 목적

한센사업대상자에 대하여 효율적인 진료와 재활을 도모하고 의료 및 사회복지 지원

나. 대상자

요치료자(한센병 환자) 및 한센 서비스 대상자(치료 종결자)

다. 서비스의 원칙

- 1) 한센사업대상자에게는 투약치료, 재발관리, 장애예방, 재활치료, 생계지원 등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 2) 한센 사업 대상자는 요치료자(한센병환자)와 한센 서비스 대상자로 구분하며, 각 대상별 서비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참조)
 - 요치료자(한센병환자)는 임상진료와 재발방지, 장애예방 등에 주력한다.
 - 한센사업협의회의 협의 결과에 따라 치료 종결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한센서비스 대상자로서 지속적인 보호를 한다.
 - 한센서비스 대상자는 재발감시, 재활치료, 생계비 지원 등 각종 복지차원의 보호를 한다.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 종료를 신청할 수 있다.
- 3) 신규 한센사업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서비스한다.
 - 가) 신규 요치료자
 - ① 신환자
 - ② 재발환자
 - ③ 마무리 치료가 필요한 자
 - 나) 신규 한센서비스 대상자
과거 자가 치료 등으로 치유된 자가 재발감시, 재활치료 등의 서비스를 요하는 자
- 4) 추가 대상자(과거 치료 종결 등으로 한센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자 등)
 - 가) 재치료를 요하는 재발자는 요치료자로 구분
 - 나) 마무리 치료가 필요 없고 재활치료 등이 필요한 자는 한센 서비스 대상자로 구분

<표 1> 한센사업대상자 서비스

○ 요치료대상자

구 분	내 용
대 상	1) 활동성: 신환자, 양성환자, 재발자 2) 비활동성: 부적격치료자, Dapsone 단독치료군, 재발 우려자
처방	<input type="radio"/> 다제요법 <권고처방참조>
MDT 기간	1) 활동성 <input type="radio"/> 다균형: 균 음전 후 2년 추가 <input type="radio"/> 희균형: 2년 투약 후 6개월 추가 2) 비활동성 (마무리치료) <input type="radio"/> 다균형: 2년 <input type="radio"/> 희균형: 6개월
정밀진찰	1) 양성자 년 2회 이상 2) 음성자 년 1회 이상
치료종결(MDT)	<input type="radio"/> 한센사업협의회 협의

○ 한센 서비스 대상자

구 분	내 용
대상	<input type="radio"/> 치료종결자 중 본인이 희망하는 자
재발관리	<input type="radio"/>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발관리가 필요한 경우 - MDT 10년 (다균형, 희균형) <권고처방참조> - 정밀진찰 1회/년
주요 서비스	<input type="radio"/> 진료의사 판단 또는 본인 희망시 한센병검사 및 치료약품 처방 <권고처방참조> <input type="radio"/> 재활수술 및 일반질환 치료 <input type="radio"/> 생활정도에 따른 생계 지원 등

라. 서비스 체계

1) 한센사업자료실

가) 담당기관

- 한센사업자료실 업무는 한국한센복지협회(본부)에서 담당하며, 질병관리본부장의 지시에 따른다.

나) 업무 내용

- 일선 한센병전문진료기관(보건소 포함)의 한센사업 업무 총괄
- 한센사업대상자 현황을 분기마다 분석하여 전국 한센사업기관의 효율적 사업수행 지원
 - 신규, 사망, 전문진료(생활)기관 변동 등 정리

다) 사업 대상

- 각 한센병전문진료기관 요치료자 및 한센서비스 대상자, 외국인 환자

라) 장기 진료 불참자

- 한센사업자료실 보유 장기 진료 불참자의 발생요인
 - 일선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서 장기 진료 불참자(활동성 5년, 비활동성 3년이상 치료미참여자)로 처리되어 한센사업자료실에 보고된 장기불참 관리이관자
 - 일선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서 진료기관 변경 중 치료에 임하지 않는 자
- 장기 진료 불참자 처리
- 1년 이상의 유보기간을 갖고 해당자의 자발적 참여를 기다린 후에 한센사업중앙협의회에서 해당자에 대한 향후 관리방향을 결정한다.

2) 일선한센사업기관

가) 사업 기관

일선 한센사업은 한센병전문진료기관과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담당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관계되는 업무는 보건소가 한센사업을 위한 업무는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이 주관하여 시행한다.

나) 사업 대상

일선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의 한센사업대상자(요치료자 및 한센서비스 대상자)

다) 업무 내용

- ① 일선기관에서 서비스 중인 한센사업대상자는 한센사업자료실에 보고한다.
 - 거주형태별 서비스 업무
 - 정착마을 및 입원생활시설 거주자: 거주지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 재가자: 진료 중심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한 각 한센병전문진료기관 외래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② 한센사업대상자 명부의 구분

- ㉠ 한센사업대상자는 한센사업대상자 명부(제2호 서식) 등재 및 한센사업 기록표(제1호 서식)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한센서비스를 제공한다.
- 입원생활시설 한센사업대상자 명부
 - 국립소록도병원 및 6개 민간한센생활시설
 - 이동진료반 한센사업대상자 명부
 - 정착마을 거주자: 시·군·구 별, 정착마을별 명부
 - 보건소 대상자: 시·군·구 보건소별 명부
 - 외래 한센사업대상자 명부
 - 재가자로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의 외래진료소를 주 치료기관으로 선택한 자

※ 위의 명부는 요치료 대상자 명부와 한센 서비스 대상자 명부로 구분 정리한다.

- ㉡ 한센사업대상자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를 병력지, 한센사업기록표 및 명부 등에 자세하게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③ 한센사업대상자 유지 관리

- ㉠ 양질의 지속적인 서비스에 필요한 한센사업대상자의 주요사항(균양성·음성, 서비스 변경, 기관변경 등)에 대하여 유지 관리한다.
- ㉡ 한센사업대상자 증가와 감소에 관한 업무처리: 라)항 참조
- ㉢ 일선 기관 장기 진료 불참자 처리
- 장기간 진료불참자는 아래와 같이 진료참여 권유기간을 설정한다.
 - 활동성환자 5년, 비활동성 3년
 - 진료참여 권유기간 중 활동성환자는 환자 본인의 신체장애 악화 및 타인에 대한 감염원이 될 수 있음을 홍보
 - 음성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접촉(방문 등)을 지양하고 간접적인 방법 (주민대상교육 등 대중매체 이용)을 이용하여 진료에 참여토록 권장한다.
 - 진료참여 권유기간 경과 후 처리 (한센사업지역협의회 협의)
 - 관리의사 판단과 한센사업 지역협의회 협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치료종결이 가능하고 서비스 권유기간(5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치료종결 후 서비스 대상자로 전환 검토
 - 서비스 권유기간(5년)이 경과되거나, 서비스 권유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주불명자로 처리하여, 한센사업자료실로 관리 이관하고 해당기관 사업대상자에서 감소 처리
 - 한센병전문진료기관과 보건소와의 협조체계 구축 운영

라) 한센사업대상자 변동사항 업무처리 요령

① 증가: 신규, 기관변경, 추가 대상자 등

㉠ 신규 대상자

○ 과거 한센 서비스 대상자가 아니었던 경우

- 신환자(요치료자)

- 신규 요치료자(마무리 치료 대상자)

- 신규 한센 서비스 대상자

㉡ 기관 변경: 타 기관으로부터 진료(서비스)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 추가 대상자

○ 치료종결 · 서비스 종료 등 과거 한센사업 대상자이었던 경우

- 재발 또는 마무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요치료자)

- 재활, 복지지원 등의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한센서비스대상자)

㉑ 감소: 사망, 이민, 기관변경, 치료 종결 등

㉠ 기관 변경: 다른 진료(생활)기관으로 변경하는 경우

㉡ 치료 종결: 요치료자가 한센사업협의회 협의에 의하여 치료 종결 판정을 받고, 한센 서비스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 서비스 종료: 한센 서비스 대상자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더 이상의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경우

㉒ 서비스 변경

○ 치료 종결된 자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지속적인 한센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한센 서비스 대상자)

○ 한센 서비스 대상자가 재발할 경우(요치료 대상자)

㉓ 변동사항 처리방법

㉠ 한센병전문진료기관 한센사업대상자의 증가, 감소, 서비스 변경 등 각 사안에 따라 병력지, 한센사업기록표와 한센 서비스 대상자 명부에 변동 처리한다.

○ 증가자: 신규 대상자, 기관변경, 추가 대상자 등의 증가 처리

○ 감소자 : 사망, 이민, 치료 종결, 기관변경 등의 경우 객관적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그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소 처리

○ 서비스 변경자: 요치료 또는 한센 서비스 대상자간의 서비스 변경 처리

㉡ 한센사업대상자의 주요 변동사항은 한센사업대상자 변동사항 보고서와 한센사업기록표를 첨부하여 매월 한센사업자료실로 보고한다.

㉢ 한센사업대상자 중 기관변경의 경우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 협조한다.

㉔ 기관변경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타기관 한센사업대상자가 진찰 또는 검사, 치료, 수술 등 진료를 목적으로

내원하였을 경우 의사는 지체 없이 병력지를 작성하고 진료에 임한다.
다만, 증가 또는 감소 등의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 ⑦ 생활시설 및 정착마을 거주자인 경우(진료기관 고정)에 한시적인 진료를 목적으로 다른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기관변경 처리를 하지 않고 진료에 임한다.
 - ⑧ 재가자인 경우(진료기관 자유 선택), 내원 기관에서 지속적인 진료(서비스)를 원할 경우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진료기관 선택(기관 변경)
- 마)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의 보고업무 및 일반 병·의원 협조사항
- ①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은 한센사업대상자에 대하여 매분기별 관리사항을 제VIII장 참고자료 '2. 보고체계 및 한센사업 관련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대학병원 및 일반 병·의원에서 진료하는 경우는 당해 시·도 한국한센복지협회 지부가 취합하여 보고한다.

마. 서비스 분담

1)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이동진료반)

가) 한센사업대상자 명부

이동진료반 한센사업대상자 명부(정착마을 거주자 및 보건소치료자)는 보건소와 이동진료반이 공동으로 관리한다.

나) 한센병의 사례조사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은 보건소 등에서 의뢰된 환자의 진단, 치료 및 사례조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다) 한센사업대상자에 대한 치료, 재활, 한센병 후유증 예방, 노인성 질환 등에 대한 서비스

라) 한센사업대상자 복지 지원 협조 의뢰

한센사업대상자 중 복지 차원에서 정부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자는 본인의 희망 여부에 따라 거주지 보건소에 협조 의뢰한다.

마) 현황 보고

- ①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한센사업수행 실적을 보고한다.
 - 이동진료반의 담당 보건소에 한센사업수행 실적
 - 이동진료반 출장시 시·군·구 보건소 한센사업대상자 상황과 추가 진료관리 사항
 - 관내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의 외래 진료 사업수행실적(제6호 서식)
 -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의 한센의료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②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은 한센병이동진료반당일활동보고(제7호 서식)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한 한센병환자 발생신고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한다.

2) 보건소

가) 한센병 환자

- ① 한센병으로 신규 진단된 환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5조에 의하여 보고를 접수하여 지정된 접수대장에 등록처리
- ② 보고된 환자에 대해 필요로 하는 사례조사 및 의료관리 업무는 담당 이동 진료반(한센병전문진료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만, 일반 병·의원이 한센병 환자 진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역 한국한센복지협회지부와 협의 시행토록 조치한다.
- ③ 관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한센병 관리상황은 담당 이동진료반 활동보고와 관내 소재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의 한센병사업수행실적으로 보고 받아 총괄적 현황 파악과 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나) 한센 서비스 대상자

- ①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지속적으로 한센서비스를 받기 희망하는 치료(MDT) 종결자는 한센 서비스 대상자로서 보호를 받는다.
- ② 재활치료, 생계비 등 각종 사회복지지원을 한센병환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받는다.
- 다) 관내 보건소에서 진료 받고 있는 한센사업대상자 중 신분 노출 우려 등으로 타지역 거주자가 진료 받을 경우에도 관내 한센사업대상자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일반 병·의원

- 가) 한센병으로 확진된 환자 및 의사환자로 진단된 환자는 지역 한국한센복지 협회에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협조를 구한다.
- 나) 한센병환자가 일반 병·의원에서 치료코자 하는 경우는 지역 한국한센복지 협회 지부와 협의하여 약품 공급 등 편의를 받는다.
- 다) 한센사업대상자에 대한 재발 예방과 재활수술 등 복지차원의 보호 업무 등은 필요시 한국한센복지협회와 협의 시행한다.

바. 기타 사항

1) 거주불명 한센사업대상자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은 거주가 불분명한 한센사업대상자 등을 발견한 경우 관할 한국한센복지협회 지부에서 서비스 반도록 권유하거나 한국한센총연합회의 협조를 얻어 한센병 전문 진료기관 또는 한센생활시설 이용을 권유 할 수 있다.

2) 비밀엄수

- 가) 한센사업대상자의 인적사항, 병력사항 등 모든 기록은 공무상의 관계자 (예: 보건소장, 한센병이동진료반, 한센병전문진료의사) 이외의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본인 등의 한센사업기록표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에 따르며, 그 이외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유입 감염원에 대한 관리 대책

가. 국내 체류 외국인 검진

- 1) 신체검사 시 피부병이 심하거나 한센병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는 한센병 검진, PGL-I 항체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한 후 시·도별 한센병전문진료기관 또는 한국한센복지협회 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다.
- 2) 평상시 직장인 건강검진 시 피부병 환자의 조기진찰을 유도하고, 한센병 고유병 국가 출신자인 경우 PGL-I 항체검사 추가 시행을 권장하여 환자 조기 발견사업에 동참토록 한다.

나. 외국인 한센병환자 처리

- 1) 국내체류 외국인 중 한센병환자가 발견되면 내국인에 준한 치료관리를 시행하며, 사안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한국한센복지협회 연구원에 입원·치료할 수 있다.
- 2) 외국인 중 환자가 발생하면 “체류외국인 한센병환자 관리상황보고서”(제13호 서식)에 의해 FAX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한센사업자료실로 보고한 후, 체류외국인대장(제2호 서식(한센사업대상자 명부))에 기록하고 한센사업기록표(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1부는 자체보관하고 1부는 한센사업자료실로 송부한다. 단, 외국인환자는 한국한센복지협회에서 별도로 관리(제13호, 제2호, 제1호 서식)하고 질병관리본부로 보고(제13호 서식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감염병발생 신고(보고) 서식)하며 한센사업 대상자 변동사항보고서(제9호 서식)에 의한 증감수치도 관리한다.

다. 유입 한센병에 대한 의료관리

1) 의사(疑似) 한센병 환자

PNT(순수신경형) 및 SLPB(단일병소희균형) 등의 경우와 같이 병원체의 증명이 안되는 등 한센병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나, 임상적으로 다분히 한센병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특히 한센병 고 유병 국가에서 입국한 사람의 경우에는 의사 한센병으로 진단을 하고 다제요법 권고처방에 따라(PB에 대한 MDT 또는 접촉자 예방 치료법 활용) 나균 전파의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2) 한센병 재발이 우려되는 경우

재발에 관한 진찰(임상, 세균, 병리, 면역, 문자생물학 등)을 하고 필요하면 권고 처방에 따라 재발예방치료를 실시하며, 한센사업자료실에 보고하고 관리토록 한다.

4. 한센병 진단과 치료

가. 한센병의 정의

1) 임상학적 정의

한센병이란, 나균에 의하여 발병되는 만성감염병이며 피부와 말초신경에 주변변을 일으키는 면역학적 질환이다.

2) 관리목적상의 정의

- “한센병환자”라 함은 피부도말검사에서 세균지수가 양성으로 나타나거나 활동성 임상증후가 있는 자를 말한다.
- “한센 서비스 대상자”라 함은 활동성 임상증후가 없어지고 그 증상의 진행이 정지되었으나 국가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참 고 사 항

세계보건기구(WHO)의 관리목적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 of a case of Leprosy)

- 한센병환자라 함은 한센병의 임상증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단상 세균학적 확인 여부에 관계없이 화학요법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A case of leprosy is a person having clinical sign of leprosy, with or without bacteriological confirmation of the diagnosis, and requiring chemotherapy.)

(참조: A Guide to Leprosy Control, 2nd Edition, p.23, 1988, WHO)

나. 한센병 진단

1) 한센병 진단 유의 사항

한센병은 다른 질병에 비하여 편견·차별 등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센병 진단은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한센병의 3대 징후

- 피부병변(반점, 구진, 결절, 감각의 저하 등)
- 말초신경(비후 및 통증)
- 나균의 존재

3) 한센병 진단 기준

- 한센병 환자 : 한센병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감염병병원체의 감염을 검사를 통해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사람

4) 임상증상

- 반점이나 침윤, 말초신경의 비후 또는 지각신경마비 등 활동성 임상증상
- 균이 주로 피부와 말초신경에 병변을 일으키고 뼈, 근육, 안구, 고환 등을 침범함
- 임상적으로 나종형(lepromatous type)과 결핵양형(tuberculoid type) 나 사이에서 다양한 양상을 보임
 - 나종형(lepromatous type): 소결절, 구진, 반점, 미만성 침윤이 대칭적으로 분포하며, 광범위하게 나타남. 비강점막 침범으로 코가 주저앉고, 비출혈, 홍채염, 각막염 등을 보임
 - 결핵양형(tuberculoid type): 단일 또는 몇 개의 경계가 명확한 피부 병변이 나타나며, 감각이 없어지거나 저하되고 비대칭적으로 분포하는 심한 말초신경염을 동반함
 - 중간형(borderline type): 나종형과 결핵양형 중간의 다양한 임상 양상이 나타남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문자생물학적 검사법에 의한 나균의 확인
- 조직검사상 한센병 육아종 소견 확인
- 병변의 도말검사(항산성 염색)에서 항상성균 확인

6) 한센병 진단 유의사항 및 감별진단

가) 유의사항

- 순수 신경형(Pure neural type), 단일 병소 희균형(Single lesion paucibacillary type), 부정형군(Indeterminate group), 불현성 감염증(Subclinical infection)은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다. 또한, 감별진단을 위한 신경간 생검은 생검시 신경 손상 유발 가능성을 감안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나) 감별진단

- 피부병변과 관계되는 유사질병
 - 빈혈성 모반(Nevus anemicus), 백반 (Vitiligo)
 - 지루성 피부염(Seborrheic dermatitis)
 - 건선(Psoriasis), 장미색 비강진(Pityriasis rosea)
 - 편평태선(Lichen planus), 유육종증(Sarcoidosis)

- 환상육아종(Granuloma annulare) 등
- 신경손상과 관계되는 유사질병
 - 선천성 지각신경증(Congenital sensory neuropathy)
 - 원발성 신경유전분증(Primary amyloidosis of nerve)
 - 다발성신경병증(Polyneuropathy)
 - 급성 특발성 신경병증(Acute idiopathic polyneuropathy) 등

7) 세균지수와 ELISA(PGL- I 항체)검사

가) 세균지수 검사판정 기준표

가능하면 잘 퍼진 탐식세포들을 선택하여 유침렌즈(100배)로 관찰하며, 세균지수(BI)는 리드리 방법에 따른다.

세균지수	세균 수	유침렌즈 배율	평균관찰시야
6+	1,000개 이상	100배	1시야
5+	100 ~ 1,000개	"	1시야
4+	10 ~ 99개	"	1시야
3+	1 ~ 9개	"	1시야
2+	1 ~ 9개	"	10시야
1+	1 ~ 9개	"	100시야
0+	0개	"	100시야

나) PGL- I 항체 검사 활용방법

① PGL- I 항체 검사의 의의(나균 phenolic glicolipid<PGL-I> 항체검사)

※ 참조: Leprosy Review: Editorial 74-3호; Sept. 2003

- 세균 지수를 보완할 수 있는 검사이며, 병형에 따라 세균지수가 1이상인 경우는 항체가도 상승하며, 세균지수가 0인 PB(희균형)의 경우는 항체가 낮다. 따라서 치료효과를 판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② PGL- I 항체 검사 실시 방법

- 1차(정성)검사-일선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항임(한센병진단 키트 이용)

- 판독기준: 참고; OD=0.2(= ELISA 검사 역가 200)

- OD>0.2일때 양성으로 판정함: 진단키트(+)로 표기함
 - OD<0.2일때 음성으로 판정함: 진단키트(-)로 표기함

- 시행사항

- 음성: 키트(-)로 병력지에 표기하고 현장처리
 - 양성: 연구원의 정량검사결과를 얻어 처리함

- 추가시행: 검사자 모두의 시검혈청을 정도관리목적으로 연구원에 송달

- 2차(정량)검사 - 연구원 시험실에서 시행하는 사항임(ELISA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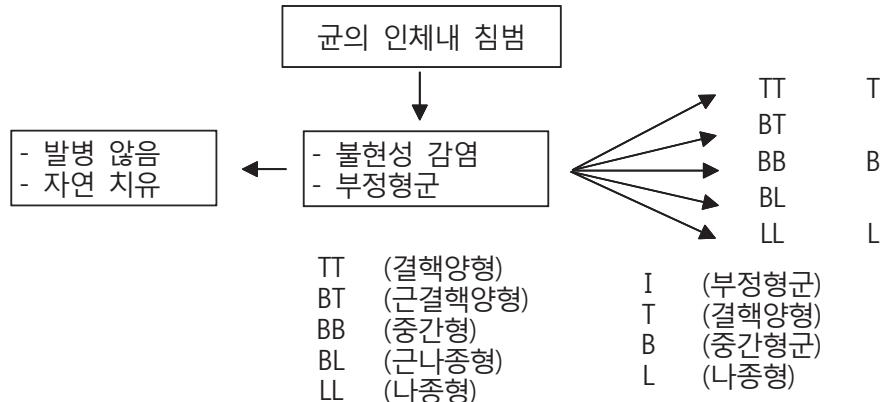
- 진단키트 양성자의 혈청을 수거하여 정량검사 실시 통보

- 진단키트 음성자의 혈청 중 무작위 추출하여 정도관리에 이용
- ③ ELISA 역가에 따른 환자 추구관리 방향설정
- PGL-I에 대한 항체 ELISA 검사 역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역가 1,000 이상인 경우
 - 예방목적 MDT 실시
 - 6개월 간격으로 정밀진찰과 PGL-I 항체 검사 실시
 - 역가 500이상 1,000미만인 경우
 - 항체역자가 현저히 상승추세에 있는 경우 예방 MDT실시를 고려
 - 6개월 간격으로 정밀진찰과 PGL-I 항체 검사 실시
 - 역가 200이상 500미만인 경우
 - 12개월 간격으로 정밀진찰과 PGL-I 항체 검사 실시
 - 역가 200미만인 경우
 - 담당의사의 추구조사의 의지에 따라 정밀진찰과 PGL-I 항체 검사를 실시
- ※ 유의사항: 역가 500 이상인 자는 MDT 종결을 하지 아니하고 추구관리를 한다.

다. 병형분류

1) Ridley와 Jopling의 분류

- 피부 병변의 수와 분포, 신경 마비 증상 및 분포, 점막 침범 및 전신 증상의 유무 등을 감안하여, Madrid 분류법에 의한 L, B, T, I 또는 Ridley · Jopling 분류법에 의한 TT, BT, BB, BL, LL으로 분류



참 고 사 항 (WHO분류)

피부도말검사에서 균양성자는 MB(다균형)으로, 균음성자는 PB(희균형)으로 분류한다.

Classification	Zone of the spectrum				
Ridley & Jopling	TT	BT	BB	BL	LL
W H O	PB: 희균형 BI = 0	MB: 다균형 BI ≥ 1+			
	다균형 MB (Mutibacillary type)	희균형 PB (Paucibacillary type)	단일병소희균형 SLPB (Single-lesion paucibacillary type)	순수신경형 PNT (Pure neural type)	

피부병변 ¹⁾	6개 이상 대칭적 분포 감각 소실 동반	2 ~ 5개 비대칭적 분포 명확한 감각소실동반	1개	없음
신경손상 ²⁾	여러 신경 침범	한 개 신경침범	없음	대개 한 개 신경침범
피부도말 검사	균 양성	균 음성	균 음성	균 음성

2) 분류의 의의

가) T쪽 병형

- 면역력이 높아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도 있으나, 진행되는 경우에는 신경손상이 심하다.

나) L쪽 병형

- 면역력이 낮아 만성적인 합병증이 많고, 나성홍반성 반응이 흔하고 세균 지수가 높아 치료기간이 길다.

다) 중간형

- 불안정하여 병형이 변동될 수 있고, T쪽과 L쪽 병형이 혼합되어 불안정 병형이다.

1) 피부병변: 반점, 침윤, 구진, 결절을 포함

2) 신경손상: 손상된 신경에 관계되는 근육의 쇠약 또는 자각 소실

라. 장애도 분류

1) 장애의 발생 요인

- 가) 나균에 의해 침범 받은 말초신경은 염증과정과 이차적인 섬유조직 증식에 의해 파괴된다. 이때 자율신경 손상이 먼저 발생하여 땀이 잘나지 않고, 혈행이 느려져 피부각화가 진행되고, 이후 감각신경 손상이 발생하고 심해지면 운동신경이 손상된다.
- 한센병환자의 장애는 원발성과 속발성으로 나누어진다.
 - 원발성이란 손상받은 신경의 기능소실로 발생되는 것으로 갈고리 손, 족하수 등이 그 예이다.
 - 속발성이란 감각이 소실된 부위에서 발생하는 외상, 감염 등에 의해서 궤양, 골수염 등이 생기는 경우이다.

2) 장애 분류 기준

- 노동력 기준

I	한센병 증상은 있으나, 일반인과 거의 다름없는 노동력을 지닌 자								
II	수족에 약간의 기능장애가 있으나, 가벼운 노동수행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자								
III	수족의 기능장애 또는 기타장애로 인해 노동수행에 지장이 많으나, 건강인의 절반정도의 노동력을 지닌 자								
IV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나, 평상시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거동할 수 있는 자								
V	심한 신체장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간호 또는 도움이 없이는 조금도 거동할 수 없는 자								

- 증상기준(WHO)

장 애 도											
등급		손			발			눈			후두침범 (유) (무)
제1도		증상	좌	우	증상	좌	우	증상	좌	우	
제2도	지각마비				지각마비			결막염			
제2도	궤양 및 손상				영양장애성 궤양			토 안			비량함몰 (유) (무)
제3도	가동성 갈고리손				갈고리발			홍채염			
제3도	경도골흡수				족하수			또는 각막염			
제3도	수하수				경도골흡수			경도시력장애			안면마비 (유) (무)
제3도	관절경직				경직.경축			증증시각순실			
제3도	중증골흡수				증증골흡수			실명			장애지수*
최고장애도											

※ 장애지수 = (6개 최고장애도수의 합) ÷ 6

마. 의료관리 기본 지침

- 1) 한센사업대상자는 보건소장 또는 관리의사의 처방에 따라 규칙적인 치료 및 진찰을 받아야 한다.
 - 요치료자와 한센 서비스 대상자 중 재발관리대상자는 매년 1회 이상(양성자 연간 2회) 정기 정밀진찰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른다.
- 2)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은 이동 및 외래진료시 정기진료일을 정하고, 한센사업 대상자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진료를 요하는 자가 정해진 진료일에 불참하는 경우 한센병전문진료기관과 보건소 한센병담당자는 진료 참여를 권유하되 한센사업대상자의 비밀 유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재가치료가 어렵거나 타인에게 전염 감염시킬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는 장기 또는 단기입원시설에서 증상이 호전되거나 감염의 우려가 없어질 때 까지 입원 · 치료토록 하여야 한다.
 - 단기입원치료기간은 6개월(한국한센복지협회 연구원은 12개월)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한센병관리의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정밀진찰

- 1) 목적
정도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치료성적을 분석하여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고, 향후의 진료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정밀진찰을 시행한다.
- 2) 내용
요치료군은 MDT를, 서비스 대상군은 재발문제를 중점 점검하여, 임상경과 관찰, 투약효과점검, 합병증 관찰, 균동태와 면역 상태 점검, 재발증후의 조기 발견, 후유증 예방 등을 위하여 BIOPSY, PGL-I 항체검사, PCR 등 필요한 사항을 실시한다.
- 3) 방법
 - 가) 균양성자 연간 2회 이상, 균음성자 연간 1회를 원칙으로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실시하고, 한센 서비스 대상자의 경우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 나) 외래진료를 통하여 한센병전문의사에게 진찰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동불편자, 외래진료소 기피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동진료시 실시한다.
 - 다) 활동성환자는 “정밀진찰도해”를 이용하여 기록한다. (제12호서식~별지 또는 도해 고무인 등 사용)

사. 주치약의 투여방법

1) 서비스 구분별 투약(MDT)의 원칙

- 다균형 활동성 환자 투약은 균양성 시기의 투약과 균음전 이후 2년의 추가 투약을 실시한다.
- 희균형 활동성 환자 투약은 활동성시기의 투약(약2년)과 활동성 시기 종료후 6개월의 추가투약을 실시한다.
- 과거에 Dapsone 단독 투약 등 치료자로써 현재에도 비활동성인 자의 투약은 재발예방차원에서 MDT종결을 위한 확인적 투약 목적으로 다균형은 2년, 희균형은 6개월의 마무리 치료를 실시한다.

2) 다제요법(MDT) 권고처방 활용방안

- 본 권고처방은 단기간에 강력한 치료를 하기 위한 것으로 담당의사가 자율적(처방, 약제의 선택, 복합 방법 등)으로 결정하되, 아래 권고처방을 충분히 감안하여 최상의 치료 효과를 얻도록 한다.
 - 다균형은 3중 복합투여, 희균형은 2중 복합투여를 권고처방으로 하는 세계 보건기구의 권고처방에 기초를 둔다.
- 이 처방은 한센병관리를 위한 잠정적 기준이며, 한센병전문의사의 임의 처방은 이 처방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 치료 목적의 투약지속기간은 한센병의 제반증후가 정지되어 치료종결 판정을 받을 때까지로 한다.

제1처방 (Clofazimine 포함 3종요법 처방) 권고처방

(가) 활동성 환자

○ 다균형

Dapsone	매일 100mg	균양성 시기투약 및 균음전 이후 2년 추가
Rifampicin	매일 600mg 3월 ~ 12개월 투여	
	이후 월 1회 600mg	

Clofazimine 매일 50mg 및 추가 월1회 300mg

○ 희균형

Dapsone	매일 100mg	활동성 시기(약 2년) 투약 이후 6개월 추가
Rifampicin	매일 600mg 3개월 투여	
Clofazimine	매일 50mg	

(나) 비활동성 환자 (마무리 치료)

※ MDT 종결 확인적 투약 목적임

- 부적격 치료자
- Dapsone 단독으로 치료받은 자

○ 다균형

Dapsone	매 일 100mg	2년
Rifampicin	월1회 600mg	
Clofazimine	매 일 50mg	

○ 희균형

Dapsone	매 일 100mg	6개월
Rifampicin	월1회 600mg	

제2처방 (5일간, 4중 강력 요법으로 초기 나균 완전 제압 목적)

(가) 활동성 환자(다균형 및 희균형)

Rifampicin	매일 600mg
Ofloxacin	매일 400mg
Minocin	매일 100mg
Clarithromycin	매일 500mg

. 초기 5일간 투여 후
후속 처방으로 대체

후속처방

Dapsone	매일 100mg
Rifampicin	매일 600mg
Minocin	매일 100mg

. 다균형: 균음전시까지
. 희균형: 2년

(나) 비활동성 환자 (다균형 및 희균형) (마무리치료)

Dapsone	매일 100mg
Rifampicin	매일 600mg
Minocin	매일 100mg

. 다균형: 2년
. 희균형: 6개월

제3처방 (Clofazimine 비포함 3중 복합 처방)

Rifampicin	매일 600mg
Ofloxacin	매일 400mg
Minocin	매일 100mg

. 다균형: 균음전시까지
. 희균형: 2년

제4처방 ① 서비스 대상자 재발예방 투약

② 필요시 서비스 대상자 처방으로 사용

※ 본인이 강력히 복약을 원하는 경우

(가) Dapsone	매일 100mg
-------------	----------

매일 단독 지속 투여

(나) Rifampicin	매일 600mg
Ofloxacin	매일 400mg
Minocin	매일 100mg

참여율 제고 목적으로
연간 5일의 치료시기로 대체

(다) Rifampicin	매일 600mg
Ofloxacin	매일 400mg
Minocin	매일 100mg
Clarithromycin	매일 500mg

참여율 제고 목적으로
연간 5일의 치료시기로 대체

제5처방(접촉자 예방치료)

※ 접촉자가 강력히 복약을 원하는 경우에 한함

가) Rifampicin	매일 600mg	2중 복합으로 5~7일 투여 또는 매달 1회씩 6회 투여
※택일	Minocin 매일 100mg	
	Ofloxacin 매일 400mg	
	Clarithromycin 매일 500mg	
(나) Rifampicin	매일 600mg	3중 복합으로 5~7일 투여 또는 매달 1회씩 6회 투여
Ofloxacin	매일 400mg	
	Minocin 매일 100mg	

※ 위의 제1처방 ~ 제5처방의 권고처방의 제시는 1996년 전국나관리세미나에서 재발과 저항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내 전문가들이 세계적인 추세와 국내여건을 참조하여 일선 한센병관리의 기본방향으로 제시된 것이다.

참고사항: WHO권고처방(WHO/LEP/97. 6 7th WHO Expert Committee)

○ MDT: 다제요법

구 분		다균형(MB) (LL, BL, BB)	희균형(PB) (BT, TT, I)
치료 약품	Dapsone	매일 100mg	매일 100mg
	Rifampicin	월1회 600mg	월1회 600mg
	Clofazimine	월1회 300mg 및 매일 50mg	-
투약기간		12개월, 필요시 12개월 추가	6개월
관찰기간			

※ Clofazimine (Lamprene: B663) 대체약제로 Ofloxacin을 사용한다.

○ ROM: 신약제 사용

- Rifampicin 600mg, Ofloxacin 400mg, Minocin 100mg
- 단발의 피부병소를 가진 희균형은 단1회의 ROM 처방치료가 가능하다.
(단1회의 ROM 처방은 6개월의 MDT 권고처방의 효과와 같다.)
- Clofazimine을 기피하는 다균형은 월1회, 총24회의 ROM 처방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약제개요

○ Dapsone (DDS)

충분한 용량을 투여해야 한다는 이론에 따라 병형에 관계없이 모든 성인 한센 사업대상자에게 매일 100mg씩 계속 투여하기로 하였다. 간장에 대한 독성이나 용혈성빈혈, 피부염 등의 부작용을 유념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Rifampicin (RMP)

살균력이 강한 다제요법을 위한 중요한 약제중 하나로써 약제 내성이 진전될 수 있으므로 투약 초기에는 매일 600mg을 지속한 후에 일정기간 후에는 월간 간헐요법으로 전환도록 하였다. 복용중에 소변이 적색으로 나타날 수 있고, 특히 간에 대한 급성 독작용에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Clofazimine (Lamprene: B663)

살균력이 Dapsone과 비슷하나 항염작용이 있어 나반응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는 우수한 약제인데, 피부착색 등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1일 50mg 연일 투여도록 하였다. 피부착색 외에도 위장장애와 피부건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Ofloxacin

Fluoroquinolones 제제이며 나균의 DNA복제를 방해한다. 오심, 설사, 위장장애, 두통, 현기증, 불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나 장기간 사용해도 무방하다.

○ Minocin(Minocycline)

Tetracycline 제제이며 나균의 단백질 합성을 방해한다. 살균력이 상당히 있으나, Ofloxacin보다는 덜하다. 부작용으로는 유아와 소아의 치아에 변색, 때때로 피부와 점막에 색소침착, 위장장애, 신경장애 등이 약간 나타날 수 있으나 장기간 사용해도 무방하다.

○ Clarithromycin

Macrolides 제제이며 나균의 단백질 합성을 방해한다. 살균력이 있으나, Minocycline보다는 살균력이 낮다. 부작용은 비교적 적은 편이며, 가벼운 위장장애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간 사용해도 무방하다.

○ Ethionamide 또는 Prothionamide는 대체약품의 하나로 선택할 수 있다.

○ 기타 보조치료약품

한센 약품의 장기복용으로 인한 위장장애, 간독유발, 영양결핍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화제, 영양제, 간장제 등의 보조치료약품을 주치약품과 동시에 투여도록 하여 일반질환도 예방하도록 한다.

4) 확인투약의 의미

- MDT 시행시의 확인투약은 치료종결에 앞서서 꼭 시행해야 할 필수사항이다.
- MDT 확인투약시 약제복합은 권고처방이 제시하는 바에 따라 MB는 Dapsone, Rifampicin, Clofazimine의 3중요법을, PB는 Dapsone, Rimfampicin의 2중요법을 원칙으로 한다.
- 원칙적으로 한센 약품 투약기간 동안 확인투약이 계속되어야 하나, 음전환 후의 마무리 치료기간 MB는 최소 2년간, PB는 최소 6개월간 확실한 확인 투약을 실시하여야 한다.
- 확인투약 기간 중 미(未)복약
원칙적으로 MB 2년, PB 6개월간은 단 한번의 미복약도 허용되지 않으며, 미복약이 확인되면 2년 또는 6개월의 확인투약을 재실시한다. 이후에는 3개월에 한번의 미복약은 허용한다.
- 확인투약의 확인빈도
Rifampicin과 Clofazimine의 복약을 매월 확인 · 실시해야 한다.
- 확인투약의 확인강도
 - 활동성환자는 담당 관리자가 직접 복약 확인
 - 비활동성환자 3개월마다 복약 확인
- 위의 사항을 지킨 경우 확인투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5) 약품 수급관리

- 연간소요량 산출: 한센사업자료실은 아래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연간 소요량을 산출한다.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의 소요량, 제5호 보고서식 다향 약품 수급 현황 등)
- 구매: 한센사업자료실에서 제출한 연간소요량을 참고하여 질병관리 본부가 구매한다.
- 공급: 질병관리본부 → 시 · 도 → 한센병전문진료기관 → 한센사업대상자
- 수급불균형의 조정: 일선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서 약품 사용 중 과 ·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센사업자료실이 주관하여 예비약품을 활용하거나 일선 전문진료기관간의 과 · 부족량을 조정 · 보급하여 진료활동을 지원한다.
-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은 즉각 폐기하고, 폐기량을 분기 보고시 질병관리 본부로 제출한다.(제5호서식, 제6호서식)

아. 나반응 치료

- 1) 나반응의 치료 원칙은 신경 손상과 눈의 손상을 줄이고 약품을 사용하여 병의 진전을 방지하고 통증을 완화하는데 있다.
- 2) 대부분은 corticosteroids, thalidomide, clofazimine으로 치료한다. 반응이 경하거나 보통의 통증이나 관절통이 있으면 aspirin이나 indomethacin으로 치료한다. 가끔 안티몬제나 chloroquine, colchicine, cyclosporin도 사용해 왔으나 표준 치료제 보다 더 효과가 있거나 안전하다고 증명된 바 없다.

○ Corticosteroids

Prednisone과 prednisolone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corticosteroid제 보다 값싸고 효과적이고 심각한 부작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 약들은 항염증, 면역 억제 작용 때문에 나반응에 사용하나 수분-전해질 대사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부작용의 빈도와 정도는 투여한 약의 용량과 기간에 따라 증가하나 이를 간격으로 투약한다면 크게 완화되거나 없어진다.

○ Thalidomide

Thalidomide 또는 -phthalimidoglutarimide는 glutamic acid의 유도체로서 화학적으로는 bemegride와 glutethimide와 관계가 있으나 약물학적 특성은 다르다. 이 약은 TNF- mRNA의 분해를 촉진시켜 혈청내 TNF-를 감소시키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기형 발생 때문에 남자나 폐경기의 여성에게만 국한하여 치료한다. 급성 나성결절홍반에서는 빠른 효과가 있고 prednisolone의 사용량이나 치료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만성 나성결절홍반에서는 입원 빈도를 줄일 수 있다.

○ Clofazimine

한센병에 대한 정확한 작용 기전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한센병의 주 치료 약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나반응의 치료에는 항염증 작용 때문에 사용하는데 확실한 작용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다. 만성 또는 재발성 나성결절홍반 치료제로서 자연형 과민 반응을 억제하고 steroid 부작용이 있을 때에 사용 한다. 화학요법 치료제로서 사용 후 나반응의 빈도와 증상의 정도가 크게 줄었다고 한다. 이 약은 thalidomide나 prednisolone처럼 빠르거나 효과적 이지 못하므로 주된 치료목적은 재발을 막고 steroid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자. 의료재활

1) 장애의 예방

- 한센병에 의한 장애는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함
 - 원발성의 장애는 다제요법 및 나반응에 대한 적극적 치료로 예방
 - 속발성의 장애는 외상, 감염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관계로 특별한 주의와 관리를 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함으로 이에 대한 주변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
- 감각이 소실된 환자는 궤양에 매우 취약하여 마지막에는 손가락이나 발가락 등을 잃게 되므로 환자들은 자신의 손과 발에 대해서 환부를 깨끗이 유지해야 한다.
 -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 갈라진 건조한 피부에 대해서 주의 깊은 관리를 하고
 - 매일 상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작은 상처가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치료하여야 한다.
- 신경이 마비되거나 힘이 약해진 근육을 가진 환자에서는 경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 신경염이나 궤양이 있어서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는 매일 능동적인 운동을 하여야 한다.
- 감각이 소실된 각막이나 토안이 있는 환자는 각막염이 생길 위험성이 크며 실명이 될 수 있다.
 - 수시로 눈을 깜빡이는 것을 자주하여야 하며 매일 눈의 이상 여부를 스스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 토안이 있는 사람은 눈운동이 필요하며 눈을 보호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수술적 치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눈이 빨갛게 보일 때는 홍채염이나 녹내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실명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다.
- 약물치료만으로 이미 원발성 장애를 가진 환자에서 속발성 장애를 예방하기에는 충분치 않으며, 환자 스스로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환자의 일상생활에 잘 맞고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환자에게 수행시키고 이를 관리하며 격려해 주어야 한다.

2) 한센병 재활치료

○ 재활의학적 물리치료

- 환부의 종창과 피부반흔에 의한 정상적 운동능력 범위가 제한되는 것을 예방
 - 말초신경염의 조기 증상을 발견하여, 말초신경병소의 합병증을 극복하고,
 - 이미 발생한 합병증에 기인되는 2차성 기형(속발성 기형)을 예방하며,
 - 이식수술을 위한 환자의 적응성을 평가하고, 수술 후 이식된 근육의 사용 방법을 알리기 위함을 목적으로 시행한다.
 - 피부의 보호, 원발성 및 속발성 기형 극복을 위한 운동
 - 신경손상 예방을 위한 운동제한
- ### ○ 보장구 장착
- 2차성 기형 발생에 의한 노동력 및 삶의 질 저하 예방을 위해 보조기 또는 보장구를 장착 사용한다.

3) 재활수술 개요

목록	원인	중요성	수술
족부궤양	후경골신경마비 및 감각소실된 발 보호 소홀	발의 지속적인 손상	손상부위 제거 및 여러 외과적 처치
발가락 굴곡 변형	후경골신경마비	족부궤양발생 위험성 증가	신경 감압에 의한 예방 및 외과적 교정
수부감염	감각소실된 마비	손사용 능력 소실	배농
초기 감각소실을 동반한 신경염	한센병 진행	마비성 기형	신경의 외과적 감압
토안증	안면신경 마비	실명 위험성	검안봉합술 등
족하수	총비골신경 마비	보행 기능 장애	후비골 건 전이술
손가락 굴곡 변형	척골 또는 정중신경 마비	손사용 능력 소실	건 전이술 및 이식 등

5. 한센병 전문진료기관의 입·퇴원관리

가. 국립소록도병원

1) 입원대상

국립소록도병원 입원 대상자는 한센사업대상자로 한다.

2) 입원 신청서류 및 절차

- 국립소록도병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입원신청서(국립소록도병원 발부) 1매

- 보건소장, 한센병관리전문기관 및 병·의원의 피부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재가치료에 관한 병력지 사본 1부

※ 진단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한센병환자(병력자 포함)임을 입증하는 진단서에 한하며, 병력지 사본의 경우 발급기관의 원본대조필이 있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 병원장은 입원신청서류 접수 시 우선 임시 입원 조치하고, 입원 여부를 결정하여 입원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입원 문의 연락처

- 서무과(복지계) ☎ (061)840-0588, FAX (061)840-0593

3) 퇴원대상

○ 퇴원을 원하는자

○ 병원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병원장의 진료상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병원장은 퇴원을 명할 수 있다.

4) 입·퇴원시의 조치

국립소록도병원장은 입·퇴원자에 대하여 한센사업기록표와 한센사업대상자 변동사항 보고서를 한센사업자료실에 매월 송부한다. 또한 진료기관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진료에 만전을 기한다.

나. 한국한센복지협회 연구원

1) 입원대상

- 감염성이 강한 한센병환자(양성), 나반응 또는 재발 등으로 인해 재가치료가 곤란하여 전문치료가 필요하다고 연구원장이 인정하는 자
- 물리치료 또는 재활수술 등을 위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연구원장이 인정하는 자
- 한센병의 임상연구, 교육·훈련의 목적으로 입원·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장이 인정하는 자

2) 입·퇴원 처리

- 입원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 입원결정서
- 기타 연구원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 다른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서 입원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한센사업기록표 및 병력지 사본 등 변동사항을 보내야 한다.
- 한센사업대상자 스스로 입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연구원장이 입원 여부를 결정한다.
- 한센사업대상자의 입·퇴원 시에는 해당 한센병전문진료기관과 의료관리에 필요한 제반정보를 교류한다.

3) 외국인환자 입원 관리

국내 체류 외국인 중 한센병 환자가 발견되면 사안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한국 한센복지협회 연구원에 입원 치료를 할 수 있으며, 양성 환자를 우선하여 내국인에 준한 치료를 하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를 한다.

다. 단기입원(연구원 및 지부, 민간 단체 병·의원)시설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 단기입원시설은 의사가 상주하는 의료기관에 설치운용하며 입원대상 선정은 한센병전문의사의 판단에 따르되, 일반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재가치료만으로는 효과적인 치료가 어려운 강양성 환자, 재발자, 나반응자, 궤양이나 물리요법, 재활수술이 필요한 자가 대상이 될 수 있다.
 - 한센사업대상자로서 일반 병·의원에서의 진료가 불편한 경우 또는 일반질환 진료를 위해서 단기입원시설에서 치료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 한센사업대상자의 입원진료는 주소지 또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다. 다만, 사업 대상 증가와 감소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에 의한다.

6.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

가. 사업계획 수립 지침

- 1) 한센사업지침에 따라 기관별로 한센병관리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 2) 목표량 달성을 위한 사업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고 실행계획과 일정표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3) 사업수행을 점검할 수 있는 지도·감독 체계와 계획에서 벗어나는 경우 이를 수정할 수 있는 수단과 절차를 확립하여 둔다.
- 4) 평가는 사업수행 단계에 따라 분기별로 사업의 추진과정 및 성과를 평가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 5) 시·도 지사는 제3호 서식에 의거 한센사업실적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검진과 치료사업의 목표 설정

- 1) 신환자발견을 위한 검진
 - 가) 목표량 설정
 - 관내 지역 주민, 정착마을 주민, 복지 시설 및 취약지 거주자 등에 대한 검진은 보건소, 정착마을 등 검진대상 지역과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의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목표량을 산출하여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나) 외래검진
 -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외래검진시설(피부과)의 전년도 실적 기준

다) 2017년도 신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 목표

(단위: 명)

사업별 서비스 기준시도별	계	이 동 검 진				외래검진
		소계	관내지역 주민검진	정착마을 주민검진	집단검진	
계	685,486	48,946	36,760	4,760	7,426	636,540
서 울	12,440	400	340	60	-	12,040
부 산	28,600	2,100	1,100	600	400	26,500
대 구	63,500	-	-	-	-	63,500
인 천	2,000	2,000	2,000	-	-	-
광 주	82,000	-	-	-	-	82,000
대 전	45,270	270	270	-	-	45,000
울 산	460	460	240	140	80	-
세 종	200	200	80	20	100	-
경 기	107,000	16,000	16,000	-	-	91,000
강 원	33,000	7,000	5,760	240	1,000	26,000
충 북	55,300	3,300	1,320	30	1,950	52,000
충 남	2,666	2,666	2,100	210	356	-
전 북	45,020	2,520	1,440	1,080	-	42,500
전 남	54,310	3,310	2,480	590	240	51,000
경 북	1,500	1,500	1,300	200	-	-
경 남	128,720	3,720	2,050	1,590	80	125,000
제 주	23,500	3,500	280	-	3,220	20,000

2) 한센사업대상자 진료 및 정밀진찰

가) 목표량 설정

- 한센사업대상자 서비스 및 사업지도(2016년 9월말 한센 서비스 대상자수 기준)
 - 한센사업대상자 진료
 - 요치료자는 월1회 MDT시행
 - 한센 서비스 대상자 중 재발관리가 필요한 자는 년 1회 재발관리를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 실적은 투약.진찰.검진 등을 위한 한센 서비스 대상자 참여 횟수를 말함. 다만, 2개월 이상 투약처방자는 월단위로 계산함.

○ 정밀진찰

- 요치료자는 양성자 년 2회, 음성자 년 1회의 정밀진찰을 한다.
- 한센 서비스 대상자 중 재발관리가 필요한자는 년1회 정밀진찰을 한다.

※ 한센 서비스 대상자의 정밀진찰은 진료의사 판단 및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2017년도 한센 사업대상자 진료 목표

(단위: 명)

구 분 서비스기관 기준시도별	한센사업대상자 현황				한센사업 대상자진료	정밀진찰
	계	요치료	서비스 대상자	비 고 (재발관리)		
계	10,533	6,087	4,446	(3,365)	76,409	9,552
서 울	612	452	160	(152)	5,576	619
부 산	718	443	275	(176)	5,492	623
대 구	1,386	589	797	(452)	7,520	1,068
인 천	204	132	72	(60)	1,644	192
광 주	255	127	128	(122)	1,646	253
대 전	230	125	105	(80)	1,580	206
울 산	96	73	23	(23)	899	98
세 종	45	31	14	(11)	383	42
경 기	1,140	835	305	(279)	10,299	1,142
강 원	236	140	96	(86)	1,766	227
충 북	257	126	131	(118)	1,630	244
충 남	263	145	118	(72)	1,812	218
전 북	1,100	570	530	(370)	7,210	942
전 남	1,284	524	760	(607)	6,895	1,141
경 북	1,528	783	745	(582)	9,978	1,365
경 남	1,109	938	171	(171)	11,417	1,101
제 주	70	54	16	(14)	662	71
국립소록도병원 (전남에 포함)	528	248	280	(153)	3,129	409

3) 재활사업

시설별 · 기관별 목표량을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목표량을 설정 · 시행한다.



III

한센사업 대상자 사회복지

2017년 한센사업 지침

1.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2.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3. 정착마을 관리
4. 재가 한센사업 대상자 관리
5.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환수

III. 한센사업 대상자 사회복지

1.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가. 목적

한센사업대상자 중 정착마을 간이양로주택 거주자에 대하여 거주자 급식비, 간호 조무사, 취사·세탁부 등 운영비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개축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도모

나.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 1) 지원대상: 정착마을의 간이양로주택 거주자
- 2) 지원기준
 - 수용자 급식비: 2,110원/인/일
 - 보조요원 및 취사세탁원 인건비(연봉): 10,920천원/인/년
 - 난방비: 540천원/세대
- 3) 행정사항
 - 현재 운영 중인 간이양로주택 거주자에 대하여 지원
 - 보조요원 배치는 거주자의 장애정도, 거주인원수, 건물형태(연립주택, 단독 주택 등)을 감안하여 예산지원 범위 내에서 적정인원을 배치
 - 거주인원이 감소될 경우 보조요원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지원 인원을 축소 할 것
 - 단,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기 어려울 경우, 한국한센총연합회에 등록된 보건 요원을 생활보조원으로 하여 대체 가능
 - 각 시설에서는 지출결의서(제16호 서식), 인건비지급내역서(제17호 서식), 근무상황부(제18호 서식) 일관된 서식으로 작성·비치하고 교부된 예산은 집행 및 관리를 철저히 함
 - 간이양로주택 생활 불편 시설(도배, 장판, 수도 등)은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다.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

1) 지원목적

정착마을 내 노후 간이양로주택에 거주하는 한센양로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시설을 제공하여 신체적 불편사항 및 여생에 대한 불안심리 해소

2) 지원시설 선정 시 유의사항

가) 기존시설 중 시설 노후화 되고 안전관리상 문제가 있는 시설 우선 지원

- 보조요원 및 취사세탁원 배치여부 등

나) 시설의 유휴화 미연 방지

- 입소인원 및 입소희망 인원, 입소평균연령 등에 대한 사전 조사

다) 정착마을 공공시설물로 운영 여부 확인

- 시설 입소자에 대한 편의 제공 프로그램 점검 등

라) 입소자 감소에 따른 단기(한시)운영 시설은 제외

- 단, 안전관리 유지가 어려울 때에는 자체적으로 시설 보수 조치

3) 시설의 규모 및 구조설비

가) 일반사항

- 건물은 입소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한 장소에 적합한 구조 설비를 갖추어야 함.

- 건물은 건축법에서 규정한 내화건물로 하고, 건축기본법, 소방법 등이 정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나) 가구별 필수 설비

- 거실(독신 또는 동거용): 1인실(33m^2)이내, 2인실(45m^2)이내

※ 지자체 특성에 따라 건축비의 차이, 예산의 추가확보 등으로 인한 1세대당 m^2 수를 조정·변경하여 건축가능

※ 단, 당초 사업계획에서 세대수 조정 등을 통한 m^2 확대변경은 절대불가

- 취사설비: LNG, LPG가스 겸용 입식설비로 거실면적 안에 포함

- 욕실: 화장실(좌식) 겸용설비로 거실면적 안에 포함

다) 난방, 통풍, 채광, 조명, 방수, 경보장치

- 난방설비: 개별 LNG, LPG겸용 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온돌식)를 원칙으로 하고(불가능할 경우 (공동)기름보일러 설치가능)

- 통풍, 채광, 조명, 방수설비: 일반건축물 기준을 적용하되 보건위생 및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함.

- 경보장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때 사용할 수 있는 구호요청 장비

- 급·배수시설, 등화 및 소방시설

라) 공동구비시설

- 사무실: 오락실(문화, 오락기구 비치), 의무실(비상구급약품 구비), 숙직 시설로 겸용토록 설계
 -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노인 · 장애인의 이동 및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법령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
- ※ 공동구비시설은 필요시 설치토록 할 것.

4) 설계 및 시공

- 가) 건축법에 의한 설계 및 건축허가를 취득
- 나) 시공업자는 예산회계법 등에 의거 선정
- 다) 설계자의 책임감리로 부실공사 예방
- 라) 기타 사항은 지역 실정을 감안 추진
- 마) 건축설계 시 한국한센총연합회와 협조 및 협의를 통해 한센인 의견 반영된 시설 건축

5) 사업계획서 필수 내용

가) 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

-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설치장소(신규 시설과 이전 시설 및 전환 시설의 경우 시설 부지 확보방안),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 및 규모(사업량), 소요 비용(설계비포함)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 편의시설 설치, 사업별 추진일정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재원조달방법에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 계획서에 포함

- 나) 건축에 관한 종합적인 설계도서 및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지사가 검토(제22호 서식)하되 기술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설계 검토 의견서(제24호 서식)를 첨부 함.

※ 국고보조금 교부는 기본설계만으로 우선 신청하고 질병관리본부 제출은 생략할 것

- 다)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은 세부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및 사업수행 능력, 자부담에 따른 법인의 재원확보방안 등을 검토한 시·도지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시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에 따른 재원확보 내용을 면밀히 검토·확인하고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

※ 자부담은 예산신청 시 부담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 사항이 아님

6)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 가) 근거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 나) 국고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질병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제25호 서식)

- 다) 시·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신청시 변경신청서(제25호 서식) 및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 결과(출장보고서 사본)를 첨부하여야 함
- 라) 시·도지사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여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함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당초 보조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 자체부담 조정에 따른 사업비·사업량의 변경
 - 공기연장 (시·군·구 승인 사항)
 - 낙찰차액 활용사업
- ※ 입찰결과에 따라 차액이 발생할 경우 같은 시설의 다른 기능보강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7) 행정사항

- 가) 사업수행 도(道)에서는 현지 확인 등을 거쳐 대상 정착마을을 선정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
- 나) 동 사업시행 시 해당 시·도에서는 한국한센총연합회 해당 지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후 한국한센총연합회 중앙회의 의견이 타당할 경우, 해당 시·도에서는 해당 정착마을을 결정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다) 시·도지사는 시설 신축부지 확보 등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이 기일 내에 제출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시설기능보강사업은 조기에 착수하여 당해 연도에 완공토록 지도하되, 부득이 연내 완공이 어려운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 시·도지사는 사고이월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여야 함.
- 라) 집행 완료 시 다음 양식에 따라 정산 보고를 할 것.

사업량					년도 예산현액(천원)			년도 집행현황(천원)			불용액			시설 종류
정착 마을명	건축 면적 (m ²)	개소 (동)	세대수	거주 인원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A)	지방비	

- 마) 각 시·도는 차년도 예산 계상 시 한센생활시설 및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에 대한 증빙 서류 및 점검표(제19호, 20호 등)를 제출 한다.
- 바) 질병관리본부는 시·도 자료를 종합하여 사업이 시급한 곳부터 지원한다.
(2013년부터 적용)

사) 시·도는 한센간이양로주택 현황을 (제26호 서식) 작성하여 전년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파악하여 익년도 3월 말까지 질병관리본부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한센총연합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별표 4의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설 2008.9.18>

안전등급 기준 (제11조의5 관련)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8) 중요재산(한센간이양로주택 등 관리)

- 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중요재산(한센간이양로주택 등)을 취득할 경우 서식 45호 '중요재산 현황'을 취득 후 15일 이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39조 중요재산의 보고)
- 보조사업자 등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질병관리본부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해서는 아니된다.(40조 재산 처분의 제한)
 - 보조사업자 등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때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41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기획재정부)

제7장 보조사업 사후관리 (‘보조금법 제6장 보칙’ 관련)

제39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보조금법」 제35조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3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보조금법」 제35조의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 자산평가업무에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 제②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을 「보조금법」 제35조제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 중요재산공개시스템 또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공시해야 하고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변동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
 3. 항공기의 경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
-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39조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을 관리하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재산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처분제한과 반환은 「보조금법」 제35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②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재산양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며 「보조금법시행령」 제16조제2호의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조건 등을 통해 정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제41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다.

②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가. 목적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 생활안정 도모

나.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최저생계비 100% 기준은 중위소득 40%이며, 최저생계비 150% 기준은 중위소득 60% 기준임
- 한센간이양로주택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 지원내용

- 1인당 연 1,726,000원/인/년
 - 급량비: 3,800원 × 365일
 - (1인당 연지원액) 피복비 38,000원, 월동대책비 91,000원(김장비 38,000원, 침구비 53,000원), 수용비 73,000원, 난방비 137,000원
- 지급일
 - 지급기준일 매월 15일, 지급일 매월 20일(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
- 행정사항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전환 시 이중급여, 누락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재가한센인 생계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생계비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생활실태 조사 후 지원여부 결정
 - 지급대상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가한센인 생계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 사망한 때
 - 지급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지급대상자 전출 시, 전출한 월까지는 전출한 지역에서 지급하고, 익월부터는 전입한 지역에서 지급한다.

라. 사업 수행 체계

1) 등록신청

- 본인 및 대리인이 관할 시·군·구에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신청주의)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사업 담당 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2) 소득 재산 조사

- 시·군·구청장(통합조사관리팀) 또는 읍·면·동사무소장(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소득·재산 조사 실시
- 신청인으로부터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통합조사관리팀에 조사 의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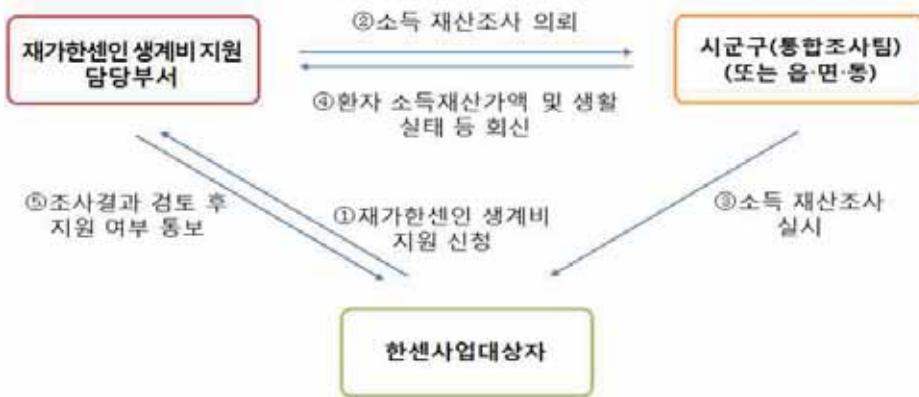
3) 지원대상자 선정 및 등록

-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시·군·구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등록

4)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관할 시·군·구에서 선정된 대상자의 계좌에 생계비 지원

<사업 수행 체계도>



마.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1) 신청서식

-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제27호 서식)
-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제28호 서식)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제29호 서식)

2)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1부
- 소득·재산 신고서(해당자에 한함)(제30호 서식)
- 고용·임금확인서(해당자에 한함)(제31호 서식)
-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에 한함)(제32호 서식)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해당자에 한함)(제33호 서식)

바. 소득·재산 조사 및 평가의 일반원칙

소득·재산기준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2017년도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안내의 내용을 준용하여 적용

1) 환자 가구 기준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대상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자
- ※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환자 가구에 포함되는 자의 판단 기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 포함)
- ※ 피부양자³⁾가 있는 경우, 피부양자를 가구수에 포함하여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

2) 소득평가액을 소득으로 간주함(세전금액)

- 소득평가액이란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을 반영

3) 재산은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

- 환자가구 = 재산의 종류별 가액(일반재산)

4) 소득기준은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기준으로 가구별 중위소득 60%이하로 함

5) 재산기준은 '지역별·가구규모별 일반 재산의 최고재산액(대도시 기준)⁴⁾'의 150% 이하로 함

3) 피부양자 : 근로능력이 없어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법령상 19세 이하 60세 이상의 남자와 19세 이하 50세 이상의 여자

4) 2003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재산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이 지침에서는 종전 재산기준에 가장 근접한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을 기준으로 사용함

사.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

1) 조사 절차

- ① 주민등록지 관할 시 · 군 · 구에 재가한센인생계비 대상자 등록 신청
- ② 시 · 군 · 구에서는 환자가구에 대해 시 · 군 · 구청(통합조사관리팀) 또는 읍 · 면 · 동사무소(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소득 · 재산조사 의뢰
※ 조사의뢰 시: (제30호 서식)(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제34호 서식)(소득 .재산 조사 의뢰서)과 소득.재산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조사를 의뢰
- ③ 시 · 군 · 구청(통합조사관리팀) 또는 읍 · 면 · 동사무소(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는 환자 가구에 대한 소득 · 재산조사 실시
- ④ 시 · 군 · 구청(통합조사관리팀) 또는 읍 · 면 · 동사무소(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는 환자가구에 대한 소득 · 재산조사 결과를 보건소에 통보
※ 통보 시 다음 서식에 의함(제35호 서식(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대상자 소득.재산 조사 확인 결과 통보서))
- ⑤ 시 · 군 · 구는 시 · 군 · 구청(통합조사관리팀) 또는 읍 · 면 · 동사무소(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로부터 회보 받은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자(환자)에게 통보

2) 조사 기준

- ① 소득기준
 - 수급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양비, 사적이전소득, 금융재산, 금융재산공제는 제외함
 - ② 재산기준
 - 재산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대도시 기준으로만 하고자 함
- ※ 재산기준 환산액: (중위소득 40%/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4.17%] + 일반재산의 기초 공제액[대도시:5,400만원])*150%
- ※ 재산기준을 소득기준으로 환산해서 확인 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기준, 소득기준을 명시하기로 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2017년 중위소득	1,652,931원	2,814,449원
생계비지원 소득기준	991,759원	1,688,669원
2017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	69,855,453원	80,997,113원
생계비지원 재산기준	104,783,180원	121,495,669원

아. 지원대상자 결정 및 등록

1)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

- 가) 시·군·구는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의 소득·재산조사 결과
통보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신청자(환자)가 선정 기준에 부합한지를 검토
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
- 나) 지원이 결정되면 지원신청달부터 지원함
※ 예산지원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자. 지원대상자 자격관리

1) 지원자격 변동사항 등의 확인 및 관리

가) 정기 재조사

-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
 - 조사 시기: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는 매 1년마다 실시
 - ※ 차년도 대상 지원을 위해 하반기(10월~11월)에 정기 재조사 실시
 - 재조사 시 제출서류: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

나) 수시 재조사

- 정기 재조사 대상자 이외에 소득·재산의 변동이 의심되는 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판단하여 수시 재조사 실시 가능(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즉시 탈락 조치)

2) 지원대상자의 퇴록

가) 퇴록 기준

- 소득·재산의 변동
 - 정기 재조사의 경우: 기준 초과 시 등록일로부터 당해년도 12월 말까지 보장 후 퇴록
 - 수시 재조사의 경우: 소득·재산의 관련사항 변동이 의심되어 수시 재조사를 실시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이 있는 날의 해당 월에 퇴록

3) 지원금 환수 관리

- 퇴록 또는 자격변경 등의 사유로 과다 지급된 지원금: 각 보건소에서 환수

차. 소득 및 재산조사 방법

1) 소득 및 재산조사의 의의

- 시·군·구 보건소는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대상자의 자격 결정을 위해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
- 등록결정 이후에도 지원대상자의 지원자격 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정기 재조사와 수시 재조사 실시

2) 소득 및 재산조사의 종류

가) 조사의 일반원칙

- ① 자산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⑦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되는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원칙적으로 자동반영되나,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조사·확인 후 반영
- ⑮ 수급자의 소득·재산 및 인적변동 등 변동사항은 변동 “발생월”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임
- ⑯ 단, 발생월의 정보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확인월”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
※ 해당 공적자료가 없거나 자진신고 이전에는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
- ⑰ 수급자가 자진신고한 소득·재산 및 인적변동 등 변동사항의 경우에도 “발생월”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
※ 공적자료의 변동으로 지원자격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보건소에 통보
- ⑲ 변동사항의 처리 방법은 부정수급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규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정수급 기간 및 금액은 부정수급 발생월부터 종료월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 ⑳ 보장기관(시·군·구 보건소)의 귀책사유로 미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한 소급지급도 발생월부터 동일하게 적용함
- 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소득·재산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공적자료 제공 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수정결과 적용
※ 이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 ③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는 ‘지출실태 조사에 의한 소득확인’을 통해 소득을 추가 반영할 수 있음

나) 신청조사

① 조사의 목적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신청에 대해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

② 조사대상 및 내용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재산수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 변동 확인, 필요자료의 제출요구 및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③ 조사시기

- 재가한센인 생계비 신규등록 및 재등록 신청서 접수 즉시 조사

④ 조사결과의 처리

- 대상 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통지

※ (통지기일)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다) 확인조사(정기 재조사, 수시 재조사)

① 조사의 목적

- 대상자의 자격유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

② 조사 내용

㉠ 정기 재조사

- 차년도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대상자 확정에 활용

㉡ 수시 재조사

- 소득·재산이 변동(수급자로 전환)된 가구의 소득·재산수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③ 조사시기

㉠ 정기 재조사: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는 매 1년마다 실시

㉡ 수시 재조사: 수시 (해당사항에 한함)

④ 조사결과의 처리

㉠ 정기 재조사의 경우

- 기준 초과 시 등록일로부터 당해년도 12월 말까지 보장 후 퇴록
- 단, 수급자로 변경 된 경우는 변동이 있는 달 퇴록

㉡ 수시 재조사의 경우

- 소득·재산 등의 변동(수급자로 전환)이 의심되어 수시 재조사를 실시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이 있는 달 퇴록

※ 변동이 있는 날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소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소득 및 재산 재조사를 통보받은 날로 퇴록)

카. 소득조사

1) 소득의 의미

○ 소득의 의미

- 대상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즉,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

2) 소득평가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 산정결과 소득평가액이 “-”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

가) 소득 산정기준

① 상시근로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을 반영
- 단, 기타 사업소득은 변경상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대상자가 소명시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 반영

※ (주의) 동일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면서 월 보수만 변동되는 경우 군인 등은 전월 소득이 아닌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 평균소득을 반영

※ 단 전년도 소득액 적용이 곤란하다고 대상자가 주장하고 해당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 제출시 전월 소득액으로 변경 반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수월액이 변경된 전 후의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② 일용근로자소득

-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반영⁵⁾

③ 근로 및 사업운영 등 상태가 변경(신규취업, 이직, 실직, 퇴직, 휴직, 복직, 폐업 등) 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된 월부터 변경된 상태를 반영하여 소득액을 산정

- 공적자료로 조회된 소득이 현재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반영 제외 가능. 다만, 기 지급된 급여의 환수 여부, 소명

5) 임시, 일용직 근로자 및 영세 자영자는 적당한 소득 파악 및 관리를 위해 기준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을 반영함. 단, 확인조사시 조회되는 일용근로소득은 6개월 평균소득으로 반영

내용에 대한 추후 사실여부 등 확인 필요

※ 소득의 변동 상태를 발생월에 바로 반영하는 것이 발생월 원칙에 타당(조사의 일반원칙 참조)

④ 그 외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 소득

- '전월 소득'반영

나) 실제소득

①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②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제2항)

수급(권)자의 소득산정 시 수급(권)자의 소득에서 압류가 되는 금액은 실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음에 유의.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재산으로 산정)

ⓐ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

㉡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아동보육료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육비

ⓒ 중·고·대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생계지원형 금품 제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유자녀장학금

ⓔ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국가나 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대상자에게 일시적·정기적으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금품으로서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월 30만원 이내의 교육 부대비용

- 단, 교육부대비용으로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초과액에 대하여 전액 소득으로 산정(예: 교육부대비용으로 매월 35만원 지급 시 5만원은 소득으로 산정)

※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육료·학자금은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에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수급(권)자를

거치지 않고 보육·교육기관 등에 직접 납입하거나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일정한 납입확인을 거친 후에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수급(권)자가 자신의 생계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금품에 한정됨

- 부양의무자가 학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아니며 동 금액은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하여야 함
- 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는 양육수당
- ⑥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영유아보육비
- ⑦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⑧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대상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
 - 다음의 3가지 특징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단, 공공근로사업 노임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에 포함
 - ⑨ 조례에 지원 대상이 수급자나 저소득주민으로 명시
 - 저소득주민은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민’ 등과 같이 선정기준이 조례에 명시되어야 함
 - ⑩ 동 금품의 조성을 위한 예산이 100% 지자체의 부담인 사업
 - ⑪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할 것
 - 예를 들어, 교육급여의 부가서비스인 중고생 교복비, 생계급여의 부가서비스인 동절기 난방비 등
- 다)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2)
 - ⑫ 장애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 ⑬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및 동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 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 ⑭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동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 ⑮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
 - ⑯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 및 「동법시행령」제22조에 따른 재활보조금
 - 재활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활(치료·요양 포함)에 지출하는 비용 중 동 재활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로 인정하여 차감

- ④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2제1항제1호에서 정한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이 국민체육공단으로부터 받은 경기력향상 연구연금
- ② 질병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 ㉠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기관에 준하여 처리
※ 보장결정 후에는 의료급여 지급에 따라 의료비의 본인부담이 감소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급여액을 산정해야 하며,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해야 함
- ㉡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 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 ㉢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지원금 (월 15만원)
- ③ 양육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비 및 동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추가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소년소녀가정(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 가는 경우) 부가급여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재활보조금
-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65세이상인 수급자(월20만원 지급)
※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는 '15. 7월부터 삭제되었음에 유의
- ㉤ 입양특례법 35조의 규정에 따른 양육보조금
㉥ 농어민가구의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 15만원 이내
- ④ 국가유공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체육유공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

- 하나 이상의 근로소득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
- 재산소득, 이전소득 및 모든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의 일용근로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자동공제 됨에 유의

① 등록장애인인 수급(권)자가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50% 공제 적용

※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복지관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하며, '정신질환자 직업 재활사업'은 「정신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주간재활시설, 정신질환자직업 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

② 24세 이하(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25세 이상 (199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의
- 근로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법정부 '청년고용활성화 대책' 마련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 초·중·고등학생이란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교육급여 지급 대상과 동일

③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의미하며, 야간
대학생을 포함하고, 「평생교육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학사 및 학사 이상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정규대학생 (사이버대학생, 학점은행제 대학생)도 근로소득 공제 적용

- 대학생이 휴학, 졸업유예 시 최대 각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함

④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
개월 미만의 여성, 사회복무요원 및 상근예비역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적용

※ 북한이탈주민은 특례보장 기간 중에만 인정. 특례기간 종료 시 일반수급자에 해당

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10% 공제 적용
※ 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
등을 의미하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
기관을 의미함

마)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요인[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

① 1년에 6회 미만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중 부양의무자 또는 친인척의 정기

- 지원 사전이전소득의 합으로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금액
- ② 1년에 6회 이상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중 친인척 등(부양의무자 제외)의 ‘지원자 당 지원건별 지원금액’ 중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 이하 금액
 - ③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권)자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된 고지서에 따른 본인 부담분 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는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를 보장기관에 통보한 후 이를 확인하여 소득산정에 반영
- ※ 체납자로 파악되거나 납부유예자 등으로 분류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로 확인되면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에서 차감
- ※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급여’는 공적이전소득이며, 공제대상이 아님에 유의
- ④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 (농어민가구 특례 94쪽 참조)
 - ⑦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1ha 미만 소유한 사람이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조·제16조·제24조 및 제40조의2에 따라 받은 경영이양 소득 보조금, 친환경 농업소득 보조금, 조건 불리지역 소득보조금 및 밭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받은 쌀소득 등 보전직접 직불금
 - ㉡ 농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상환액 중 이자비용 50%

3)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가) 근로소득

- ① 정의
 - ⑦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단,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소득세법」제12조제3호더목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에 포함
- ※ 국가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산정에서 제외(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서목)
- ② 유형
 - ⑦ 상시근로자 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 받는자의 근로소득
 - ㉡ 일용근로자 소득: 다음과 같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⑤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취업성공 패키지 (고용노동부)의 일경험지원프로그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⑥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⑦ 조사방법
- ⑧ 상시근로자 소득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우선 반영
 -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됨
 -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 국민연금공단 자료(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 ⓒ 근로복지공단 자료 (직장가입자의 월평균보수)
 - ⓓ-1 산재보험 :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 ⓓ-2 고용보험 :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 장애인고용장려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장애인 고용 부담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보수월액)
 - ※ 장애인 근로자인 경우 해당
 - ⓕ 국세청 자료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 ⓐ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입증자료는 시스템에 등록)
 - 예)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실직으로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시 수정결과 반영
 - ⓑ 국세청 종합소득만 확인된 자로서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이직한 경우는 고용기관에서 발급한 월급명세서를 확인하여 인정
 - ⓑ 공적자료를 통해서는 근로소득이 과소 평가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 적용대상 : 월급 이외의 실적급이나 수당이 수입의 주를 이루는 근로자 예) 택시·관광버스·용달차 기사·관광안내원 등
 - ⑨ 일용 근로자 소득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국세청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조회 결과를

반영하되,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
-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상실통지서, 퇴직증명서 등 고용주 또는 공공기관의 입증자료 제출시 제한적으로 인정

※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EITC(근로장려금)제도시행을 위해 사업장에서 일용직에게 지급한 임금을 국세청으로 신고한 자료임

- ⑤ 공적자료를 통해서는 근로소득이 파악되지 않거나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 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 적용대상 : 공적자료가 없거나 있어도 근로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파출부, 건설인부 등 단순 일용노무자

⑥ 자활근로소득

- ⑦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매월 반영

-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시·군·구에서 매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임금지급 내역을 반영

- ⑧ 아래의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 자활근로사업의 참여로 인한 급여 중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 취업성공패키지(노동부) 참여로 얻는 훈련수당 중 다음금액
 -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1단계 취업상담 참여수당 25만원/월
 - 취업성공수당: 1인당 최대 150만원
- 내일배움카드제(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최대 11.6만원/월
- 국가기관·전략직종훈련(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최대 41.6만원/월

⑨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하는 자 중 '건강 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의 임금

※ 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 가입된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임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로 조회되어 상시근로소득에 반영됨

※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소득은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개발추진중) 동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참여자 중 수급자에 대해서는 소득 반영할 수 있도록 처리

나) 사업소득

① 농업소득

㉠ 정의

- 경중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조사방법

- 공적자료(농지원부) 또는 신고를 통해 농지 소유여부, 면적, 재배작물을 파악
- 농산물 표준소득정보의 단가를 참조하여 작황상황, 시장가격, 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경작면적에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농업소득 산정

※ 농산물 표준소득정보: 농촌진흥청(www.rda.go.kr)에서 「기술정보」-「농축산가격정보」 참조

농업소득 = 경작면적×작물별 단가

- * 경작면적: 농지원부를 통해 확인
- * 재배작물 확인: 농지원부 또는 신고
- * 재배작물별 단가(= 단위 면적당 작물별 소득-필요경비): 농산물 표준소득정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쌀소득보전직불금 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농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축산업소득은 가축 종류, 사육두수 등 신고자료를 통해 산정

② 임업소득

㉠ 정의

- 영림업(營林業) ·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임목재산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임업 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신청대상자에게 임업협동조합, 임산물종합유통센타, 임산물직매장, 목재 종합집하장 등 해당지역 임산물 유통기관의 판매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산정

③ 어업소득

㉠ 정의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가가 어업경영의 결과로 얻은 총수입에서 동 수입을 획득하는데 소요된 소모적 비용을 차감한 금액

㉡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어업권 및 선박 보유여부를 제공하므로, 이를

- 통해 어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신청대상자에게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을 통하여 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 산정
- 공적자료를 통해서 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④ 기타 사업소득

- ① 정의: 도매업 · 소매업 · 제조업 ·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② 조사방법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보유여부 및 신청대상자 소유 사업장 피고용인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 신청대상자 소유 사업장 피고용인 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시점부터 확인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로 파악이 곤란하거나 과소 파악되는 경우
 -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서적 · 화장품 · 학습지 · 정수기방문판매 등)는 본사의 월급명세서 등을 발급 · 제출토록 하여 국세청 종합소득과 비교하여 실제소득 반영
 - 국세청 소득자료만으로는 소득을 산정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출 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 ※ 예) 행상, 노점상 등 소규모 영세자영업(고정적인 부업 포함) 등

다) 재산소득

① 임대소득

- ① 정의: 부동산 · 동산 ·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②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임대소득을 우선 반영
- 공적자료 조회 결과 건물 · 상가 · 본인 거주 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소득 파악
- ※ 임대소득은 국세청의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 정보를 추가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으로 연계하고 있으므로 성실신고하도록 안내 요망

② 이자소득

- ① 정의

- 예금 · 주식 ·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이자소득에서 이자소득 공제액 12 만원을 차감한 금액

- 이자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이자소득* - 12만원** (이자소득 공제액)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료에서 조회되는 이자 소득으로 연 10만원 이하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계좌는 수집 대상에서 제외
- ** 생활준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14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2.4% 적용)

㉡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이자소득 조회결과를 반영

③ 연금소득

㉠ 정의

-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
-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 적용

- 연 1회, 연 2회 수령하는 상품의 경우 월할하여 소득으로 적용

※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는 연금소득이 아닌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함에 유의

④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 정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지원사업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 조사방법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등 가입여부 확인하여 적용

-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은 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중 50%는 소득에서 공제. 지급받은 연금누적액은 부채로 반영

※ 단, 연금누적액이 금융회사 부채(예를 들어, 계좌명이 주택연금대출 등으로 표시되는부채)로 조회되는 경우 연금누적액이 이미 부채로서 반영되었으므로 연금 누적액을 부채로 직권 재입력하지 않도록 유의

라) 기타소득

①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항목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시까지는 해당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 토록 하여 자체 파악 요망

㉠ 개념

-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 연금 · 급여 · 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⑤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는 수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7의제4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5%이하의 금액

⑥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 복지급여 연계 자료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비 및 동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추가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안내'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 입양특례법에 따른 양육보조금(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 타 기관 연계 자료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급여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 보상금,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25자녀 수당 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보상금)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받은 쌀소득등보전직접 지불금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연금 및 수당: 경기력 향상 연구연금,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연금 및 수당 등
-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지원금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각종급여 : 간호수당, 부양 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등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 석면피해 구제법 제10조에 따른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1ha미만 소유 또는 임차한 자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4조 및 제16조에 따라 받은 경영이 양소득보조금,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밭농업 직접지불보조금
- ⑤ 조사과정에서 추가 확인되는 다음 급여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수당,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지원금(재활보조금, 피부양 보조금)
 - 자자체 지원: 이 · 통장 등 직책수당, 출산 · 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등
 -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 외국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 급여

타. 재산조사

1) 재산가액 산정

가) 재산가액 산정기준

-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하며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함

나) 재산의 의미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사업에서는 재산을 일반재산과 자동차 재산으로 산정
※ 금융재산은 확인하지 않음

2) 재산의 종류

가) 일반재산

① 일반재산의 범위(주거용재산 포함)

- ⑦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2호, 3호에 따른 토지(논, 밭 임야 등), 건축물(시설물 등) 및 주택

- 종중재산, 마을공동 재산 등 공동재산은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 완료시 그

-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하고, 타인에게 명의 변경시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 ㉡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
 - ㉢ 주택 ·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 100만원 이상의 가축 · 종묘 등 동산
 - 단,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 ㉤ 지방세법 제6조 제11호에 따른 입목재산
 - ㉥ 「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 지방세법 제6조 제14호~제18호에 따른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 회원권 등
 - ㉨ 소득세법 제89조2항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
 - ㉓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 ㉔ 「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가)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중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은 주거용재산으로 분류하고, 별도의 재산의 소득환산율 적용함에 유의
 - 범위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 및 그 부속토지
 - *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이외에도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재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신청대상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및 부속토지, 임차보증금이 없는 경우 1호에 한해 인정)

② 적용한도

- 신청대상자가 해당 재산에 거주하는 경우 1호(또는 세대)에 대하여 아래 표의 한도까지만 주거용재산으로 인정

<주거용재산 한도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억원	6,800만원	3,800만원

나) 자동차

- 지방세법 제124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3) 재산의 조사범위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신청인,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조사
 - 다만, 군복무, 해외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사망후 미상속 등의 사유로 조사대상 가구에 속하지 아니한 자 명의의 재산을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에 포함
 - 미상속 재산 반영 방법
 - 사망자의 미상속 재산을 지원대상자가 사용·수익하면 지원대상자의 재산에 포함
 -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된 지분율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재산으로 반영
 - 지원대상자가 민법상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을 포기하거나 지분율보다 적게 상속받은 경우 포기한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 하므로 지원대상자의 기타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

※ 상속재산 지분율: 상속대상자가 배우자인 경우 지분은 '1.5자녀는 '1'이므로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지원대상자인 배우자와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녀 3명이 동시에 상속받는 경우 지원대상자인 배우자의 지분은 1.5/4.5에 해당함.

4) 재산가액 산정기준

- 재산가액은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

재산항목		산정기준
일반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보정계수(3.5)
	가축·종묘 등의 동산	조사일 현재 시가(신고가액)
	입목재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어업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자동차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	

5)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가) 일반재산

- ① 주거용재산(주거용재산 환산율 월 1.04% 적용)

공적이전소득 항목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시까지는 해당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자체 파악 요망

①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 정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1~2호에 따른 단독주택 · 공동주택 및 그 부속 토지, 주택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준주택 및 그 부속토지
- 조사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주택, 공동 주택, 준주택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주택의 부속토지가 주택과 별도 등기되어 있어 공적자료로는 주택의 부속 토지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공적조회 자료를 기준으로 ① 주택과 토지가 동일 지번이고, ② 그 토지의 주택정착면적(주택의 건면적, 바닥면적)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 5배,
그 밖의 지역의 토지 : 10배
 - ⓑ 부속토지가 주택정착면적의 5배 이내일 경우 전부 주거용재산으로 인정 하여 주거용재산 환산율(월 1.04%) 적용, 5배 이상일 경우 토지소재지가 도시지역인지 여부 담당자 확인하여 추가 면적을 주거용재산 환산율로 적용할 것인지 판단
※ 부속토지가 도시 또는 그 외 지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담당자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을 통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여 적용 (<http://luris.molit.go.kr>)
 -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주택부속토지가 인정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주거용재산 환산율(1.04%)을 적용하고, 초과면적은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
-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 정의: 단독주택 · 공동주택, 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 목적으로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 보증금 등)
 - 조사방법: 116쪽 주택 임차보증금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
※ 주택 임차보증금이므로 적용율 0.95를 적용함에 유의
 - ㉢ 기타 거주를 목적으로 한 재산으로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정의: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재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신청대상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및 부속토지, 임차보증금이 없는 경우 1호에 한해 인정

- 조사방법

- 신청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방세법상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에 대한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주거용재산에 방문하여 조사
- 해당 재산에 대한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주거용재산으로 산정

② 토지, 건축물 및 주택

① 정의: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3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축물: 지방세법 제6조제4호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등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 조제4호):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

<참고> 유형별 시설종류

- 레저시설: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 옥외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소
- 도크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
- 급·배수시설: 송수관, 옥외 하수도, 지하수, 복개설비
- 에너지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
- 기타시설: 잔교, 주차시설,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 부수시설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기타승강시설, 보일러 등

-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조사방법

- 토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토대로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함께 제공되는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결과 토지 면적이 공부면적(공공문서기록면적)과 현황면적(실제 측량된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현황면적 적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토지가액은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으로 제시되며 적용율은 소득인정액 산정시 자동 적용

- 건축물

- 건물, 시설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주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 건물(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건축물 주택은 적용율 없이 시가표준액 바로 적용

③ 주거용 이외 임차보증금

㉠ 정의: 신청대상자가 주거용 이외의 목적으로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조사방법

-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 등 임차보증금을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등)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반영
- 확정일자를 받거나 또는 전세권 설정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 신청대상자가 주택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 받기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확보한 임대차 정보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열람 가능하므로 제출된 임차계약서의 진위여부 확인

※ 주거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임대차 관계 입증에서는 LH에서 주택조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의 진위여부가 확인되므로 확정일자 여부는 필수사항은 아니나,

- 주거용 이외 임차보증금의 파악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는 진위여부를 보다 객관화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나 전세권설정 여부 등 관계 자료를 징구
- 유효기간이 만료된 임대차계약서는 무효이지만,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 없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만료 전 1개월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인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디딤씨앗통장에 의한 저축액을 수령하여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한 경우 세까지 산정

- 임차보증금 중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전월세의 경우 적용율(0.95)을 곱하여 산출

$$\boxed{\text{주택 임차보증금} = \text{전월세계약서 상 임차보증금} \times \text{적용율}(0.95)}$$

※ 보정계수 설정취지 주택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나 전월세는 시가로 산정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월세보증금 가액산정에 적용율을 곱하여 5%를 공제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계약서상의 전월세보증금을 입력시 적용율은 소득인정액 산정시 자동 반영

④ 선박 · 항공기

- ㉠ 정의: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선박: 기선 · 범선 · 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 비행선 · 활공기 ·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에 보정계수(19)를 적용하여 가격 산정

$$\boxed{\text{선박.항공기 가격} = \text{시가표준액} \times \text{보정계수}(3.5)}$$

※ 지방세정의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액이 시가의 약 20%이므로 시가의 70%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보정계수 3.5를 적용(매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보정계수는 조정)

⑤ 동산

- ㉠ 정의: 100만원 이상의 가축 · 종묘 등 동산

㉡ 조사방법

- 가축 · 종묘 · 귀금속 등의 동산은 개별 재산평가액이 100만원 이상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만을 조사하며, 대상자의 신고재산을 반영
 - 각종 기계 · 기구류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12톤이상 덤프 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제외한 건설기계는 동산에 포함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나 냉장고 · TV등 생활필수품은 제외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12톤이상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자동차로 분류

- 12톤 이상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이외 건설기계로는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프레이터, 기중기, 롤러 등

⑥ 입목재산

㉠ 정의: 지방세법 제6조 제11호에 따른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입목의 종류>

- 산림목(총5종):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 유실수(총18종):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밤, 감, 자두, 매실, 호도, 앵두, 대추, 살구, 모과, 다래, 유자, 보통온주밀감, 조생온주밀감, 기타귤

㉡ 조사방법

- 입목재산은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⑦ 회원권

㉠ 정의: 지방세법 제6조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골프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콘도미니엄회원권: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
- 승마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요트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골프장, 콘도미니엄, 헬스클럽, 승마 회원권, 종합 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에 대한 소유여부 확인 및 지방세정의 시가 표준액을 반영

⑧ 조합원입주권

㉠ 정의: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조사방법

- 신청대상자와 상담을 통하여 조합원입주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처분 계획 등 입증자료를 개별 징구하여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을 정산한 금액(분양가액)을 반영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납부한 금액)을 합한 금액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

⑨ 분양권

- ① 정의: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② 조사방법

- 신청대상자와 상담을 통하여 분양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중도금 납입 현황 및 개별가격을 조사 후 파악된 금액(조사일 현재까지 계약금, 중도금 등 불입한 금액)을 반영

⑩ 어업권

- ① 정의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 양식어업 등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조류채취업

- ②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어업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 표준액을 반영

나) 자동차

① 정의

- 지방세법 제124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자동차 중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 차량
- (종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② 조사방법

- 국토해양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를 반영

※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우선순위 : (1순위)보험개발원, (2순위)지방세정, (3순위) 국토교통부 최초취득가액(*잔가율) >취득가액(*잔가율), (4순위)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③ 조회결과 적용

- 자동차 분실 · 도난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
※ '차량도난확인서' 제출만으로는 재산산정 제외 불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정보와 달리 실제 자동차 소유 및 사용에 제한이 있는 자는 공적인 증빙 서류 제출을 통한 소명 및 보장기관의 확인 조사를 통해 재산산정에서 제외

- 자동차 분실 · 도난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
 - 명의도용 · 명의대여, 대포차량인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 · 판결)이 있는 경우 인정
- ※ 상기 말소등록증 제출 자동차 및 법원의 최종 확인이 있는 명의도용 등의 자동차는 재산산정 적용제외 대수에 제한이 없음(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없이도 재산산정 제외 가능)
- ※ 압류자동차, 명의도용·명의대여 자동차, 멸실자동차, 대포자동차 등임을 '보장기관이 확인"하여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것과, '법원의 최종확인"을 통하여 명의도용·명의 대여 자동차와 대포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구분 요망
- ※ 폐차증은 범칙금·자동차세 미납 시 발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폐차 후 말소처리곤란,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로 분류하여 조치, 명의도용·대여 등으로 수사 중인 경우 최종적인 확정 결정(판결 등) 이전에는 공적자료를 적용. 단, 가구 특성으로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보장 처리할 수 있음
- 관공서 및 법인의 미등기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에 대표자(신청대상자가 대표자인 경우) 성명 외 상호명이 함께 표기된 자동차로 신청대상자가 실제 사용 · 수익하지 않으면 신청대상자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음
 - 실제 사용 · 수익 여부는 동 자동차의 구입비, 운영비, 각종 세금 등 차량을 유지 · 운영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관공서 및 법인의 회계에서 집행되었음을 확인하는 경우 인정 가능
 - 자동차로 인하여 지원자격 변동이 예상되는 자는 소명기회 부여와 더불어 생업용자동차, 질병 ·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혈우병 환자인 경우와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인 경우 해당 환자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동차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 신청대상자가 소유한 장애인 자동차는 공동명의인 경우라도 소유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신청대상자의 자동차가액으로 전액산정
 - 다만,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공동명의인이라서 1대의 자동차가 수급(권)자의 재산으로도 반영되고 동시에 그 부양의무자의 재산으로도 중복 반영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재산으로만 반영(부양의무자 재산에서는 제외)함
 - 또한 동일 보장가구의 가구원인 둘 이상의 수급(권)자가 1대의 자동차에 대한 공동명의인이라서 해당 자동차가 동일 보장가구원인 각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중복 반영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가구원 중 한명의 가구원의 재산으로만 반영함

※ 공동소유자동차는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장애인자동차로 인한 혜택이 주어지므로 장애인 사용자동차로 인정

④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감면하는 자동차

㉠ 자동차 가격 100% 재산 산정 제외 :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 적용대상 : 다음 ①~③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등록장애인인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 상기 Ⓛ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 본인 명의의 자동차 1대 (배기량, 차종, 운전자를 구분하지 않음)

㉡ 자동차 가격 50% 감면 : 생업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 일반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동 자동차로 인한 소득파악에 철저)

ⓑ 동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므로 수급(권)자의 재산이 기본 재산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가격의 50%에 대해서만 월 4.17%의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적용함

-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월 100% 적용하는 자동차

○ 적용대상 : 수급(권)자 명의의 「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하단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수급(권)자가 상용시에도 자동차재산 기준 적용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 ※ 전방조종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에 따라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전장)의 4분의 1이내인 자동차
- 다마스, 라보, 봉고(화물형봉고제외),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카니발, 카렌스, 싼타모, 갤로퍼, 스타렉스, 카스타, 무쏘, 렉스턴 등은 전방조종자동차가 아님)
- ④ 적재적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 ⑤ 장애등급 1~3급 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배기량 2,500CC 미만 자동차 (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 등)
-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단, 아래 자동차는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예:타우너, 다마스 등)
 -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예: 헌혈, 구급, 장의 등 특수한 목적으로 탑승인원이 줄어든 자동차를 말함)
- ⓒ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 ※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하는 경우 동 자동차로 인한 소득파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 ※ 소득파악이 어려운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17년 51,760원)에 따라 월 15일 이상을 적용한 임금을 적용
-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자동차
- ⓐ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자동차
- ※ 차령 산정은 년(年)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규칙」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최초등록일(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가능)과 연식 중 빠른 날짜를 적용. 예를 들어, 최초등록일(연식보다 빠른 경우)이 '04.5.1인 경우 '14년 1월이 되면 10년 이상 된 자동차로 분류
- ⓑ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병원치료가 필요하나 건강 상태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 거동 곤란이란 보장구가 있어도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
- ※ 질병·부상으로 자동차 소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원의 건강상태 및 병원소재지, 자동차 이용 실태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자동차 소유가 불가피한지 여부 확인
- ⑨ 배기량 1,000CC 미만 화물·승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자동차
- ⑩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260CC 이하 자동차
- ⑪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로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 ※ 교통법칙금, 자동차세 미납 등 행정적으로 압류 기록이 있으나 수급자가 동 자동차를 실제 운행 가능한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유의
- ⑫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 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 ⑬ 소유자의 요청·동의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
 - ⓐ 보장기관이 수급(권)자 명의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되어 소위 대포차임을 인정한 자동차
 - ⓑ 운행정지명령 : 불법명의자동차 소유자가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민원실 또는 인터넷으로 운행정지를 요청하거나, 불법명의자동차 신고에 따라 운행정지에 동의하는 경우에 시·도 또는 시·군·구청장이 운행 정지명령 가능
 - ⓒ 처분결과 : 운행정지명령 절차가 완료되면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 명령"으로 표기됨
 - ⓓ 보장기관이 아래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한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로 인정 가능
 -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 되어야 함
 - ① 정기검사 3회 이상 미필, ② 의무보험 6개월 이상 미가입, ③ 교통 법칙금 50회 이상 미납, ④ 자동차세 6회 이상 미납 중 1가지 이상의 사실이 있음을 확인
- ⑭ 급여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 예정이거나 생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자동차. 단, 처분 또는 전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재산으로 환산하지 않음
 - ⓐ 신청인과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매매의뢰 관련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처분 및 생업용 전환예정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⑤ 2개월 이내에 미처분 또는 생업용으로 미전환시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하고, 실제 2개월 내에 미처분 또는 생업용 미전환시 해당 가구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장비용 징수 여부 결정

※ 생업용으로 전환예정인 경우 ⑤요건에 해당하는 자동차여야 함

- ⑥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인해 보장이 곤란한 가구의 자동차로,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반영하기로 한 경우
-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는 수급(권)자가 소유한 자동차가 (5)~(9)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나 그 자동차로 인해 보장이 불가능한 경우 지생보 심의를 거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5)~(9)와 동일하게 보유대수의 제한을 두지 않음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가 소유한 자동차가 (5)~(9)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일반재산 환산율을 부과하려면 그 특별한 사유를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시 사실조사 담당자 보고서 등으로 보고 필요
- ※ 예를 들어, 자동차 분실·도난 자동차로 '차량도난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장기관의 사실 확인 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가능

다) 기타 산정되는 재산[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4호]

① 정의

-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조사대상 가구원 부양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일반 재산(주거용 재산 포함), 금융재산, 자동차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 및 처분(매매, 금융재산 감소 등)한 경우
 - 증여 및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의 기타 산정 되는 재산으로 산정

기타 산정되는 재산가액 =

(처분한) 재산 가액-(타재산 증가분+본인소비분)-자연적 소비금액

※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기타 산정 되는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음

② 조사방법

- ① 재산가액 산정 기준
- ② 재산의 종류별 산정 기준

재산 항목		산정 기준
일반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시가표준액×보정계수(3.5)
	가축·종묘 등의 동산	조사일 현재 시가(신고가액)
	입목재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이업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금융재산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자산별 가액, 금융회사 등의 입증자료상의 가액
자동차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기액 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

* 재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가액을 평가하여 실거래가로 재산가액을 평가하지 않음에 유의
 * 일반(주거용)재산, 자동차재산을 증여 및 처분한 경우는 기타(증여)의 "일반"으로 입력하고, 금융재산을 증여 및 처분한 경우는 기타(증여)의 "금융"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

- ⑤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가입된 가구가 탈수급하여 지원을 받은 후 재신청시 동 지원금 중 타 재산 증가분 확인, 본인소비분 확인,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차감되지 않은 금액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
- ⑥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에게 재산을 증여(금융재산을 이체한 경우 증여로 봄)하여, 증여한 재산이 수급(권)자의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됨과 동시에 증여받은 재산이 부양의무자의 재산가액으로 반영되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재산가액으로 반영되는 금액은 증여받은 재산의 재산 가액에서, 증여한 재산 때문에 수급(권)자에게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된 금액을 차감한 차액만 반영함
 - 단,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에게 재산을 처분(매매 등)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부양의무자의 재산가액으로도 반영하며 차감반영하지 않음

㉡ 재산의 소득환산율

- ⓐ 월 4.17% 적용 대상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포함), 자동차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 중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된 재산
- ⓑ 월 6.26% 적용 대상 : 금융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 중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된 재산

㉢ 타 재산 증가분 확인

- 재산으로 이미 산정된 경우 : 재산을 처분한 금액을 예금 등의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이미 재산가액으로 산정된 경우 해당 산정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 시 '타재산구입(임차보증금 포함)'으로 선택 입력

- 다른 재산을 구입한 경우 :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을 구입한 경우 구입에 소요된 금액(구입한 재산의 평가금액이 아님)
- 부채를 상환한 경우: 부채로 산정된 범위 내에서 부채를 상환한 금액

② 본인소비분 확인

- ⓐ 본인 및 가구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사용액 확인

- 진료비, 약제비(한약포함),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복지용구 구입 등에 사용된 금액

※ 증빙서류(간이세금영수증은 불인정) : 진료(약제)비 납입확인서와 납입영수증 등, 장례식장 및 혼례식장 영수증(장소사용 비용)

- ⓑ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비 사용액 확인

- 학원비, 등록금, 학습자비 등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을 위해 사용된 금액

※ 증빙서류 : 학원비영수증, 등록금납입영수증 등

- ⓒ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 확인

- 이혼 시 본인의 재산을 감소시켜 위자료로 지급한 경우, 위자료 지급금을 차감

- 단, 재산 분할 청구로 인해 소득·재산에 가압류, 가치분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는 불인정

※ 증빙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등기부, 계좌이체내역서 등

- ⓓ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처분 재산 확인

- 법원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된 경우, 해당 재산을 신청자(환자)의 재산에서 산정 제외

- ⓔ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확인

-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양도소득세, 중여세 등)을 확인하여 그 금액만큼 차감

※ 증빙서류 : 납세증명서, 세금 납부 영수증

④ 자연적 소비금액 확인

-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항목 이외의 곳에 사용한 경우, 일정금액을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경과 개월수를 반영한 금액을 차감(음의 값인 경우 '월' 처리)

- 경과 개월수: 재산을 중여하거나 처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장기관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차감하며

- 금융재산의 경우 우선적으로 '계좌 해지일, 인출일, 이체일 등 거래내 역변동일'을 확인하여 해당 일을 기준으로 보장기관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차감하되,

- 소명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득이하게 확인이 안 되는 경우 해당 금융재산에 대한 직전 ‘조회 기준일’이 속한 달부터 보장기관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차감
 - 차감액
 - 수급(권)자 가구 :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50%를 매월 차감
 - * 2015년 6월 이전 차감액은 ‘해당 연도 최저생계비의 120%’씩 차감
 - 부양의무자 가구 : 부양능력판정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를 매월 차감
 - * 2015년 6월 이전 차감액은 ‘해당 연도 최저생계비의 250%’씩 차감
- ※ 자연적 소비금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계산되므로 반드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 ※ 예를 들어, 2017년 2월에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의 2015년 1월에 처분한 재산이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분류되어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차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는 해당 가구 2015년 최저생계비의 120%씩을 매달 차감하며,
-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해당 가구 2015년 기준 중위소득의 50%씩을 매달 차감하며,
-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해당 가구 2016년 기준 중위소득의 50%씩을 매달 차감하며,
-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는 해당 가구 2017년 기준 중위소득의 50%씩을 매달 차감

3. 정착마을 관리

가. 자립기반 조성

1)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

-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은 정착마을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착마을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한센사업 대상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한다.

2) 정착마을 지원

- 가) 정착마을 주민 중 자립능력 상실시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은 이들을 수급자로 우선 책정하는 등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 나)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 및 한국한센총연합회 지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부당한 목적에 유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
- 다) 보조금을 받은 정착마을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과 회계관계법규 등에 따라 이를 철저히 집행하고 증빙서류는 최소한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나. 주거 생활 보호

1) 질서유지

-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은 한센병 관리사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2) 주민의 지도체제 확립

- 가)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은 한국한센총연합회 지부와의 협의를 토대로 정착마을이 주민의 공동권익 증진과 사회경제적인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자주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도록 돕는다.
- 나)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은 대표자 선출, 주민 총회 등 원만한 마을운영을 위하여 정착마을마다 한국한센총연합회의 승인을 받은 운영 규정을 구비케 하여 운영상의 문제발생을 방지한다.
- 다)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은 정착마을 운영상의 분쟁, 상호갈등, 자립기반 저해요인 발생 등 정착마을 운영의 정상화가 필요할 경우 한국한센총연합회로 하여금 마을지도체제를 지도·관리토록 할 수 있다.
- 라)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 한국한센복지협회 지부는 재가 한센 사업 대상자 중 부랑생활 가능성, 진료서비스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자는 정착마을 등에 거주토록 지도하거나 한센병 전문 진료기관 또는 한센 생활 시설에서 보호하도록 할 수 있다.

다. 재활관리

- 1)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은 정착마을의 자립 기반 조성을 방해하는 정착마을 한센사업대상자에 대해서 주민총회의 결의와 대표자의 건의가 있을 경우 한국한센총연합회장에게 조정을 의뢰 할 수 있다.
- 2)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은 주거가 일정치 않은 자나, 정신질환자, 노인성 치매자, 알콜중독자, 습관성약물복용자 및 상습도박 등으로 자립능력을 상실한 자 등에 대해서는 한국한센총연합회의 협조를 받아 장기 입원시설, 한센병 전문 진료기관 또는 한센생활시설 등에 보호조치 할 수 있다.

라. 기타 관리

- 1) 재가 및 정착마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 또는 한국한센총연합회 및 지부의 책임 하에 처리한다.
 - 정착마을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필요시 한국한센총연합회 지부등과 협의) 질병관리본부장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4. 재가 한센사업 대상자 관리

재가 한센사업대상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 한국한센총연합회 및 지부와 상시 협조를 유지, 부랑방지 활동 등을 시행하여 사회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5.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환수

가. 국고보조사업 수행 시 용도 외 사용 금지

-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장은 분기별 교부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됨

나. 지원 결정의 취소

- 시·군·구 보건소장은 한센병환자관리지원사업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대상자 자격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지원금액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다. 부정수급 대상자의 환수

- 시·군·구 보건소장은 한센병환자관리지원사업 지원대상자가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지원금액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시·군·구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자가 위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보건소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IV

한센생활시설 운영

2017년 한센사업 지침

1. 한센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등 종사자 관리
2. 한센생활시설 운영 개선
3. 한센생활시설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보건복지부 2017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일부 발췌

IV. 한센생활시설 운영

1. 한센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등 종사자 관리

가. 목적

- 한센생활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 있어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고보조금 집행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나. 용어의 정의

- 보수: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 봉급: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위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 수당: 직무특성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 승급: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해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 보수의 일할계산: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

다. 적용범위

- 이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한센생활시설(이하 “시설”이라 함)에 근무하는 종사자(시설장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인건비의 국고보조 기준임.
 - 다만, 촉탁의사에 있어서는 수당 및 퇴직금을 보조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재정 형편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보조 또는 지급할 수 있음.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기준에 정한 사항 이외에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별도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는 각 시설의 시·도 담당과에서 지침마련 시행

라. 시행일

- 이 기준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시행함.
 -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각 시설 시·도 담당과에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

마. 직위의 분류

- 사회복지시설 관련 개별법령에서 정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의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종사자 직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함
 - 원 장 : 시설장
 - 사무국장 : 총무, 정신보건전문요원
 - 과장 및 생활복지사 : 과장, 생활복지사, 사회재활교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상담지도원, 작업지도원, 임상심리상담원, 직업훈련교사 등
 - 생활지도원 : 생활지도원, 간호조무사, 사무원
 - 기 능 직 : 조리원(취사원), 위생원(세탁원)
 - 관 리 인 : 관리인, 경비원
- 위 직위별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종사자의 보수 등은 각 시·도 개별과에서 확정하여 시행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의 보수는 생활복지사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나, 사회복지시설 관련 개별법령에 의한 생활복지사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

바. 호봉의 획정(지자체에서 별도 규정 시 그에 따름)

- 원칙적으로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을 인정함
- 호봉은 현 시설 근무경력에 본 지침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결정

사. 경력의 인정

1) 경력인정의 범위

가) 경력환산율표 적용

구분	환산율	인정대상경력
1. 사회복지 시설경력	100%	<p>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p> <p>→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p> <p>예) 아동공동생활기정의 경우 2004년 1월 29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 가능한 2005년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p> <p>*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5쪽~6쪽)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을 의미</p> <p>나. 조건부신고시설*의 경우 2002년 이후 조건부시설로 신고한 시설에서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단, '05. 7. 31까지의 근무 경력만 인정)</p> <p>→ 해당 시설장 및 시·군·구청장의 근무확인서 필요</p>

구분	환산율	인정대상경력
		<p>* 조건부신고시설 :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02~'05.7.31까지 법정신고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행정처분 등을 유예한 시설로, 시·군·구에 조건부신고시설로 등록 후 유예기간 내에 요건충족을 통해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p>
2. 유사경력	80%	<p>가.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로서</p> <p>①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동종 직종 :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 : 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 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p> <p>②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예시) 각급 학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한 경력</p> <p>③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에도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하였다면 해당 경력을 인정함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 인정할 수 없으며, 근무경력은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할 것) ※ (공통)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조리사의 경우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p>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10px;"> <p>예시 영양사의 채용이 의무화된 A초등학교에서 급식업체인 B식품에 용역을 주어 甲 영양사가 B식품 소속으로 A초등학교에서 2년을 근무하였다면? → 2년의 근무기간의 8월인 1.6년(1년 7개월 6일)의 근무경력을 인정 (A초등학교 근무전에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3년을 근무 하였더라도 3년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해당 영양사는 2년 기간동안 B식품 소속으로 A초등학교에 영양사로 근무하였다는 증빙서를 B식품과 A초등학교의 장으로부터 공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p> </div> <p>나.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p> <p>다.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p> <p>라. 「아동복지법」 제48조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④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07.1.1부터 적용</p> <p>마.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에 근무한 경력 ※ ⑤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07.1.1부터 적용</p> <p>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 ⑥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09.1.1부터 적용</p>

구분	환산율	인정대상경력
		<p>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 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p> <p>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 재활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p> <p>자. 드림스타트 민간전문인력(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p> <p>차.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p> <p>카.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p> <p>타.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p> <p>파.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전국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p> <p>하. 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구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통합 사례관리사)으로 채용되어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p> <p>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근간사로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p> <p>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p> <p>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 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15.1.1부터 적용</p> <p>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p> <p>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p> <p>버.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p>

구분	환산율	인정대상경력
		<p>※ ④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6.1.1.부터 적용</p> <p>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에 따라 설치된 광역자활센터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p> <p>※ ⑤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6.1.1.부터 적용</p> <p>어. 「정신보건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13조의 2에 의한 정신보건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한 경력</p> <p>※ ⑥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7.1.1.부터 적용</p>

나) 군 의무복무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 인정범위 및 계산은 (3)「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참조

다) 이 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담당과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 사업별 특성 및 지자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

라) 기타 참고사항

- 시설종사자가 지역간 또는 시설간 이직하는 경우에도 호봉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력은 인정될 수 있도록 관심요망
- 본 지침 상 근무경력은 종사자 호봉산정을 위한 것으로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근무(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음

※ 개별법령 상 “근무(종사)한 경력”은 해당 시설 담당부서에 문의할 것

2) 경과조치

-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해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정받던 근무경력을 계속 적용함

※ 단, 2004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본 지침상 기준을 적용

3) 경력기간의 계산

가)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 인정하는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 단, 근무종료일이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미리 정하여진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근무경력에 산입함

- 경력기간은 년 · 월 · 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曆)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계산함
(「민법」 제160조 참조)(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 계산함)

나)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연 · 월 · 일 단위까지 산출

- 환산율이 10할(100%)인 경우에는 경력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 미만인 경우에는 연·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
- 다)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① 군 의무복무기간 인정범위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복무경력 중 3년 이내의 기간만 인정
-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의 기간내에서 인정함(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미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편입된 자(「병역법」 제57조)
 -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 후 장교로 편입된 자(「병역법」 제58조 및 59조)

② 군 의무복무경력 계산

- 「병역법」에 의해 1948년 8월 15일 이후 복무한 군 의무복무경력을 확인
 - 현역군인(병·부사관·준사관·장교·방위병·상근예비역과 보충역 포함)으로 복무한 경력
 - 현역병 입영후 「병역법」에 의해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 경비교도, 의무 소방원으로 전임하여 복무한 경력
 - 학도의용군 경력
- ※ 학도의용군은 병적증명서로 실역복무기간 확인이 안되는 경우 8월을 군복무경력으로 인정
- 군의무복무기간은 병적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군본부에서 발급한 군경력 증명서 포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으로 복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병적증명서에 실역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 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음
 - 무관후보생경력은 군 의무복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 대상(「병역법」 제2조) :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 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
 -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 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 복무경력에서 제외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은 무관후보생 기간이 없는 것으로 봄
 - 상근예비역, 보충역과 방위소집 복무자의 군 복무경력 기간산정
 - 1995. 1. 1 이후에 상근예비역과 보충역으로 입영한 자 :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안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보충역 중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이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 : 실역복무기간으로 불인정

→ 1986. 1. 1 이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 :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내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1985. 12. 31 이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

- 의무·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 경비교도는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복무경력 인정
- 본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외 기타 추가적인 군 경력은 개별시설과, 지방자치단체, 개별시설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개별 근로계약, 취업규칙, 개별시설지침, 지방자치단체 개별지침 등으로 개별적으로 규정할 것

라)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① 경력의 증명

- 경력의 증명은 권한 있는 자(시설장, 시·군·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함
-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 공단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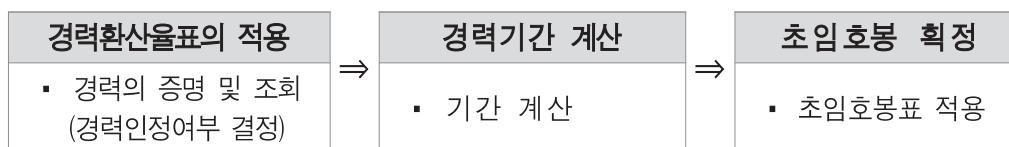
② 전력조회

-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한 기관을 대상으로 함
- 전력조회 시 정상적 근로계약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
- 공무원 경력과 군경력은 경력증명서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복무기간 등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관청에 조회실시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과 기타유사경력(8할 인정경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것이므로 반드시 실시하되, 임용일로부터 3월 이내에 완료토록 함

마) 호봉의 확정과 승급 방법

① 초임봉의 확정

- 대상 : 시설에 신규 채용되는 종사자
- 시기 : 신규채용일
- 절차 및 방법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는 환산된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함
- 초임호봉의 확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② 호봉의 재획정

- 대상 : 시설에 재직중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함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해당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시기
 - 법령이나 지침의 개정에 의해 재획정하는 경우는 그 법령이나 지침에 의함
 - 재획정하고자 하는 날 현재로 휴직·정직 중인 경우는 복직일에 재획정함
 - 기타 다른 사유로 재획정하는 경우는 재획정 사유가 발생할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재획정함
- 방법
 -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함
 -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 최고호봉은 31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원장·관장은 30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③ 승급

- 대상 : 시설에 재직중인 직원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 정기승급일 : 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 시행
- 승급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 방법 : 승급기간 1년에 대해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 기간에 반영

아. 보수의 보조기준

1) 보수 지급기준

- 봉급 및 수당기준은 개별 시설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편성하되, 「2017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내 인건비 지원기준을 참고할 것.
- 봉급 및 수당의 지급비율을 상향하거나 별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이 기준보조금(국고 및 지방비로서 매년 초 확정내시된 보조금) 외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여야 함.
- 보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 까지 계산하며, 신규채용·승진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 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이하 '시간외근무수당 등') 퇴직금, 기타 4대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하여 지급

2) 봉 급(2017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참조)

- 시설 종사자의 월봉급액은 (표1)의 기준에 따라 지원함.

<표 1> 2017년 한센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단위 : 천원/월)

직위 (호봉)	원장	사무 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관리직	기능직
				선임	직원		
1호봉	2,397	2,136	1,934	1,810	1,657	1,577	1,492
2호봉	2,490	2,215	2,001	1,870	1,714	1,643	1,547
3호봉	2,586	2,304	2,080	1,945	1,780	1,707	1,603
4호봉	2,685	2,400	2,172	2,021	1,846	1,770	1,666
5호봉	2,804	2,497	2,269	2,101	1,918	1,833	1,732
6호봉	2,923	2,605	2,371	2,189	1,996	1,916	1,814
7호봉	3,042	2,715	2,479	2,277	2,081	2,003	1,892
8호봉	3,162	2,831	2,588	2,366	2,169	2,077	1,964
9호봉	3,283	2,950	2,695	2,459	2,257	2,123	2,024
10호봉	3,398	3,064	2,798	2,547	2,340	2,181	2,078
11호봉	3,513	3,174	2,893	2,634	2,417	2,246	2,133
12호봉	3,626	3,270	2,979	2,707	2,480	2,311	2,190
13호봉	3,723	3,354	3,054	2,777	2,541	2,373	2,252
14호봉	3,807	3,438	3,127	2,844	2,601	2,434	2,313
15호봉	3,887	3,522	3,197	2,908	2,658	2,484	2,368
16호봉	3,963	3,597	3,263	2,970	2,717	2,535	2,424
17호봉	4,035	3,665	3,326	3,028	2,776	2,585	2,479
18호봉	4,102	3,733	3,387	3,084	2,832	2,637	2,536
19호봉	4,166	3,795	3,443	3,137	2,884	2,689	2,595
20호봉	4,226	3,852	3,498	3,190	2,934	2,743	2,650
21호봉	4,283	3,908	3,550	3,238	2,980	2,794	2,705
22호봉	4,337	3,960	3,599	3,285	3,025	2,849	2,760
23호봉	4,388	4,009	3,646	3,329	3,068	2,904	2,814
24호봉	4,435	4,055	3,692	3,373	3,110	2,955	2,867
25호봉	4,481	4,101	3,733	3,413	3,149	3,002	2,920
26호봉	4,522	4,141	3,775	3,454	3,184	3,043	2,969
27호봉	4,561	4,181	3,809	3,487	3,215	3,083	3,013
28호봉	4,595	4,215	3,841	3,519	3,244	3,116	3,046
29호봉	4,626	4,247	3,872	3,549	3,273	3,151	3,080
30호봉	4,657	4,278	3,902	3,578	3,301	3,177	3,109
31호봉		4,306	3,929	3,606	3,328	3,203	3,137

※ 촉탁의사(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종사자가 아니므로 상기 표에서 별도 구분) 기본급 권고
기준: 2,676천원

* 기능직 : 조리원, 위생원 등 * 관리직 : 관리인, 경비원 등

3) 수당 (※ 2017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세부지원기준 참조)

- 시설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수당의 종류와 금액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휴가비	재직 중인 종사자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시간외 근무수당 등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배우자 40,000원, 둘째자녀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00,000원)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준용

※ 「선임 생활지도원」 승진 최소연한은 만5년(6년차) 이상인 생활지도원 중에서 법인 및 시설의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인원을 선정하며, 소요 기간은 법인 내 시설 및 동일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

자. 퇴직급여제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시설장(사용자)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즉,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 단, 퇴직급여제도는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종사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시설안에 차등제도 금지

- 퇴직금 제도의 설정

-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
- 종사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아래의 요건을 갖춘 퇴직보험 또는 퇴직 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에 가입하여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2010. 12. 31까지 유효)
※ 단, 퇴직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퇴직금(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적을 경우에는 차액을 시설장이 지급해야 함

○ 퇴직연금제의 설정

-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로 하여금 일정한 부담금을 사외에 적립·운용하도록 한 후,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토록 하는 제도를 말함
 - 퇴직연금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설장(사용자)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 * 근로자대표 : 과반수 노조(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 퇴직금제에 대한 근로자의 선호, 연금제도에 대한 사회적 정서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자율로 결정하도록 함
 - 퇴직연금제를 선택할 경우에는 퇴직연금제의 형태(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도 함께 결정해야 함
 -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 근로자의 급여수준이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급여수준은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 이는 사업장 여건 및 근로자의 선호가 다양하기 때문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 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노사가 합의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한 경우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 ※ 「퇴직연금규약」은 개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의 설계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정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것 또는 법정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은 노사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음
 - 퇴직연금제 운영관련 업무(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위탁하여야 함
 - ※ 운용관리업무 : 운용방법의 제시,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업무
 - ※ 자산관리업무 : 사용자로부터 부담금의 수령 및 보관·관리업무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시설장은 퇴직연금 운영상황 등에 관하여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법령과 퇴직연금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 ○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 주택구입 등 긴급한 자금수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재직중에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고,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함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① 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개 사업에 1회에 한함) ③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④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⑥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인적·물적피해를 입은 경우

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

○ 공개모집 원칙(시행일 2005. 1. 1)

-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동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에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면서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감사원 위임 감사(2004.12),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2010.4)]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 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 순환직 직원의 경우 등 신규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이 통합되는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의 고용 보장을 위하여 타 시설 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공개모집 방법

-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능력 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법인 및 시설 채용내규, 응모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 등은 공개모집에 위배됨

-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 시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work.go.kr), 복지넷(bokji.net) 중 2곳 이상의 사이트 등에 채용관련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

※ 시설운영위원회를 신규직원 선발과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자체사정에 따라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

※ 특히, 시설 재무·회계담당자는 법인임원이나 시설장과 독립적인 자로 선발하여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 사회복지사인 종사자의 임면보고

-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종사자를 임면한 경우에는 그 임면이 있은 달 말일까지 시설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해당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할 것

2) 「근로기준법」 등 적용 관련

○ (원칙) 사회복지시설에도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근로기준을 적용하여 시설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및 향상시키며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민주성을 기할 것

⇒ 2017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부록 4.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을 참조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노동종합 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고,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문의할 것

-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차별 문제의 시정을 위해 관계법령 등 준수
 - 관련법상 4대 보험별 가입대상자

국민연금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 가입
건강보험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고용보험	1개월간 소정근로시관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산재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대통령령에 예외 규정)	

2. 한센생활시설 운영 개선

가. 목적

- 일부 사회복지시설이 운영의 폐쇄성·예산집행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안내
-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를 각종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대책 안내
- 기타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

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하 '시설장' 포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

(시행일 : 2002년 1월 1일)

- (정부의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정부(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령까지만 정부보조금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지급상한 : 시설장 65세(단,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
 - └ 종사자 60세

특례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
	<p>① 60세 초과 종사를 대체할 사람을 공개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넷(www.bokji.net), 워크넷(www.work.go.kr),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or.kr) 홈페이지 2곳 이상에 15일 이상 공개모집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1회 이상 다시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 60세를 초과한 종사자의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되, 해당 종사자의 근로계약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그 근로계약의 완료 전에 위의 방식으로 공개모집 절차 반드시 실시할 것 <p>② 60세 초과 종사자의 기존 인건비 내에서 청년 인력(만29세 이하)을 채용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채용 및 인력 운용 계획을 시설운영위원회 및 법인이사회를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 위의 계획에는 60세 초과 종사자 및 신규 채용 인력 2인의 인건비를 60세 초과 종사자의 기존 인건비 100% 내에서 지급하되, 60세 초과자의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청년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급 가이드라인 적용 <p>※ ①, ②에 따른 절차를 거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65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음</p>

- ⇒ 위 지급 상한기준은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정부예산의 지급 기준이므로, 업무수행 능력이 없거나 종사자가 비리를 자행할 경우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정년제 권고) 사회복지시설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정년을 정할 수 있으므로, 시설 사유화의식 탈피 및 조직쇄신 차원에서 정년제 실시를 권고함
- ※ 촉탁의사는 시설 종사자가 아니므로 보조금 인건비 지급상한제 및 인건비 가이드 라인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참고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지급상한기준			
----	--------------------	--	--	--

○ 지급상한기준년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	생년월일	~1944년	1945년	1946년 ~
	지급상한년	~2014년	2015년	2016년 ~
설립자 및 직계가족 1세대가 아닌 시설장	생년월일	~1949년	1950년	1951년 ~
	지급상한년	~2014년	2015년	2016년 ~
시설종사자	생년월일	~1954년	1955년	1956년 ~
	지급상한년	~2014년	2015년	2016년 ~

⇒ 2002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시설 또는 신규채용(재취업 포함)된 시설장은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지급상한을 적용함

- 지급상한기준일(지급상한일자는 해당 종사자(시설장 포함)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함)
- 1월에서 6월 사이 지급상한일자 : 6월 30일
 - 7월에서 12월 사이 지급상한일자 : 12월 31일

다. 시설운영비 지출 원칙

-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대표이사, 시설장)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 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함
- 지출은 예금통장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거래*로 집행하며, 특히 보조금의 경우 2011년 7월부터 시·도별로 도입한 보조금 전용카드로 집행할 것
 -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이라도 1만 원 이상 지출 시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출하도록 지도요망
- * 국세청에서 변경된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에 따라 '08.7.1.이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가맹점)에서는 1원 이상 집행 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 지역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간이 영수증 또는 현금지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그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구비

- * 농어촌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5만원 이상 집행 시 온라인(on-line)입금 활용
- 각 시·도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지침」 등에 따라 보조금 전용카드에 클린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관리할 것(관련안내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5071(2011.11.9)호 및 사회서비스지원과-1535 (2012.3.29)호)
 - 또한 각 지자체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수립하여 지도·감독하기 바람
 -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부당 사용사례가 적발된 경우, 감사 등을 실시하여 환수 및 징계조치 등을 엄정하게 처분할 것
 - 시설 운영비 지출을 보조금 전용카드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은 다시 시설운영에 사용하도록 조치(개인적으로 사용 금지)
- 각 지자체는 시설 후원금 및 사업수익금에 대해서도 클린카드를 도입하거나 시·도별로 기 도입 운영 중인 보조금전용카드와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시행하는 등 시설 후원금 및 사업수익금의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 바람

※ 후원금과 사업수익금을 클린카드 적용을 받는 보조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래방 등에서 유흥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업무와

아. 시설생활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 시설 조치여부 시·군·구 점검사항
 - 생활자에게 인권침해사실 진정권에 대한 고지 여부
 - 시설 내에 진정함 설치 유무
 - 시설생활자가 작성한 진정서의 인권위원회 송부 여부
 - 방문조사 시 협조 상태

< 참고 : 사회복지시설 인권보호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규정 >

○ 진정함의 설치 · 운용(동법 시행령 제7조)

- 시설 내 진정함 설치의무, 용지 · 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위원회서 정한 규격) 비치
- 진정함 설치 시 설치장소를 위원회에 통보, 생활자가 직접 진정서를 진정함에 넣도록 함
- 시설 소속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진정함 확인 후 진정서 등을 자체없이 위원회로 송부

○ 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동법 시행령 제8조)

○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동법 시행령 제9조)

- 진정서 작성의사를 표명 시 방해금지 및 작성된 진정서의 열람·압수 폐기 금지
- 생활자 징벌중(징벌조사 중 포함)이라도 진정서 또는 서면 등의 자유로운 작성·제출 보장

○ 시설의 방문조사(동법 제24조)

- 위원회는 필요 시 시설의 방문 · 조사가 가능하며 이때 시설장은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방문조사 시 시설 직원 및 시설생활자와 면담·구술·서면 의견 진술 가능
- 시설 직원은 면담장소에 입회할 수 있으나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함

○ 시설생활자의 진정권 보장(동법 제31조)

- 시설생활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 직원은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시설생활자가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 뜻을 즉시 위원회에 통보
- 진정서는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교부
- 진정인과 위원 등과의 면담에는 시설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함
- 시설직원 등은 시설생활자가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하지 못함

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도입

○ 추진배경

- 2014.12.4. 정부합동으로 국고보조금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국고 보조금 개혁 방안을 추진
-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구축하고, 2017. 1월부터 일부 개통(2017.7월 전체 개통)하여 모든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 신청, 집행 등 업무처리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강화

○ e나라도움 구축 목표

- (중복·부정수급 방지) 보조금 정보 통합관리로 사업유사증복 검증, 수급자격 및 지출증빙 검증, 부정 징후 모니터링, 가격 검증 등 실현
- (업무 효율화) 전자증빙 기반의 실시간 지급 관리, 업무 표준화, 온라인 정산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
- (대국민 서비스 제고) 수혜가능한 보조사업 정보 조회(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보조금 운영 현황 및 성과공개 서비스 개선, 투명성 제고

○ 사회복지시설의 e나라도움 사용

- (대상사업) 사회복지시설이 민간보조사업자인 국고보조사업
※ 국비매칭없이 지방비로만 지원되는 보조사업은 e나라도움 사용대상 아님
- (적용시기) e나라도움 1차개통('17.1월) 1년 후인 '18년부터 사용
※ 사업별로 적용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지침 혹은 담당부서를 통해 추가확인 필요

○ 사회복지시설의 국고보조금 집행체계 변화

- 새로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개통에 따라 모든 민간보조금은 현재의 선 일괄지급 후정산체계에서 2017년 1월 이후부터는 예탁기관(한국재정정보원)에 예치한 후 실시간 집행 체계로 변경됨
- 정부, 지자체,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교부하는 보조금은 예탁기관에 예치
 - (현재 모습)보건복지부 또는 시·군·구가 해당 민간보조사업자의 국고보조금 전용 계좌에 일괄 이체한 후 민간보조사업자가 지출행위로 집행, 사후 정산
 - (미래 모습)보건복지부 또는 시·군·구가 예탁기관에 보조금을 예치하고, 해당 민간보조사업자의 각각의 지출행위시마다 실시간으로 검증한 후 지출행위를 승인하여 거래처 등으로 이체 완료 및 온라인 정산 등



○ e나라도움 사용문의 : 홈페이지(www.gosims.go.kr), 콜센터(1670-9595)

다. 후원금의 관리

1) 후원금의 접수

가) 후원금의 범위 등

○ 정의 :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제5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의거

나) 후원금 영수증 발급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0호의2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 제3호의3에서 정하는 기부금 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후원자에게 교부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인 명의 또는 시설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함
※ 이 경우 후원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발급 생략할 수 있음

다) 후원금 전용계좌의 개설

- 법인 및 시설에서 후원금을 받을 때는 각각의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 전용계좌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안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4
※ 법인 산하의 시설이더라도 법인의 후원금 전용계좌와 별도로 시설 고유의 후원금 계좌를 두어야 함(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실태" 감사 지적사항)

2) 후원금의 관리

가) 후원금 발급 목록 장부 비치

-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 교부 후 발급목록을 별도 장부로 관리하여 비치

나)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연 1회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
-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통보 가능 하며 후원자 각각에게 개별통보도 가능

다)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

-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

- 이 경우 반드시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출력한 보고서도 추가 제출 가능
※ 변경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별지 제19호) 양식은 2013년도 후원금부터 적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3개월간 공개
- 같은 기간 동안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단, 후원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은 공개하지 말 것
- 각 시·군·구 및 시·도는 법인과 시설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의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사후에 철저히 지도 감독
-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공개 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후원금 보고·공개가 미흡하므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업무 철저 필요('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실태" 감사 지적사항)

라)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지정후원금의 15%는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 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 및 생활자에 대한 결연후원금은 제외
-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에 대해서는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다음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간접비 사용 비율 50%는 해당연도 후원금 수입금액이 아닌,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 다만,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 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 금지
*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15%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자산취득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은 구입 가능
- 시설비는 건물 노후화, 정원대비 협소한 공간 등 시설 입소·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
-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사회 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 지정 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사회복지업무수당이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특수업무수당 직무수당 종사자 장려수당 종사자 복지수당 등

※ 종사자 처우 관련 수당을 이미 지급하고 있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경우 기준대로 지급

※ 분기별 정산 원칙으로, 전(前)분기에서 수령한 비지정 후원금의 50% 이내에서 현(現)분기에 사회복지 업무수당 지급 가능하며 필요시 자자체와 협의 하에 조정 가능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 운영비 구분>

과 목		직접비	간접비	비 고
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input type="radio"/> 급여 <input type="radio"/> 제수당 <input type="radio"/> 일용잡급 <input type="radio"/>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input type="radio"/> 사회보험부담금 <input type="radio"/> 기타 후생경비		수당은 「근로기준법」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 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 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 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 및 지방자 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업무추진비		<input type="radio"/> 기관운영비 <input type="radio"/> 직책보조비 <input type="radio"/> 회의비	사용불가(다만, 15% 이내 에서 후원금 모집을 위 한 회의비, 운영비로 사 용가능)
	운영비	<input type="radio"/> 공공요금 <input type="radio"/> 차량비 <input type="radio"/> 여비 <input type="radio"/> 수용비 및 수수료 <input type="radio"/> 제세공과금	<input type="radio"/> 기타 운영비	
재산조성비	시설비	<input type="radio"/> 시설장비유지비	<input type="radio"/> 시설비 <input type="radio"/> 자산취득비	시설비는 시설 중·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관할 주무 관청의 승인 을 받아 사용 가능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 가능
사업비	운영비	<input type="radio"/> 생계비 <input type="radio"/> 수용기관경비 <input type="radio"/> 피복비 <input type="radio"/> 의료비		

과 목	직접비	간접비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의비 ○ 직업재활비 ○ 자활사업비 ○ 특별급식비 ○ 연료비 		
	○ ○ 사업비	○ ○ ○ 사업비	
전출금	전출금		○ 법인회계전출금 사용불가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금상환금 ○ 이자지급금 	사용불가
잡지출	잡지출	○ 잡지출	사용불가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비 ○ 반환금 	사용불가
적립금	운영충당 적립금	○ 운영충당적립금	사용불가
준비금	환경개선 준비금	○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사용불가

- 후원금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고, 가급적 적립·이월하지 않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
- 후원금을 이월하거나 타 회계로 전출할 경우, 그 세입이 후원금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이월·전출된 후원금은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라. 시설운영비 지출 원칙

-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대표이사, 시설장)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 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함
 - 지출은 예금통장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거래*로 집행하며, 특히 보조금의 경우 2011년 7월부터 시·도별로 도입한 보조금 전용카드로 집행할 것
 -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이라도 1만 원 이상 지출 시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출하도록 지도요망
 - * 국세청에서 변경된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에 따라 '08.7.1.이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가맹점)에서는 1원 이상 집행 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 지역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간이 영수증 또는 현금지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그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구비
 - * 농어촌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5만원 이상 집행 시 온라인(on-line)입금 활용
 - 각 시·도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지침」 등에 따라 보조금 전용카드에 클린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관리할 것(관련 안내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5071(2011.11.9)호 및 사회서비스지원과-1535(2012.3.29)호)
 - 또한 각 지자체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수립하여 지도·감독하기 바람
 -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부당 사용사례가 적발된 경우, 감사 등을 실시하여 환수 및 징계조치 등을 엄정하게 처분할 것
 - 시설 운영비 지출을 보조금 전용카드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은 다시 시설운영에 사용하도록 조치(개인적으로 사용 금지)
 - 각 지자체는 시설 후원금 및 사업수익금에 대해서도 클린카드를 도입하거나 시·도별로 기 도입 운영 중인 보조금전용카드와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시행하는 등 시설 후원금 및 사업수익금의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 바람
- ※ 후원금과 사업수익금을 클린카드 적용을 받는 보조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래방 등에서 유통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심야(23시 이후) 시간대에 사용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례 적발

- 기타사항 : 지자체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10.4.19.)한 '보조금 통장 단일화'*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시행함
 - * 지자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사업유형에 따른 복수의 보조금통장 사용도 가능

마.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 시설운영위원회 설치목적
 -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리 향상 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시설(법 제36조제1항)
 -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함
 - 사회복지 생활시설
- 생활자 수가 20인 미만 시설의 경우
 - 3개소 당 1개 운영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군·구에 1개소만 있을 경우 해당 시설에 운영위원회 1개 운영
- 생활자 수가 20인 이상 시설
 - 1개소 당 1개 운영위원회 운영하되, 위원 수는 생활자 수를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 ☞ 지자체장은 생활자 수가 100인 이상의 대형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인권보호 강화 등의 측면에서 반드시 관계공무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키도록 시설장에게 권고

※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 보고사항, 운영 방법은 2017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따름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요(舊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가) 추진배경 및 목적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 정보화를 위해 전자정부 로드맵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구축
-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기반 조성, 회계의 투명성 제고, 시설관리 업무의 간소화 및 표준화, 사회복지정책 기초 자료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함

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주요 기능

- 통합회계관리
 - 회계 관리, 예산관리, 세무관리, 인사관리, 급여관리, 자산(비품, 소모품)관리



- 통합고객관리
 - 후원자, 후원금 관리
 - 시설의 후원금(품) 처리내역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스마트 서비스를 통해 개인별·시설별로 조회 가능하도록 제공



- 온라인 보고
 - 행복e음으로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운영비 등 보조금 신청·정산, 입소자·종사자, 예·결산, 후원금 등을 보고 및 신청
 - 지자체 공지사항, 질의응답 등 지역사회 내의 의사소통정보 연계
- 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서비스 이력관리(11종)
 - 생활인 및 이용인 관리, 수혜서비스 관리, 사례 관리, 각종 일지 관리 등

※ 노인생활·재가, 아동생활/지역아동센터, 장애인생활/직업재활, 지역자활, 한부모 가족, 노숙인 등, 노인/사회복지관, 정신보건(11종) 구축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전용카드 지출결의 내역 열람 및 모니터링
 - 광역자치단체별 보조금 전용카드제 도입,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연계 등 모니터링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시설 관리업무 지원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수집 정보를 기반으로 보건복지부,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통계(시설, 입소자, 종사자 현황 등) 및 정책 기초자료 제공
- 유관기관(단체) 정보연계
 - 복지시설 요금감면(통신요금, 가스요금 등) 절차 간소화를 위한 자격정보 연계
 - 지자체 복지행정시스템과 연계
- 시설 이용(희망)자 대상 정보제공
 - 복지시설 기본정보(유형, 소재지, 연락처 등), 평가, 제공서비스 등 정보제공

온라인 보고 등 세부내용은 2017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따름

자. 시설별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기준

1) 일반기준

- 시설당 최대 2개 종류사업 이내로 지원
단, 사업의 시급성 및 특수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 인정

2) 신축

- 지역 내 해당 인구 비례하여 시설 이용 및 입소대기자 수 고려
- 시설 위치의 접근성 및 적합성 고려

3) 중·개축(매년 부분적 지원보다는 리모델링 개념 도입 집중지원)

- 동 시설 입소대기자 수 크기 고려
- 이용자의 복지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개·보수

- 노후시설 및 비용절감을 위한 개보수 등

5) 장비구입

- 필수 노후장비 교체
- 기타 신규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장비

차.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관리

※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외에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

1) 보험 가입여부 확인(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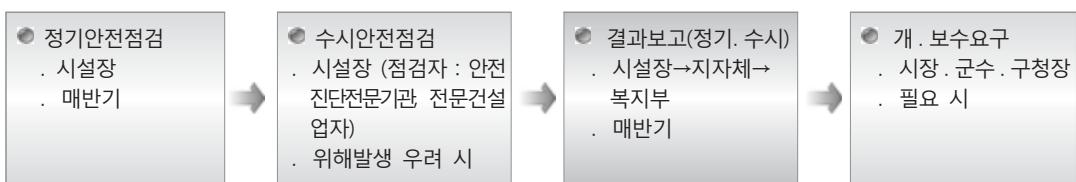
-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년 대인·대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
 - 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법 제58조제1항)
 - 극소수 사회복지시설은 책임보험금 부담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바, 시설 이용자·생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군·구는 해당 시설이 계속 보험가입을 기피·거부하는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 필요 시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4]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것
 - 따라서 지자체는 각 시설의 대인·대물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화재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적정한 보상이 담보될 수 있도록 1인당 배상책임보험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함(『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따른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참조)

- 시설의 지도·감독청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사회복지시설이 의무 가입 해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소멸식 상품을 가입 토록 관리해 나가되
 - 불가피하게 해당 시설이 적립식 상품을 가입할 경우라면 시설이 그 만기 환급금 수령 후 시설운영비로 세입처리를 반드시 하도록 관리감독 강화 요망

2) 시설안전점검 실시

가) 사회복지시설 자체 안전점검(법 제34조의4)



- (정기안전점검) 시설장은 매 반기 시설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시안전점검) 시설장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험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안전점검기관에 수시안전점검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함
 - 안전점검기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
 - 안전점검기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 ☞ 시설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법 제58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요구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이에 응해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가능
 - ☞ 시설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
- 나) 지자체 안전점검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하·동절기(4월 및 11월경) 등 취약시기에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하는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종사자 대상 교육훈련* 및 안전점검 조사표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

- 필요한 경우 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 등을 요구하고 보완 또는 개보수사항을 모니터링

※ 지자체 주관 집합교육(권장), 시설 자체교육, 모의훈련 등

- 시설안전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는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고
 -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지자체에 보고하며, 지자체는 행정업무지원 시스템을 통해 결과 보고 및 안전점검 이력관리 수행
- (주요 점검사항) 건축·부대시설 안전성, 소방·가스·전기시설 관리상태, 보험가입 여부, 시설거주자 건강관리 대책 등을 점검하며, 취약시기의 특성에 따라 급식시설 위생상태, 폭설·제설·동파·난방관리 대책 등 추가 점검

다) 합동 안전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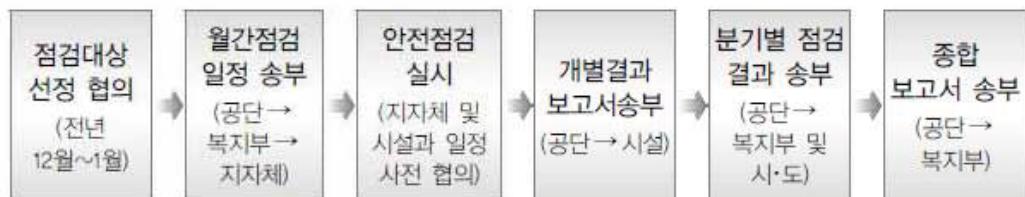
- 정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중점점검 대상시설에 대하여 안전 취약시기(하·동절기, 태풍발생 시 등)에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매뉴얼 준수 여부, 안전의식, 교육·훈련 등 종합점검 실시(연 1회)
- 합동점검 계획(중점점검 대상시설 리스트 포함)은 취약시기 2~3개월 전 시·도에 통보

라)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4)

-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4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무상으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장 및 시·군·구 담당자는 이를 적극 활용할 것

※ 점검분야건축물 및 옥외시설(지반침하, 균열 및 건축마감 손상 여부, 유지관리상태 등)

-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 시설장이 요청(또는 지자체 직권)하여 지자체(시·군·구 → 시·도)가 보건복지부 주무부서에 신청(필요시 신청 전 지자체 현장 확인 실시)



※ 지자체 신청과 별개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보육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시설정보(준공연도 등)를 토대로 점검대상 별도 선정 예정

- 시설장 및 지자체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조치실적이 있는 경우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4항에 따라 그 실적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3) 안전관리 인력 확보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대상시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5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법」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동법 시행령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자) 참조

- (소방안전관리자의 임무) 「소방시설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 및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및 그 밖에 소방안전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

* 「소방시설법」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6항 참조

○ 소방안전책임관 지정

- (대상시설)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장을 '안전관리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시설장 책임 하에 안전관리 및 점검을 철저히 실시
- (안전관리책임관의 임무) 안전업무 실무자를 관리하고, 안전관리 전반을 지휘·감독·지원하도록 함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은 2017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따름

<붙임 자료 2>

○○○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 각 시설은 동 예시를 참조하여 시설별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 운영도록 지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체계적·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해당 시설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 받는다.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간사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담당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

2.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급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회) ①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요청에 따라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회의공개의 제한) 회의는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회의의 공개를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는 공개해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타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시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규정의 개정)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 ③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3. 한센생활시설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가. 목적

- 한센생활시설 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시설생활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나. 근로계약서 작성 비치

- 근로계약서 체결시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할 것.
- 기타 근로조건으로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 명시

다. 취업규칙의 작성 · 신고

- 상시 10인 이상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시설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내용의 변경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서 및 관련서류 제출할 것
-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사업, 종업의 시작, 휴식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당에 관한 사항
 -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기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라. 여성종사자 보호규정

1) 시간외 근로에 대한 규정

- 임신한 여성 종사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함(예외 사유 없음)
-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은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함

2)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제한

-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동의를 얻을 것
- 임산부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야간근로) 및 휴일에 근로(휴일근로)시키지 못하되 다음의 경우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인가를 얻은 경우는 가능함

마. 연차 유급휴가

주 40시간 근무제

- 연차유급휴가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해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 단, 2012.8.2부터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미만에 따른 1개의 유급휴가 부여
- 월차유급휴가 : 폐지
-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부여
 -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되, 기 사용 시 15일에서 공제
- 3년 이상의 계속 근로한 시설 종사자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기본휴가기간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 휴가의 청구 및 시효 등
 - 휴가는 종사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 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함
 - ※ 단, 종사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 가능
 - 시설장 귀책사유가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간 미행사 시 소멸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 시설장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 아래의 조치를 취해야 함
 - ① 소멸되기 6월 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에 시설장이 종사자별로 미사용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종사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시설장에게 통보하도록 면으로 촉구할 것
 - ②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이내에 미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 2월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상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
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시설장 귀책사유에 해당
하지 않음

○ 유급휴가의 대체

-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유급휴가일에 같음하여 특정근로일에 휴무 가능

본 사업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않는 내용은 2017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따른다.



V

홍보 · 연구 등 한센병 관련사업

2017년 한센사업 지침

1. 홍보
2.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 등

V. 홍보·연구 등 한센병 관련사업

1. 홍보

가. 홍보 목표

한센병의 발병 과정과 감염 여부, 치료, 예방사업 등에 대한 정확한 홍보를 통해 일반인들의 편견해소 및 한센병환자 조기 검진 등 적극적 진료 참여 유도

나. 홍보 내용(홍보 대상별 특성에 따른 홍보 실시)

1) 일반대중에 대한 홍보 내용

가) 한센병은 무엇인가?

- 한센병은 결핵, 성병 등과 제3군 감염병
- 나균의 감염으로 생기는 만성피부질환
- 한센병은 유전병이 아닌 감염병
- 한센병은 불치의 병이 아니라 치유되는 병

나) 한센병의 감염 경로

- 치료받지 않은 다균형 환자만이 한센병을 감염시킴(치료중이거나 완치된 경우 감염의 우려가 없음)

다) 한센병의 발병 단계 및 임상 증상

라) 한센병 검사 방법 및 절차

- 한센병 검사 희망자는 한국한센복지협회 본부 및 지부 등 한센병 전문 진료 기관을 방문하여 무료검사 실시

마) 한센병 예방법 및 상담

- 한센병은 완치될 때까지 국가가 무료로 치료
- 한센병 환자와 접촉이 많은 사람은 정기검진 필요
- 한센병을 조기 치료하면 장애발생을 사전 예방 가능

2) 한센사업대상자에 대한 홍보

가) 권장 사항

- 환자는 적극적 치료로 한센병을 완치하고 타인의 감염에 유의
- 한센병에 대한 검진과 나균의 정기 진찰
- 주치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규칙적 복용
- 신체장애를 동반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나) 사회 복지 정책 지원

- 재가치료가 곤란한 자는 단기 및 장기입원시설 치료
- 무의무탁 한센양로자 및 한센장애인중 생계가 어려운 자는 국립소록도병원 또는 한센생활시설 이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장애인등록시 정부 지원

3) 홍보방법

가) 일반대중, 한센병종사자, 한센사업대상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 병행

나) 포스터 · 표어, 소책자, VTR, 현수막 활용

다) 한국한센복지협회 홈페이지 활용(<http://www.khwa.or.kr>)

라) 2017년도 홍보계획

- | | |
|---------------|---------|
| - 홍보지 “복지” 발간 | 60,000부 |
| - 홍보 유인물 제작 | 80,000부 |
| - 홍보용 소책자 제작 | 5,610부 |
| - 대중매체 활용 | 96회 |

※ 홍보 . 교육 방법 조건표

구 분	내 용	활 용
홍 보	언론 매체	한센병 무료검진 및 치료 지역신문 생활정보지 유선방송
	포스터.표어	한센병에 대한 편견 해소 공공기관, 학교, 보건소, 병.의원 등
	격월간 계몽홍보지 “복지”, “한빛지”	
	소책자	한센병의 감염 경로, 치료, 예방 등 전반적인 내용안내 공공기관, 보건단체, 의료기관
	현수막	한센병의 보건 홍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
	VCR	한센병의 올바른 실상 홍보 외래 진료실
	인터넷 온라인	한국한센복지협회 사업 소개 및 보건홍보 www.khwa.or.kr 한국한센총연합회 사업소개 및 보건·인권·복지 홍보 www.hansenkorea.org

2.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 등

- 기초의학, 임상의학, 역학조사 등의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임상실험을 통하여 효과적인 진료방법을 개발.
- 국내외의 첨단의학지식을 분석·검토하여 우리나라 한센사업대상자 치료에 적용



VI

한센사업협의회 운영 지침

2017년 한센사업 지침

1. 목 적
2. 중앙 및 지역 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법
3. 치료(MDT) 종결 협의 판정 세부지침
(지역협의회 시행사항)

VI. 한센사업협의회 운영 지침

1. 목적

한센병환자의 치료종결 판정과 효율적인 한센사업 운영 및 한센사업대상자의 의료·복지 증진 도모

2. 중앙 및 지역 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법

※ 중앙협의회와 지역협의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한다.

중앙협의회

가. 구성

- 위원장 1인과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질병예방센터장으로 한다.
- 당연직위원 : 7인
 한국한센총연합회장, 대한나학회장, 한국한센복지협회 연구원장
 지역협의회 위원장 3인, 한국IDEA협회장
- 위촉위원 : 3인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한국한센복지협회장, 한국한센총연합회장, 대한나학회장이 각각 1인을 추천하여 질병관리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
 1) 한센병의 예방·치료 및 보호와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
 2) 한센사업대상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3) 한센병 등 보건의료와 복지분야에 관한 법률과 경험이 풍부한 자

나. 주요임무 및 의결정족수

- 1) 장기간 진료불참자의 처리방안 협의
- 2) 기타 한센사업협의회의 운영에 관계되는 사항 토의
 - 협의회 규정, 시행세부지침, 예산 등에 관한 사항
- 3) 기타 한센사업 전반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4)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다. 운영

- 1) 위원장은 매년 1회이상 회의를 소집한다.
- 2) 협의회의 간사는 한국한센복지협회 의료사업본부장으로 한다.
- 3) 판정기록, 서류 보관, 질병관리본부에 결과보고 등 협의회 관련 업무는 간사와 한국한센복지협회 본부에서 담당한다.
- 4)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간사에 대해서는 한국한센복지협회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 간사의 임무

- 1) 중앙협의회 회의 개최와 관련된 사항
- 2) 회의 개최 후 질병관리본부에 결과 보고 등

지역협의회

가. 구성

- 1) 3개 권역(중부권, 호남권, 영남권)의 지역협의회를 둔다.
- 2) 각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권역내 한센병전문진료기관 책임관리 의사로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지역 한센병 전문가를 추대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단, 중부권은 8인 이내로 한다)
 - 위원장과 위원은 대한나학회장이 추천하여 질병관리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

나. 주요임무 및 의결정족수

- 1) MDT종결 요청자에 대한 협의 판정
- 2) 기타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토의
- 3)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다. 운영

- 1) 회의는 지역협의회별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 유고시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대리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 한센병관리중앙지도의사, 한센병전문진료기관 행정책임자의 참석을 요청 할 수 있다.

-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의 구분 관리현황을 보고한다.
 - 협의회는 제출된 협의 요청 대상자에 대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 협의 의결한다.
- 2) 각 지역협의회 서기는 지역권내의 서울, 광주전남, 대구경북지부의 지역 본부장이 된다.
 - 3) 협의회 서기로 지정된 자가 소속된 한국한센복지협회 지부는 협의회의 관련 업무 처리에 협조하고, 판정기록, 서류 보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라. 서기의 임무

- 1) 지역협의회 회의 개최와 관련되는 사항
- 2) 협의결과를 개인별 한센사업기록표 뒷면 하단 빈칸에 협의판정 고무인을 날인 한 후 해당기관 및 한센사업자료실에 보고
- 3)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등

3. 치료(MDT) 종결 협의 판정 세부지침(지역협의회 시행사항)

가. 대상자

- 1) 권고처방에 따라 MDT가 종료된 자
- 2) Dapsone 단독치료자로서 MDT 마무리 치료가 종료된 자 또는 불필요한 자
- 3)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서 이미 MDT 종료자로 판정한 자

나. 협의방법

- 1) MDT 종결 신청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MDT 종결 판정
- 2) 병력지와 한센사업기록표를 근거로 한 서면심사와 대상자에 대한 담당의사의 병력 설명 후 토의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판정

다. 협의자료

- 1) 한센병 치료종결 협의 의뢰서((제41호 서식) (협의서식 제1호))
- 2) 치료종결 요청 대상자 명부((제43호 서식)(협의서식 제2호))

3) 개인별 협의자료

- 한센사업기록표 또는 병력지 등을 참고하여 임상적으로 치유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모든 객관적 자료

라. MDT종결 적격판정 기준

1) 임상증상의 정지를 확인한다.

2) 조직 · 세균 · 면역 등에 관한 검사소견을 확인한다.

- Skin Smear의 결과치, Biopsy, 세균지수의 음전환 시기 및 음성기간
- Lepromin이 시행되지 않은 한센 서비스 대상자인 경우 MB로 전제하여 판정
- PGL-I 항체 검사 : 일차적으로 항체검사 Kit에 의한 정성검사를 실시하고, Kit 검사 양성자에 대하여는 ELISA법에 의한 정량검사를 추가 실시하는 바 PGL-1에 대한 항체가 500미만인 자는 MDT종결 적격자로 한다.

3) MDT시행과정 적격여부 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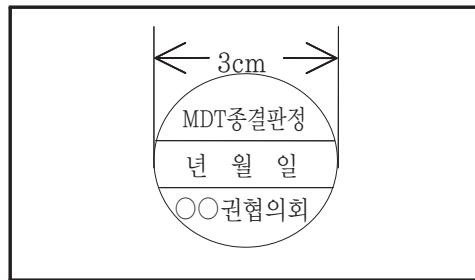
○ 활동성 한센사업대상자

- 주치료: WHO의 최소 요구사항인 3중요법의 12개월 이상 실시 여부
※ 다만 Clofazimine을 거부하는 한센 서비스 대상자는 ROM처방으로 대처하여 12 개월 투약 여부
- 마무리 치료: WHO 권고에 의한 3중요법 실시 후 Rifampicin을 포함한 2 중요법으로, MB는 12개월 (PB 6개월)의 MDT 및 ROM처방 (지침서: 권고 처방 참조)시행 여부
- 비활동성 한센사업대상자(Dapsone 단독 장기치료자 등)
 - 권고처방에 따라 주치료·마무리 치료 등 실시
 - 장기간의 Dapsone으로 치유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추가 MDT가 필요없는 경우는 MDT가 종결된 것으로 판정처리 가능

마. 행정사항

- 각 한센병전문진료기관장과 책임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수시 파악하여 MDT종료가 필요한 자의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한센병전문진료기관장은 지역협의회에 개최 7일전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한센병전문진료기관장은 통보된 판정결과에 따라 관련서류를 정비하고, 치료 종결자가 계속적인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한센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고) 협의판정 고무인(형식)



치료종결 운영 도표

가) 치료종결 기본 방향

구 분	주치료		마무리치료	
	MB	PB	MB	PB
활동성환자 ·신환자, 재발자 등 포함	처방	권고처방 참조		
	규칙도	2/3이상		100%
	기간	균음전시 까지	활동성증상 소실까지 (2년)	2년 6개월
비활동성 환자	Dapsone단독 장기치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생략 		
	한센병전문진료기관별 과거 MDT종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발징후가 없는 경우 생략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의 장기 진료불참자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성 5년.비활동성 3년의 진료참여 권유후 서비스 권유기간 설정 (→ 한센사업자료실로 이관) 		

※ 관리의사의 판단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

나) 치료종결 협의 내용

구 분	주치료		마무리치료	
	MB	PB	MB	PB
치료(MDT)종결 협의 내용	대상선정	1) 권고처방에 따른 MDT종료자 2) Dapsone 단독치료자로서 - 마무리치료가 종료된자 또는 불필요한 자 3) 한센병전문진료기관별 과거 MDT종결자 - 재발 징후가 없는 자		
		적격 치료자는 치료(MDT) 종결 판정		



VII

한센병관리 교육훈련 계획

2017년 한센사업 지침

1. 목 적
2. 기본방향
3. 2017년도 교육훈련 세부계획

VII. 한센병관리 교육훈련 계획

1. 목적

한센병관리자 및 일선 한센병 관계종사자들에게 최신 한센병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시켜 한센사업대상자 및 신환자 발견사업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한센병 조기퇴치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방향

- 한센사업에 관한 새로운 지식 및 기술교육으로 한센사업 관계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통한 정예화
- 교육훈련 대상자의 다변화를 통한 한센사업 참여의 저변 확대
-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해외연수를 통한 최신 한센병 지식 보급
- 새로운 교재 발간 및 교육방법 개발로 교육 효과의 극대화
- 강의 위주의 교육방법을 지양
- 실습 및 분임토의, 시청각 교육, 견학 등 교육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효율적인 교육 실시
- 분야별 전문교육 과정을 편성, 교육의 전문성을 살리고 직무와 직결되는 실무 교육 실시
- 과정별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 이수 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정부 한센사업 시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한센사업 관련 유관기관과의 유대 강화 및 상호협조 체계 확립

가. 교육훈련 기본방침

1) 기본교육

- 한센병의 발병 원인, 조기진단, 치료 방법 등 중점교육
- 실무 위주 교육실시
- 분야별 전문 강사 초빙을 통한 전문성 강화

2) 전문교육

- 한센사업 종사자에 대한 전문기술교육 강화
- 실습 및 분임 토의 등으로 교육내용 다변화
- 업무 분야별 특성에 적정한 교육과정 편성
- 신규 임용자의 개인별 실습 실시
- 한센사업 종사자, 연차적 교육 참여 유도

나. 교육훈련 수요조사

- 1) 목 적: 교육수요의 예측 및 분야별, 반별 교육대상자 파악
- 2) 조사내용: 업무 분야별, 반별 교육 수요 파악
- 3) 조사방법: 피교육자 소속 관계기관에 대상자 선정 의뢰

다. 교육대상자 선정

1) 교육대상자 선발

- 교육대상자 선발기관은 본 교육계획서에 정하고 있는 교육대상 적격자를 선발함으로서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교육대상자 선발기관은 교육대상자 선발 시 교육대상자의 업무형편, 건강 등의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미등록, 퇴교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함으로써 교육훈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신규 한센사업 담당자의 경우 우선 선발, 입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2) 교육대상자 명단 제출

- 교육대상자 선발기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 개시 10일 전까지 한센병 전문교육대상자 명단(제44호 서식)을 민간교육 훈련기관 【한국한센복지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 교육대상자 선발기관은 선발 통보된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차출 명령, 직무교육 이수평점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교육대상자 선발기관은 기 선발 통보된 교육대상자가 등록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교체자 명단을 통보하거나 불참 사유서를 교육훈련기관 【한국한센복지협회】에 제출하여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3) 교육대상자 등록

- 등록일시: 교육개시 당일(09:30)
- 등록부서: 한국한센복지협회(의료복지과 교육담당) 또는 교육훈련 기관이 지정하는 부서
- 지 참 물: 신분증, 필기도구 등

라. 교육훈련과정 편성

1) 전문교육 훈련과정

한센병관리자반, 한센병관리담당자반Ⅰ, 한센병관리담당자반Ⅱ,
한센병관리 의료전문직반, 한센병관리 의사반, 한센병관리 간호사반, 한센병관리
의료기사반, 국립소록도병원 직원반 - 8개 반

가) 교육목적

- 국가 주요 보건사업인 한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능력 배양

- 한센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고 및 인식 개선

나) 중점방향

- 한센사업 전반에 관한 능력 배양

- 한센병 개요 및 진단, 증상, 치료, 장애·재활 등의 필수과목과 우리나라 한센사업 현황 및 향후 방안

- 신환자 발견사업 수행에 따른 방법 제시

- 관내 정착마을 및 재가, 외래, 생활시설 등 사업대상자에 대한 한센서비스 능력 배양

- 한센인 인권 및 한센병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내용 강화

- 시·도 및 시·군·구 한센병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활동지원

- 교육과정(반)별 특성에 맞는 실습 및 시청각교육 실시 강화

2) 직무 교육훈련과정

한국한센복지협회 책임관리자반, 직원반 - 2개 반

가) 교육목적

-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일반 소양 함양

- 한센사업 행정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나) 중점방향

- 한센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관리 능력향상

- 한센병 전문기관과의 상호협조 체제 강화

- 직무의 연관성을 고려한 교과목 편성

마. 교과목 편성 및 교육 교재 편찬

1) 교과목 편성

○ 직무과목

- 각 과정별 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목적에 적합한 교과목을 선정
하되 직무와 직결된 전문적이고 실용성이 있는 과목으로 편성

○ 소양과목

- 정신교육, 교양교육으로 구분하되 교육기간을 감안하여 편성

2) 교재 편찬

- 교육훈련용 교재는 과정 및 과목별 교육목적에 적합한 내용으로서 충분히 소화

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편성

- 실무 위주의 쇠신 지식과 기술적인 관리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재 편찬
- 교재의 원고는 해당 교과목을 담당할 강사로 하여금 집필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교재내용의 보완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이를 보완하여 재편찬

바. 강사진 구성

- 자체 강사 및 국내 권위 있는 외래 강사로 구성
- 연구원내 전문 강사진 적극 활용
 - 자체 강사진은 전문교과목 지정 운영
 - 자체 강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연구과제 부여, 자체 교육실시, 연구과제 발표, 국내외 유관기관에서 주최하는 각종 학술발표회, 해외연수 견학 등 실시
- 교육과정별 특성에 맞는 저명 강사 선정
 - 전문교과목은 전문 이론능력과 실무경험 등을 겸비한 대학교수 및 일선 한센사업 분야 전문가 등 초빙
 - 소양교과목은 대학교수, 사회 저명 인사 등 업선

사. 행정 사항

- 한국한센복지협회는 본 교육계획에 의거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질병 관리본부에 보고
- 교육에 소요되는 강사료 및 일반경비는 한국한센복지협회에서 부담하고, 숙식비 및 여비는 피교육자 소속기관에서 부담
-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한국한센복지협회 교육훈련규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의거, 교육훈련수료증을 교부하고, 교육 대상자 이외의 수강 희망자 및 위탁교육을 필한 자에 한하여 수강 후 수강필증을 교부
- 출강교육 시 교육장소는 해당 피교육 단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피교육 단체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음
- 교육훈련과정별 안내는 인터넷을 통하여 사전에 교육훈련 대상자들에게 홍보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www.khwa.or.kr>

3. 2017년도 교육훈련 세부계획

가. 교육훈련과정 개요

1) 교육기본방향

가) 미션

한센병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한센병 조기퇴치와 한센사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행복한 삶에 이바지

나) 비전

최고의 교육서비스와 고객감동을 구현하는 한센병 전문 으뜸 교육기관

다) 추진전략

① 현장중심의 대응능력 함양

- 한센사업에 관한 국내외 새로운 지식 전달 체계 정예화
- 전국 시도 및 보건소, 한센병전문진료기관 등 현장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실시
- 교육훈련 대상자의 다변화를 통한 한센사업 참여의 저변 확대

② 한센병 전문 인재양성의 파트너십 강화

- 정부 한센사업 시책에 대한 이해 증진
- 한센사업 유관기관과의 유대 강화 및 상호협조 체계 확립

3) 교육 일정

과정별		구분	교육일수	평점	교육기간	교육대상
전문교육과정	한센병관리자반	30	3	21	03.08~03.11	◦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한센사업 관리자
	한센병관리 담당자반 I	58	3	21	04.26~04.28	◦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한센사업 담당자
	한센병관리 담당자반II	59	3	21	09.06~09.08	◦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한센사업 담당자
	한센병관리 의료 전문직반	31	3	21	09.06~09.08	◦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한센사업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 ◦ 민간 한센병 전문진료기관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
	국립소록도병원 직원반	34	2	14	06.29~06.30	◦ 국립소록도병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직원 및 일반 행정직원

나. 시·도별 교육대상자

1) 전문교육

구분 시도별	계	전 문 교 육			
		한센병 관리자반	한센병관리 담당자반 I	한센병관리 담당자반 II	한센병관리 의료전문직반
계	73	18	30	23	2
서울특별시	2	-	1	1	-
부산광역시	4	1	1	2	-
인천광역시	3	2	1	-	-
대전광역시	5	-	3	2	-
광주광역시	-	-	-	-	-
대구광역시	3	-	2	1	-
울산광역시	2	1	1	-	-
세종특별자치시	3	1	1	1	-
강원도	3	-	2	1	-
경기도	9	1	4	3	1
충청북도	3	-	2	1	-
충청남도	14	5	4	4	1
전라북도	4	3	-	1	-
전라남도	9	1	4	4	-
경상북도	6	1	3	2	-
경상남도	3	2	1	-	-
제주특별자치도	-	-	-	-	-

다. 행정사항 안내

1) 교육신청 안내

1	교육안내 공문발송	시도 지방자치단체 교육업무부서, 한센병전문진료기관 등으로 추천 협조 공문 및 교육안내문 발송
2	교육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 지방자치단체 (교육업무부서) → 관내 시군구 보건소에 교육안내문을 전달• 시군구 보건소 → 지방자치단체 교육업무부서에 교육 신청• 한센병전문진료기관 등 교육업무부서로 교육 신청
3	명단취합	지방자치단체(교육업무부서) 및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은 취합된 신청자 명단을 한센병 민간교육 훈련(위탁)기관인 한국한센복지협회 로 통보. ※ (제44호 서식)에 의거
4	확정통보	시도 지방자치단체, 한센병전문진료기관 등 교육업무부서로 교육 대상자 확정 통보
5	입 교	교육 당일 9시 30분까지 입교 * 교육비 무료 * 준비사항 ; 신분증, 필기구, 간편 복장

2) 교육시간 및 수료 안내

가) 교육시간

- 1일 교육시간은 7시간 기준으로 편성
- 교육훈련 인정시간은 과정별 교육일정에 교육시간 표기

나) 수료 통보

- 교육수료자에 대한 수료 결과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의거, 교육생 소속기관으로 수료 여부와 교육시간을 교육 수료 후 10일 이내 통보

3) 교육문의

- 한국한센복지협회 의료복지과

Tel) 031-452-7094, Fax) 031-455-6592

4) 오시는 길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원골로 59(한국한센복지협회)

■ 교통편

◎ 버스 이용

- ◆ 일반버스 777, 502, 441, 5, 5-1, 64, 65
- ◆ 좌석버스 300, 301, 900
 - * 하차 정류장 ; 하행(의왕·수원방향)- 신안아파트·글로벌도서관
상행(안양·서울방향)- 의왕지구대·글로벌도서관

【공통】하차 후 성라자로마을 방향 도보 10분

- ◆ 마을버스 03번(오전동 현대모락산아파트 종점 하차)

◎ 기차, 지하철 이용

- ① 수원역 광장(7번 출구) ; 777, 900
- ② 명학역 육교 건너편(1번 출구) ; 64, 65
- ③ 사당역 과천방면(4호선 4번 출구) ; 777, 502
- ④ 인덕원역 군포방면(4번 출구) ; 777, 502, 441번
- ⑤ 광명역(KTX) 안양방면 3번 타고 킹덤웨딩홀에 하차하여 제자리에서 5번 또는 5-1번 버스 승차

◎ 항공기 이용

- ⑥ 김포공항(경기공항리무진버스 이용)
범계역 하차(약 1시간 소요) 제자리에서 마을버스 03번 오전동 현대모락산아파트 종점 하차.
성라자로마을 방향 도보 5분

◎ 자가용 이용

- ⑦ 북수원IC · 의왕IC
경수산업도로(1번국도) 서울, 안양방면 우회전 ⇒ 신안아파트 우회전 ⇒ 성라자로마을 방향 직진
- ⑧ 평촌IC
평촌IC 우회전(수원, 의왕 방향) ⇒ 가구단지길 직진 ⇒ 현대 모락산아파트 좌회전 ⇒ 성라자로마을 방향 직진



VIII

참고자료

2017년 한센사업 지침

1. 진료기관별 한센사업 분담표
2. 보고체계 및 한센사업 관련서식
3.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지원 사업
4. 한센병 관련기관·시설·단체의 명칭 및 주소지 등
5. 한센병 관련용어

VIII. 참고자료

1. 진료기관별 한센사업 분담표

가. 시·도별 전문진료기관별 한센사업 분담표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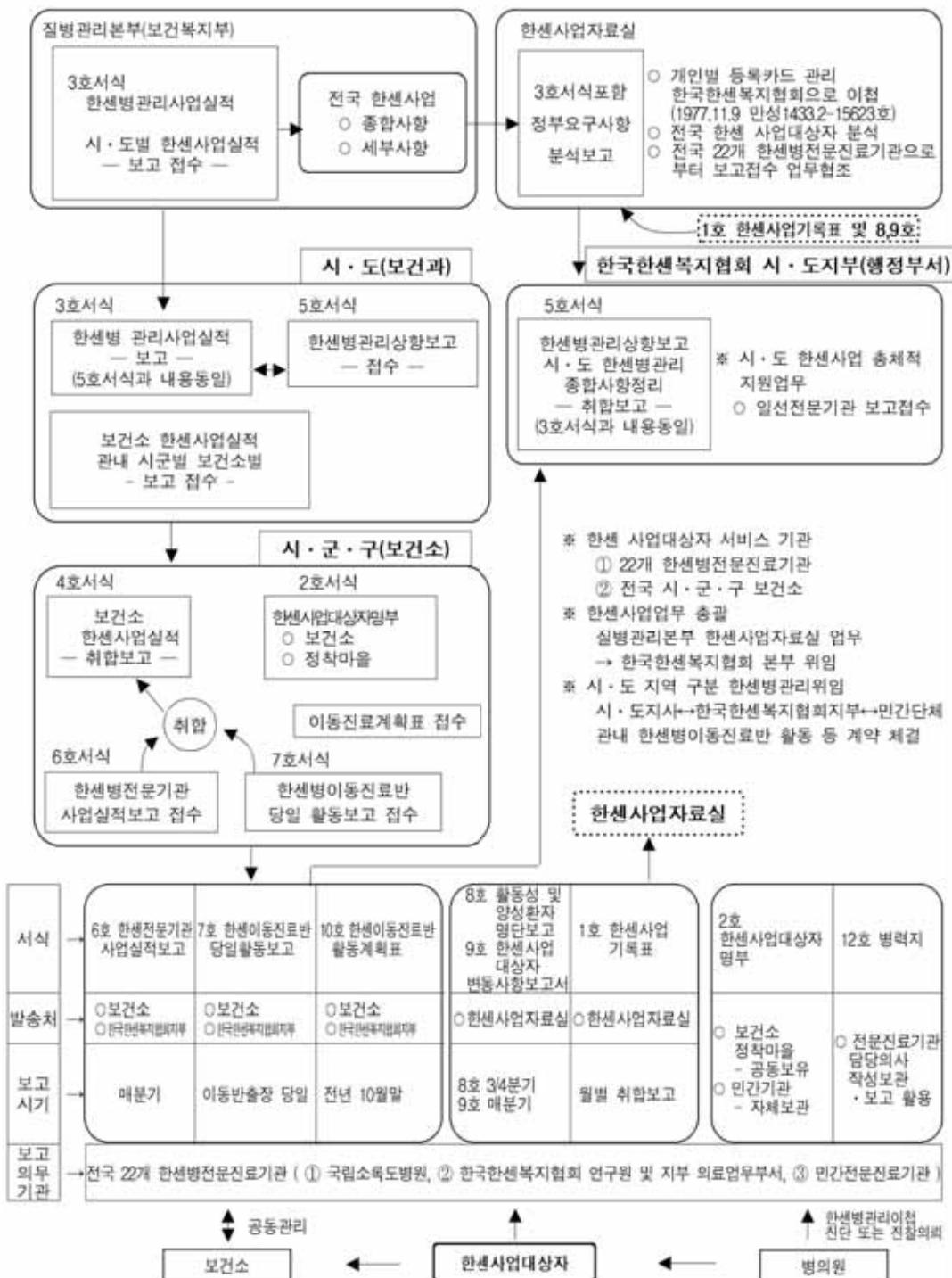
시·도별	기 관 명	소재지	진 료 사 업 기 능			
			외래진료 장소	단기입원 시 설 수 (병상수)	이동진료반 활동지역	입원· 생활시설수 (병상수)
계	22개 기관		17	3 (120)		7 (1,883)
	국립기관 1개		-	-		1 (700)
	한국한센복지협회 지부 1개		12	-		-
	한국한센복지협회 연구원 1개	1(연구)	1 (29)			-
	민간한센병전문진료기관 9개	4	2 (91)			6 (1,183)
서울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지부 가톨릭의대 한센병연구소	상도로 반포대로	1 1	— —	서울 경기	— —
부산	한국한센복지협회 부산지부	두송로	1	-	부산	—
대구	한국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	장등로	1	-	경북	—
	가톨릭피부과의원	구암로	1	1 (51)	-	—
	TLM코리아예수의원	두류공원로	1	-	-	—
	대구애락원	통학로	-	-	-	1 (35)
광주	한국한센복지협회 광주·전남지부	남문로	1	-	광주·전남	—
대전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	대전로	1	—	대전·충남	—
경기	한국한센복지협회 연구원	의왕원골로	1(연구)	1 (29)	-	—
	한국한센복지협회 경기·인천지부	수원경수대로	1	—	인천·경기	—
	성라자로마을	의왕원골로	-	—	—	1 (150)
강원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지부	원주원일로	1	—	강원	—
충북	한국한센복지협회 충북·세종지부	청주직지대로	1	—	세종·충북	—
전북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지부	전주안덕원로	1	—	전북	—
전남	국립소록도병원	고흥군	-	—	—	1 (700)
	여수애양병원	여수시	1	1 (40)	전남	1 (147)
경북	다미안의 집 안동성좌원	영주봉화로 안동희망길	- -	- —	- —	1 (50) 1 (501)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 지부 산청성심원	마산호계본동 진주남강로 산청군	1 1 -	— - —	울산·경남 경남 —	— - 1 (300)
제주	한국한센복지협회 제주지부	제주 신대로	1	—	제주	—

나. 이동진료반 시·군·구 활동분담표

시.도별	이동진료반 (공동참여단체)	진료 반수	담당지역	
			시.군.구 보건(지)소	정착마을
계		19개	255개 지역	87개소
수도권 지역	서울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지부	1개 서울특별시 전지역 25개 지역	현인 고운(경기도)
	인천 경기	한국한센복지협회 경기·인천지부 (한센병연구소)	1개 인천광역시 전지역 10개 지역	부평, 청천, 경인
			1개 수원(4), 성남(3), 부천(3), 안양(2), 과천, 광명, 안산(2), 평택(2),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이천, 안성, 용인(3), 김포, 여주, 화성, 광주, 동두천, 고양(2) 35개 지역	동진, 염광
			1개 고양, 의정부, 남양주, 가평, 양주, 양평, 연천, 파주, 포천 9개 지역	성생, 협동, 유양, 상록, 청산, 포천
강원 지역	강원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지부	1개 강원도 전지역 18개 지역	대명
중부 지역	세종 충북	한국한센복지협회 충북·세종지부	1개 세종특별자치시 전지역 1개 지역	충광
			1개 충청북도 전지역 14개 지역	청원
	대전 충남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	1개 대전광역시 전지역 3개 지역	
			1개 충청남도 전지역 17개 지역	영락, 성광
호남 지역	전북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지부	1개 남원, 진안, 장수, 무주, 임실, 순창 6개 지역	보성, 성자
			1개 정읍, 김제, 고창, 부안 4개 지역	정애, 신암, 신흥, 비룡, 등해
			1개 익산, 군산, 완주 3개 지역	익산, 금오, 신촌, 상지
	광주 전남	한국한센복지협회 광주·전남지부 (여수애양병원)	1개 광주광역시 전지역 5개 지역	
			1개 목포, 나주, 담양, 구례, 회순, 완도, 해남 국성, 영암, 진도, 장성, 신안, 함평, 무안 영광, 장흥, 강진 17개 지역	호혜, 현애, 영호, 성진, 재생, 영민
			1개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5개 지역	여천, 도성
영남 지역	부산	한국한센복지협회 부산지부	1개 부산광역시 전지역 16개 지역	용호, 구평, 계림, 삼덕, 낙원
	대구 경북	한국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	1개 대구광역시 전지역 8개 지역	
			1개 경상북도 전지역 25개 지역	계명·신애·강화·삼애·광신·성심·상신·성신·금성·경애·사락·칠곡·낙산·삼청·희망·성곡·명진·영천·벨엘
	울산 경남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	1개 울산광역시 전지역 5개 지역	성혜
			1개 경상남도 전지역 20개 지역	덕촌, 양지, 낙동, 대동, 상동, 신생, 신촌, 들풍성, 여명, 소혜, 금호, 성애, 광명, 신광, 소아, 영복, 염광, 승의, 성진, 영신, 거창, 합성, 팔복, 경호, 향촌
제주	제주	한국한센복지협회 제주지부	1개 제주도 전지역 6개 지역	

2. 보고체계 및 한센사업 관련서식

가. 사업실적 보고 체계



시·도(보건과)

3호서식
한센병 관리사업 실적
— 보고 —
(5호서식과 내용동일)

5호서식
한센병관리상황보고
— 접수 —

보건소 한센사업 실적
관내 시군별 보건소별
— 보고 접수 —

1호 한센사업기록표 및 8,9호
한국한센복지협회 시·도지부(행정부서)

5호서식
한센병관리상황보고
시·도 한센병 관리
종합사항정리
— 취합보고 —
(3호서식과 내용동일)

※ 시·도 한센사업 총체적
지원업무
○ 일선전문기관 보고접수

시·군·구(보건소)

4호서식

보건소
한센사업 실적
— 취합보고 —

2호서식

한센사업대상자명부
○ 보건소
○ 정착마을

이동진료계획표 접수

※ 한센 사업대상자 서비스 기관
 ① 22개 한센병전문진료기관
 ② 전국 시·군·구 보건소
 ※ 한센사업업무 총괄
질병관리본부 한센사업자료실 업무
→ 한국한센복지협회 본부 위임
 ※ 시·도 지역 구분 한센병 관리위임
시·도지사→한국한센복지협회지부→민간단체
관내 한센병이동진료반 활동 등 계약 체결

한센사업자료실

서식

발송처

보고
시기

보고
의무
기관

6호 한센전문기관
사업실적보고
7호 한센이동진료반
당일 활동보고
10호 한센이동진료반
활동계획표

8호 활동성 및
양성환자
명단보고
9호 한센사업
대상자
변동사항보고서

1호 한센사업
기록표
2호
한센사업대상자
명부

12호 병력지
○ 보건소
○ 정착마을
- 공동보유
○ 민간기관
- 자체보관

○ 보건소
○ 국립현지방역부

○ 보건소
○ 국립현지방역부

○ 한센사업자료실
○ 한센사업자료실

○ 전문진료기관
담당의사
작성보관
- 보고 활용

매분기
이동반출장 당일
전년 10월말

8호 3/4분기
9호 매분기
월별 취합보고

○ 보건소
정착마을
- 공동보유
○ 민간기관
- 자체보관

→ 전국 22개 한센병전문진료기관 (① 국립소속도병원, ② 한국한센복지협회 연구원 및 지부 의료업무부서, ③ 민간전문진료기관)

공동관리

한센사업대상자

한센병관리이전
진단 또는 진찰의뢰

←

←

←

나. 한센사업관련 서식

서식 번호	서식명	작성기관	발송처	작성·보고·보관
		작성내역 및 방법		
1호	한센사업기록표	작성 : 한센병전문진료기관 (국립소록도병원 포함) · 2부 작성	질병관리본부 (한센사업자료실)	수시 작성 · 월별취합보고 · 1부 보관
2호	한센사업대상자 명부	작성 : 치료 장소별로 작성 한센병환자와 한센서비스대상자로 구분 작성 ①한센병전문기관 외래 한센사업 대상자명부(외래·단기 입원) ②한센병전문기관·입원 한센사업 대상자명부 (입원시설) ③보건소 한센사업대상자명부 (이동반 보건소 공동 작성) ④정착마을 한센사업대상자명부 (이동반·보건소 공동 작성)	-	작성, 보관 ①,② 수시 작성, 한센기관 보관 ③,④ 이동진료 당일 작성 이동반, 보건소 공동 보관
3호	한센병관리사업 실적	작성 : 시·도 ①시·도 한센사업대상자 현황 재가·정착·입원별 ②시·도 한센병관리 사업 실적 ③시·도 약품 수급현황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 관리과)	매 분기 보고 익월 15일까지
4호	보건소 한센사업실적	작성 : 시·군·구 보건소 ①보건소 및 이동반 공동사업 ②관내 소재 한센병전문기관 사업	시·도	매분기 보고 익월 10일까지
5호	한센병관리 상황보고 (시·도 현황)	작성 : 한국한센복지협회 시·도지부 시·도내 한센병관리 사항 전반 (3호서식 작성 근거 자료)	시·도 한센사업자료실	매분기 보고 익월 10일까지
6호	한센병전문 진료기관 사업실적 보고	작성 : 한센병전문진료기관 시·군·구 소재 한센병전문진료기관 외래·입원 사업 실적 (4호서식 작성 근거 자료)	한센병기관 소재 시·군·구 보건소 한센사업자료실 (한국한센복지협회 시·도지부) :한시적시행	매 분기 보고 익월 10일까지
7호	한센병이동진료반 당일 활동보고	작성 : 한센병이동진료반 시·군·구 이동진료 활동실적 (4호서식 작성 근거 자료)	이동반 활동 시·군·구 보건소 (한국한센복지협회 시·도지부) :한시적시행	당일 현지 작성·제출
8호	활동성환자 및 양성환자 명단보고	작성 : 한센병전문진료기관 2호(한센사업대상자명부)서식 사용 활동성환자 및 양성환자 발췌 기재	질병관리본부 (한센사업자료실)	년 1회 3/4분기 보고

서식 번호	서식명	작성기관	발송처	작성·보고·보관
		작성내역 및 방법		
9호	한센사업대상자 변동사항보고서	작성 : 한센병전문진료기관	질병관리본부 (한센사업자료실)	월별 취합·보고 (1호서식 동봉)
		증감, 관리변동 등 외래, 입원, 보건소, 정착마을별 구분 작성		
10호	한센병이동 진료반 활동계획표	작성 : 한센병이동진료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보건소 · 한국한센복지협회 시·도지부 · 한센사업자료실 	년 1회 보고 전년10월말까지
11호	부랑한센인 지도관리	작성 : 한국한센총연합회 본·지부	시·도 (질병관리본부)	년 1회 보고 익년 15일까지
12호	병력지(표준)	작성 : 한센병전문진료기관	-	해당기관 보관
13호	체류외국인중 한센병환자관리 상황보고서	작성 : 한센병전문진료기관	한센사업자료실	발견즉시 전화 또는 FAX송부
14호	접촉자명단 및 검진 기록부	작성 : 한센병전문진료기관	-	수시작성 자체보관
15호	접촉자검진 실적보고	작성 : 한센병전문진료기관	질병관리본부 (한센사업자료실)	매분기 보고 익월 15일까지
		14호서식을 바탕으로 작성		
16호	지출결의서	작성 : 정착마을 내 간이양로주택	-	수시작성 자체보관
17호	인건비 지급 내역서	작성 : 정착마을 내 간이양로주택	-	수시작성 자체보관
18호	근무상황부	작성 : 정착마을 내 간이양로주택	-	수시작성 자체보관
19호	한센간이양로주 택 기능보강 선정기준표	작성 : 시·도(시·군·구)	시·도 질병관리본부	
		예산계상 신청시 작성하여 제출		
20호	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	작성 : 시·도(시·군·구)	시·도 질병관리본부	
		예산계상 신청시 작성하여 제출		
21호	한센간이양로주 택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작성 : 정착마을 내 간이양로주택	시·군·구 시·도 질병관리본부	
		예산계상 신청시 작성하여 제출		
22호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작성 : 시·도(시·군·구)	시·도 질병관리본부	
		예산계상 신청시 작성하여 제출		

서식 번호	서식명	작성기관	발송처	작성·보고·보관
		작성내역 및 방법		
23호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작성 : 정착마을 내 간이양로주택	시·군·구 시·도 질병관리본부	
		예산계상 신청시 작성하여 제출		
24호	감리원(기술직공 무원) 설계 검토 의견서	작성 : 정착마을 내 간이양로주택	시·군·구 시·도 질병관리본부	
		예산계상 신청시 작성하여 제출		
25호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작성 : 정착마을 내 간이양로주택	시·군·구 시·도 질병관리본부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변경 시		
26호	한센간이양로주택 현황	작성 : 시·도(시·군·구)	질병관리본부	년 1회 보고 익년 3월말까지
27호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	작성 : 신청자	시·군·구	
28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 신청자	시·군·구	
29호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 신청자	시·군·구	
30호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 : 신청자	시·군·구	
31호	고용·임금확인서	작성 : 신청자	시·군·구	
32호	무료임대확인서	작성 : 신청자	시·군·구	
33호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작성 : 신청자	시·군·구	
34호	재가한센인생계 비 지원 대상자 소득·재산 조사 의뢰서	작성 : 시·군·구	통합조사팀	
35호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대상자 소득·재산 조사 확인결과 통보서	작성 : 통합조사팀	시·군·구	
36호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사업 결과 통지서	작성 : 시·군·구	신청자	
37호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대상자 관리대장	작성 : 시·군·구	-	
38호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		

서식 번호	서식명	작성기관	발송처	작성·보고·보관
		작성내역 및 방법		
39호	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	작성 :		
40호	요치료자 및 연도별 치료종결 현황	작성 :		
41호	한센병 치료종결 협의 의뢰서	작성 : 한센병전문진료기관	지역협의회	
42호	한센병 치료종결 협의결과 확인 통보	작성 : 지역협의회	한센병전문진료 기관	
43호	치료종결요청 대상자 명부	작성 : 한센병전문진료기관	질병관리본부 (한센사업자료실)	
44호	한센병 전문교육 대상자 명단	작성 : 시·군·구	한국한센복지협회	
45호	중요재산 현황	작성 : 시도(시·군·구) 및 해당기관	질병관리본부	

다. 서식 기재 사용 요령

1) 한센사업기록표

가) 작성

- 신규 한센 사업 대상자와 재발자가 발생하면 한센사업기록표 2부를 작성하여 한센사업명부에 등재한 후 1부(원본)는 자체 보관하고 1부(부본)는 한국한센복지협회(한센사업자료실)로 보낸다.

나) 정리

- 한센 사업 대상자의 요치료 → 한센서비스대상 등의 서비스구분 전환 및 한센 서비스 대상자 중 재발관리가 필요한 경우 등 변경사항을 추가기록하고 한센사업기록표 사본을 한센사업자료실로 보낸다.

다) 폐기

- 사망, 이민, 기관변경 등을 이유로 일선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서 삭제 처리되어 관리가 불필요한 한센사업기록표는 그 원본을 한센사업자료실로 송부한다.
- 한센사업기록표의 원본, 부본, 사본 등을 한센사업자료실로 보낼 때에는 한센 사업대상자 변동사항보고서와 함께 송부한다.

[제1호 서식] 한센사업기록표

한센사업기록표

요 치 표	
한센서비스대상	
[재발관리대상]	

분류번호: 한센사업자료실부여

작성일자 _____
작성기관 _____

추가기록일자(적색으로 기록)

한센서비스대상 : 일시 _____

재발관리완료 : 일시 _____

감소처리 : 일시 _____

① 성 명 _____	② 성 별 1. 남 2. 여 _____	③ 주민등록번호 _____	⑩ 갑염원(가족내) 1. 유 2. 무 _____
④ 경력지번호 _____	⑤ 출생지 _____	⑥ 주소(정확지는 정확마을명) _____	⑪ 갑염원(가족외 환자접촉) 1. 유 2. 무 _____
⑦ 균 유통환년월일 □□년 □□월 □□일	⑧ 균통태 1. 양성 2. 음성 _____	⑨ 치료구분 1. 보건소치료 2. 정착치료 3. 외래치료 4. 입원보호 _____	⑩ 발병연령 연도 연령 _____
⑩ 결혼관계 1. 미 혼 2. 기 혼 3. 이 혼 _____	⑩ 생활정도 1. 상 2. 중 3. 하 4. 요구호 5. 대 중 _____	⑪ 학 역 1. 무 학 2. 초 중 3. 중 중 4. 고 중 5. 대 중 _____	⑫ 발전방법 1. 친족자검진 2. 자 의 검 진 3. 정 보 검 진 4. 집 중 검 진 5. 기타 방법 _____
⑫ 병 형 L L LL BL MB B BB T BT I TT PB _____	⑬ 직 업 1. 농 업 2. 축산업 3. 어 업 4. 상 업 5. 공 업 6. 노 동 7. 공무원 8. 회사원 9. 무 직 10. 기 타 _____	⑭ 초발증상(3개항이하 표기) 1. 지각마비 2. 안면침울 3. 반 문 4. 결 절 5. 수 포 6. 신 경 통 7. 수지굽곡 8. 수(족)하수 9. 토 안 10. 기 타 _____	⑮ 초발부위(3개항이하 표기) 1. 손 2. 발 3. 목 4. 얼굴 5. 가슴 6. 팔 7. 등 8. 아래 9. 다리 10. 복부 11. 문부 _____
* 본단은 발견에 관한 역학사항이므로 추가기록이 불가함(두번동사향)			

WHO 장애도										
등급	손			발			눈			⑩ 후 두 침 범 ① ② 유 무
	증 상	②과 ④후	증 상	②과 ④후	증 상	②과 ④후	증 상	②과 ④후		
1 도	1. 지 각 마 비		1. 지 각 마 비		1. 결 막 염					⑪ 비 양 합 물 ① ② 유 무
	2. 궤양 및 손상		2. 궤양 및 손상		2. 토 암					⑫ 안 면 마 비 ① ② 유 무
2 도	3. 가동성끌고리손		3. 걸 고 리 말		3. 흉쇄밀 각막염					⑬ 병 균 지 수 1 2 3 1도 2도 3도
	4. 경도끌흡수		4. 촉 하 수		4. 경도시비장에					⑭ 심한 신체장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간호 또는 도움이 없이는 조금도 거 동할 수 없는 자
3 도	5. 수 하 수		6. 경직: 경축		5. 중증시비손실					
	6. 관절경직		7. 중증끌흡수		6. 실 명					
최고 치수	8.	1도 1도 8.	1도 1도 7.	1도 1도 2도 2도 3도	1도 1도 2도 3도					

⑯ 노동력기준 장애도
1. 한센병 증상은 있으나, 일반인과 거의 다름없는 노동력을 지닌 자
2. 수족에 악간의 기능장애가 있으나, 가벼운 노동수행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자
3. 수족의 기능장애 또는 기타장애로 인해 노동수행에 지장이 많으나 건강인의 절반정도의 노동력을 지닌 자
4.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나 평상 시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거동할 수 있는 자
5. 심한 신체장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간호 또는 도움이 없이는 조금도 거 동할 수 없는 자

주 소 번 동 단 (현 주 소)	시기	부터 ~ 까지)
1		
2		
3		
4		
5		

감소처리(날 월 일)
<input type="checkbox"/> 사망확인
<input type="checkbox"/> 이만화정
<input type="checkbox"/> 거주불명화정
<input type="checkbox"/> 기관변경확인
<input type="checkbox"/> 치료종결, 서비스종료·계적

○ 초진기록: 증가자(신화, 기관변경 등)에 대하여 사항기록 또는 ○표로 표기작성하여 원본은 보관하고 부분은 한센사업자료실에 보고한다.
 ○ 추기기록: 요치료→한센서비스의 보호 변동시와 감소처리(사망, 이민, 거주불명, 기관변경)시에 추기기록을 하되 표기사항은 붉은글씨를 사용하여 추기사항은 ○표로, 삭제사항은 ×표로 표기작성하여 관리변동시는 그 사본을, 감소처리시는 그 원본을 한센사업자료실에 보고한다.

(규격 210mm×295mm)

한센약품 투약상황

1) '88년 등록정비 이전의 Dapsone 단독실시에 관한 사항

Dapsone 단독 투약	Dapsone 단독치료로 간주되는 치료실시기간은 _____년부터 _____년까지 _____년간이며, 이중 85%이상 규칙적 복약기간은 약 _____년간임(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음).
치료기관별 구분(기관명)	
한센병원, 한센병기관, 보건소, 정착마을, 자가치료	
1	
2	
3	
4	
5	

2) MDT실시이후 사항 및 '88이후 신규 한센사업 대상자에 관한 사항

MDT로 간주되는 치료실시는										년도 부터이며 다음과 같다.					
MDT 처방 종별 및 세부내역 (단위: mg)										처방별 사용기간					
처방	Dpore	Rifampicin	Clofazimine		Oflo-xacin	Mino-cin	Clarithro-mycin		처방별 사용기간	검진상황 (검진내역 및 검진년월)					
종별	매일	매일 또는 월간	매일투여+월별추가		매일	매일	매일		부터 년월	까지 년월	ELISA	세균 지수	활동성 여부	재발 내성 확인	Lepromin
투여량	투여량	투여량	투여량	투여량	투여량	투여량	투여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규격 210mm×295mm)

※ 한센사업기록표 세부기록요령

① 이 름: 앞란은 성을, 뒷란은 이름을 기록한다.

예 ;	홍	길동	.	김	철
	선우	인석			

② 성 별: ○표로 표시한다.

예 ; ♂

④ 병력지번호: 한센병전문진료기관별로 부여한 한센 사업대상자의 병력지 번호

⑤ 출생지

예 ;	경남·밀양	부산·서구
-----	-------	-------

⑥ 주 소

예 ;	전남·여천·웅촌·신풍·신도
-----	----------------

동·반 또는 정착마을의 표시가 필요할 때는 주소기입란의 윗쪽에 첨가 기입한다.

⑦ 나균 음전환 연월일

예 ;	9	6	년	0	5	월	0	5	일
-----	---	---	---	---	---	---	---	---	---

⑧ ⑨는 해당란에 ○표 한다.

⑩ 감염원: 확실히 알고 있는 해당란에 ○표를 한다.

⑪ 감염원(가족외 환자 접촉): 동거인, 친척 또는 지속적으로 접촉한 사람이 있을 경우

예 ; ♂

⑫ 발병연령: 진단이나 투약 연도와 관계없이 한센병 초발증상이 있을 당시의 상황임.

⑬ 결혼관계: 호적상의 기재를 기준으로 표기한다.

⑭ 생활정도

상 : 약간의 부동산(토지·가옥 등)과 고정수입이 있으며 저축할 능력이 있는 자

중 : 부동산은 없으나 고정수입이 있어 타인의 도움 없이도 생계유지가 가능한 자

하 : 부동산이 없으며 고정수입도 적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

요구호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⑮ 학 력: 초등학교졸업 또는 국문해독자는 초졸란에, 중학교졸업 또는 고등학교 중퇴자는 중졸란에, 고등학교졸업자는 고졸란에,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는 대졸란에 표기한다.

⑯ 치료경력: 한센병에 대한 치료경력(주치약의 투여 등)을 말한다.

⑰ ~ ㉚ 초발증상 및 부위: 3개 이상일 때는 3개 이하의 주요 해당번호에 표기한다.

㉛ ~ ㉝는 WHO의 표준장애도표이며, ㉞은 노동력기준 장애도로서 우리나라 고유의 표준표이고,

㉟ ~ ㉚, ㉛, ㉜, ㉝는 환자발생 당시의 사항이므로 추가 또는 기록변경을 해서는 안된다.

※ 일선 한센병전문진료기관 간 한센사업대상자의 이동으로 한센사업기록표 사본을 보내야 할 경우 요 치료.서비스대상[재발관리대상]등 해당 부분에 ○표로 표기한다.

※ 약품 투약상황(후면)

- 상단은 '88년 등록정비 이전의 Dapsone 단독치료 경력사항이며, 85% 규칙적 투약은 WHO의 최저의 적정치료 한도임.
- 하단은 Rifampicin 사용 이후의 다제요법(MDT)에 의한 투약사항임.
- 하단 우측의 검진상황은 PGL-I항체검사, 세균지수, 활동성여부, 재발내성확인, Lepromin검사 실시 및 점검내용을 기재한다.
- 초진기록: 증가자(신환, 기관변경 등)에 대하여 사항기록 또는 ○표로 표기·작성하여 원본은 보관하고 부분은 한센사업자료실에 보고한다.
- 추가기록: 서비스 변동(요치료→한센서비스대상)시와 감소처리(사망, 이민, 거주불명, 기관변경)시에 추가기록을 하되 표기사항은 붉은 펜으로 사용하여 추가사항은 ○표로, 삭제사항은 ×로 표기·작성하여 서비스 변동시는 그 사본을, 감소처리시는 그 원본을 한센사업자료실에 보고한다.

한선사업대상자 명부

- 한센 병환자 명부
 - 한센 서비스대상자 명부

[제2호 서식] 한센사업대상자 명부

서비스대상자와 한생병환자 대부분의 서비스대상자 명부를 구분하여 관리함.

[제3호 서식] 한센병관리사업실적 분기별 보고

분류기호:	작성기관명:											
수 신: 질병관리본부장	시행년월일: 20 . . .											
참 조: 에이즈·결핵관리과장	발 신: (인)											
제 목: 한센병관리사업실적												
I. 한센병관리사업실적 20 년 /4분기												
가. 한센사업대상자 현황												
관리구분 한센사업대상자 진료장소별	1. 인 사 사 항			2. 임 상 사 항						3. 서비스구분		
	한센사업대상자 증감 현황			성 별	균동태		활동성여부		병 형		요치료 대상자 (재발관리)	한센 서비스
	전기 밀수	변 동 증 감	금 기 수	남	여	+	-	활동성	비활동성	MB		PB
총 계												
재 가	보 건 소											
가	한센병전문 진료기관외래											
정 착 마 을												
입원 (소록도병원)	()	()										
나. 한센병관리 사업실적(시·도 한센사업실적·분기실적: 누계)												
1. 신환자 발견사업			2. 한센사업대상자 진료			3. 입원관리			4. 이동진료반 활동			
계	이동반 주민검진	외래피부 검진	사업대상자진료 (월단위)	정밀진찰		단기입원 연입원 일수	입원시설 연입원 일수		이동출장 누적일수			
다. 약품 수급현황												
종 별	1차 약품				2차 약품				보 조 약 제			
	Dapsone	Rifampicin		Clofazimine	Minocin	Oflloxacin	Daithiyan	영양제	간장제			
단 위 mg	100	150	600	50	50	200	250	(정)	(정)			
분기중 사용량												
기말재고												

(규격 210mm×295mm)

작 성 요 령

1. 한센사업실적

자료의 표기는 [표두]와 [표측]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가감공식에 의하여 기입한다.

가. 한센사업대상자 현황

[표 두]

1) 인사사항

전기말 수 + 증(증가) - 감(감소) = 금분기 수

○ 증(증가): 단위 한센사업기관에 신환, 전입 등의 이유로 신규로 편입되어 한센사업자료실에 증가 보고를 마친 한센 서비스 대상자수

○ 감(감소): 사망, 전출, 이민 등의 이유로 서비스대상에서 제외되어 한센사업자료실에 감소보고를 마친 한센 서비스 대상자수

○ 금분기 수: 단위 한센사업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금분기 기관 한센 사업 대상자수이며, 한센사업 대상자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진료관리기관의 기관 한센사업 대상자수(보건소치료자, 정착마을 치료자, 한센병전문진료기관 외래진료소치료자, 입원시설치료자)

○ 성별: 남, 여의 합은 금분기수와 같아야 한다.

2) 임상사항

○ 균동태, 활동성여부, 병형의 합은 금분기수와 같아야 한다.

3) 서비스구분

○ 요치료, 한센 서비스 대상자의 합은 금분기의 합과 같아야 한다.

○ 한센 서비스 대상자 중 재발관리가 필요한 자는 (재발관리)란에 표기한다.

[표 측]

총계=재가(보건소, 한센병전문진료기관 외래)+정착+입원보호자

나. 한센사업실적

○ 각 항목 모두 실적을 기록하되, 분기말 시점에서의 연간누계를 기록한다.

1) 신환자발견사업

한센병환자 발견을 목적으로 한센병관리 의사가 실시한 일반인 검진수

12) 한센 사업 대상자 진료

한센 사업 대상자진료: 월단위 약품 투약, 진찰, 검진 등에 따른 참여 횟수로 계산함. 다만, 2개월 이상의 투약처방자는 월별관리 단위로 계산함.

정밀진찰: 정기적인 종합검진수(양성환자 연간 2회, 음성자 연간1회 기준)

13) 입원관리

단기입원 연입원일수: 입원치료자의 입원일수 누계(일일 입원단위)

입원시설 연입원일수: 입원시설 한센 사업 대상자의 입원일수 누계(일일 입원단위)

14) 이동반 활동

이동출장 누적일수: 이동반의 출장 일수의 누계

다. 약품 수급현황

○ 각 약제의 단위는 정(캡슐)으로 한다.

[표 측]

○ 분기중 사용량: 분기사용량을 기록한다.

○ 기말재고: 분기말 현재의 재고량을 기록한다

[제4호 서식] 보건소 한센사업실적

분류기호:

수 신: 시 · 도지사

작성기관: 보건소

참 조: 보건(정책 · 위생)과

작성일자: 년 월 일

제 목: 보건소 한센사업실적(/4분기)

(시.군.구내 한센사업 총괄 현황임)

가. 한센사업대상자 현황													
관리구분 한센사업 대상자 진료장소별	1. 인 사 사 항			2. 임 상 사 항					3. 서비스구분				
	한센사업대상자 증감현황			성 별		균동태	활동성여부		병 형		요지 료	한센 서비스	
	전기 말수	변 동	금분 기수	남	여	+	-	활동 성	비활 동성	MB	PB		
총 계													
보 건 소													
정 착 마 을	계												
	마을												
	마을												
	마을												
	마을												
한센병전문진료기관 외래													
입 원													
나. 한센병관리 사업실적(누계)													
구 분 활 동 기구별	1. 신환자발견사업			2. 한센사업대상자 진료					3. 입원관리				
	주민검진 인명수			사업대상자진료 (월단위)		정밀진찰		단기입원 연입원 일수		입원시설 연입원 일수			
계													
이 동 진 료 반													
한센병전문진료기관 외래													
입 원													

* 1) 이동진료반 사항은 이동진료반 당일 활동보고(제7호서식)에 준함.

2) 한센병전문기관 외래 및 입원시설 사항은 한센병전문진료기관 사업보고 (제6호서식)에 준함.

(규격 210mm × 295mm)

[제5호 서식] 한센병관리상황보고

한센병관리상황보고 /4분기

(이 자료는 제3호서식의 기초자료임)

분류기호:	작성기관명: 한국한센복지협회	지부
수 신: 시·도	작성일시: 년 월 일	
참 조: 보건(정책·위생)과	발송일:	

가. 한센사업대상자 현황												
관리구분 한센사업대상자 진료장소별	1. 인사사항						2. 임상사항				3. 서비스구분	
	한센사업대상자 증감 현황			성별		균동태		활동성여부		병형		한센 서비스 대상자 (재발 관리)
	전기 만수	변동 증 감	금분 기수	남	여	+	-	활동성	비활 동성	MB	PB	
총 계												
재 가	보 건 소											
한센병전문 진료기관외래												
정 착 마 을												
입 원 (소록도병원)	()	()										

나. 한센병관리 사업실적(시·도 한센사업·분기실적: 누계)							
1. 신환자 발견사업			2. 한센사업대상자 진료		3. 입원관리		4. 이동진료반 활 동
계	이동반 주민검진	외래피 부검진	대상자진료 (월단위)	정밀 진찰	단기입원 연입원 일수	입원시설 연입원 일수	이동출장 누적일수

다. 약품 수급현황								
종 별	1차 약품			2차 약품			보조약제	
	Dapsone	Rifampicin	Clofazimine	Minocin	Oflloxacin	Clarithromycin	영양제	간장제
단위 mg	100	150	600	50	50	200	250	(정) (정)
분기중 사용량								
기말재고								

※ 앞면 가 항 한센사업대상자 현황의 보건소, 정착마을별 현황임.

(규격 210mm×295mm)

(규격 210mm×295mm)

[제6호 서식] 한센병전문진료기관 사업실적보고

한센병전문진료기관 사업실적보고

보고: 1) _____ 보건소(기관 소재 보건소) 작성 기관: 한센병전문진료기관

2) 한국한센복지협회 _____ 시·도지부(합시적 시행) 작성기관명: _____

작성 분기: _____ /4분기

(기관 외래, 입원 한센사업대상자 현황)

가. 한센사업대상자 현황															
1. 인 사 사 항					2. 임 상 사 항					3. 서비스구분					
한센사업 대상자 증감현황			성 별		균동태		활동성여부		병 형		요치료	한센 대상 자 (재발 관리)	서비스		
전기 말수	변 동	금분 기수	남	여	+	-	활동성	비 활동성	MB	PB					
증	감														
나. 한센병관리 사업실적(누계)															
1. 환자 발견사업				2. 한센사업대상자 진료				3. 입원관리							
외래 피부검진 인명수				사업대상자 진료 (월 단위)		정 밀 진 찰		단기입원 연입원일수		입원시설 연입원일수					
다. 한센약품 수급현황															
종 별	1차 약품					2차 약품				보 조 약 제					
	Dapsone	Rifampicin	Clfazimine	Minocin	Oflaxacin	Clarithromycin	영양제 (정)	간장제 (정)							
단 위 mg	100	150	600	50	50	200	250								
분기중 사용량															
기말재고															

※ 가. 나. 항은 제4호서식의 근거자료임.

(규격 210mm×295mm)

[제7호 서식] 한센병이동진료반 당일 활동보고

(H7호M4)

한센병이 동진료반 당일 활동보고

보건소 보고 : 1)

2) 韓國憲法審議會 · 地方(한시적 시행)

작성기관 : 한센병전문진료기관 이동반

작성기관명 :

장성일자 :

(보건소·이동반 공동사업 현황입니다.)

나. 한생명면회 사업설립(이중 당일 이동반·보건소 공동사업실적)

제4호서식의 근거자료임.

(元) 295mm×210mm

활동성환자 및 양성환자 명단보고

[제8호 서식] 활동성환자 및 양성환자 명단보고

① 주 소										② 해당란에 상황확인연도를 ○ 표내 에 기록한다. 예 : ③ 단, 번기록시의 전시항 은 × 표로 처리한다.				증 감 치 리			
병력자 번호 (색인번호)	이 름	주민등록번호	성 별			현 주 소	+ -	활동상 여부	활동상 여부	비 활 동 상	MB	PB	오 쳐 르	전세수 입주자 (세번 경우)	제 전 치 리		
			남	여													
등 재 년 월 일														제 년 월 일			

제36回(25/30)

[제9호 서식] 한센사업대상자 변동사항보고서

한센병전문진료기관명:

20 **한국** 문화

한센사업대상자 변동사항보고서

이 서식은 월별로 보고하되, 한센사업대상자의 증감사항이 발생한 경우와 서비스구분이 변경 되었을 때 한센사업기록표와 함께 보고한다.

- ①란은 보건소, 정착, 외래, 입원으로 구분하고
 - ②란은 신규, 전입, 추가, 사망, 이민, 전출, 거주불명, 서비스종료 등의 사유를 적되, 증가·감소를 구분하며
 - ③란은 요치료→서비스대상자로의 서비스구분 변동자를 기재한다.

(규격 210mm×295mm)

(제10호 서식)

한센병이동진료반 활동계획표

[제10호 서식] 한센병이동진료반 활동계획표

기관명 :	① 한센사업장지 역현 ·보건소명 ·정착 마을 [지역수]	② 월별출장일정(숙박은 개회일 앞에 표시)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보건소()													
정착마을()													
비정기() 집단감진() 개()													
월별출장일수 계													

작성요령 : 1. 다음년도 이동진료계획을 수립하여 10월말까지 한국한센복지협회지부와 한센사업자료실에 제출한다.

2. 지역명란은 보건소, 정착농원 순으로 뮤어 정리 한다.

집단감진은 용지의 끝이나 별지를 사용하되 월별난에 일자와 지역명 예)

9, 10
등으로 기재
상명고교

[제11호 서식] 부랑한센인 지도관리**부랑한센인 지도관리**

작성: 한국한센총연합회

지부

20 년 /4분기

처리 일	인적사항			거주구분			부랑생활지역			처리내용		
	이름	나이	성별	재가	정착	입원 보호	군내	타 시군	타 시도	소로도 병원	훈방	기타

(규격 210mm×295mm)

[제12호 서식] 병력지(표준)

병력지 (표준)

No.

이름	성별		생년월일		등재일자	사업대상자병력지번호			
	남·여		(만 세)		.				
결혼관계	직업	현주소				주민등록번호			
미혼, 결혼, 이혼						-			
학력	생활정도		출생지	종교	발병연령	가족내 감염원			
상, 중, 하, 요구호	상, 중, 하, 요구호				세	유 무			
발견방법		치료경력	주치약명	주치약	투여기준량 치료기간				
접촉, 자의, 정보, 집중, 기타() 유·무	주				mg	년	월		
초발증상		초발부위			장애도(노동력 기준)				
					I	II	III	IV	V
진단(병형)	변경진단 및 연월일			나균(세균지수)		균음전 연월일			
ITBL	ITBL(. . .)								
작성일자	작성기관			작성자명(의사)		서명			

○ 변동사항 및 특이사항

No.

을 호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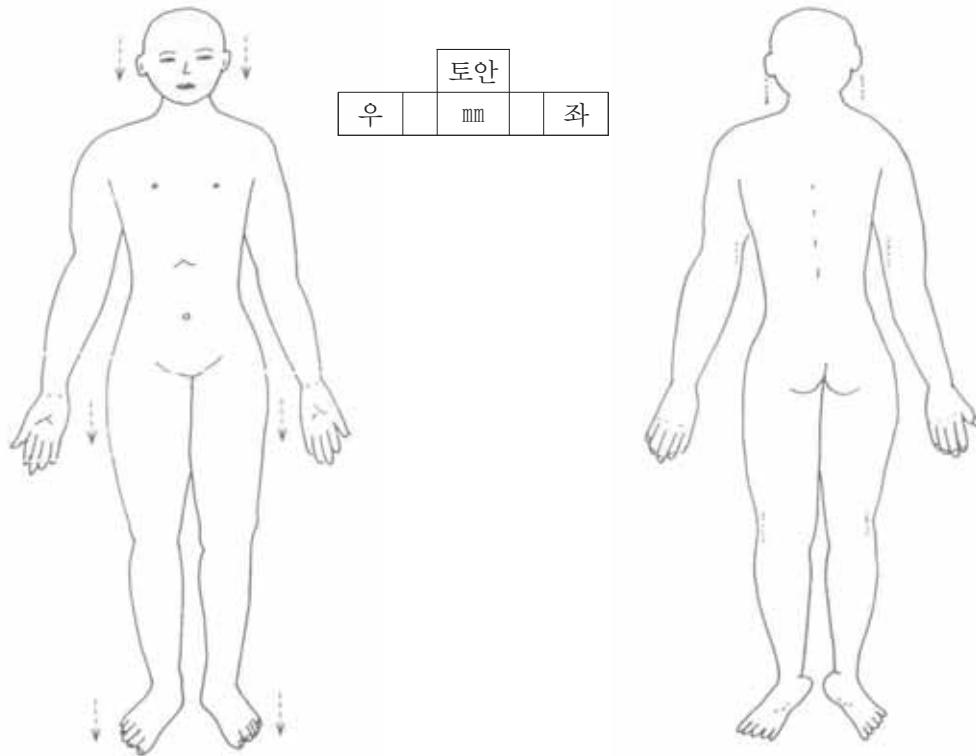
[제12호 서식] 병력지[표준] 별지앞면

※진찰 초기 또는 경과 관찰 등 정밀 진찰 시에 작성하며 병력지에 첨부한다.

정 밀 진 찰 도 해

작성자:

작성일자:



- 1) 안면신경마비, 수·족 하수는 검진도해를, 신경간비후 및 통증은 배면도해를 이용한다.
- 2) 활동성 병소(침윤·경절·홍반·신경간 통증궤양은 홍색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침윤(홍색) 결절(홍색) 반 접 지각이상 경계 · 반접 · 지각이상	 토 안 실 명 미모탈락 신경간비후(통증·홍색) 수지탈락	 하 수 수지굴곡 수지강직 골 흡 수 피부궤양 (홍색)	 반 혼 근육위축 여성유방 비량함몰 수족절단
---	--	---	---

환자성명:

[제12호 서식] 병력지[표준] 별지뒷면

W H O 장 애 도												노동력기준 장애도		
등급	손			발			눈			후두침범 1 2 유 무	비랑합몰 1 2 유 무	안면마비 1 2 유 무	평균지수 1도2도3도	
	증상	좌	우	증상	좌	우	증상	좌	우					
1도	1.지각마비			1.지각마비			1.결막염						1. 한센병증상은 있으나 일반인과 거의 다름없는 노동력을 지닌 자	
2도	2.궤양 및 손상			2.궤양			2.토안							2. 수족에 약간의 기능장애가 있으나 가벼운 노동수행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자
	3.기동성 ‘갈고리손’			3.갈고리발			3.홍채염 ‘각막염’							3. 수족의 기능장애 또는 기타 장애로 노동수행에 지장이 많으나 건강인의 절반정도의 노동력을 갖고 있는 자
	4.경도 골흡수			4.족하수			4.경도 시력장애							4. 노동력은 완전 상실하였으나, 평상시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거동할 수 있는 자
3도	5.수하수			6.경직·경축			5.중증 시력손실							5. 심한 신체장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간호 또는 도움이 없이는 조금도 거동할 수 없는 자
	6.관절경직			7.중증 골흡수			6.실명							
	7.중증골흡수													
최고 지수	8.			8.			7.							
종합소견			<input type="checkbox"/> 재발 <input type="checkbox"/> 내성			투약계획			용량 빈도 기간					
관리대상			병형: 세균동태:						Dapsone: Rifampicin:					
									Clofazimine: _____					
기타소견			관리계획											

[제13호 서식] 체류외국인 한센병환자 관리상황보고서

체류외국인 한센병환자 관리상황보고서

한센병전문진료기관명:

작성일자: 20 년 월 일

인 적 사 항	국적			
	성명	영문 또는 한자이름 (성 : 이름:) 한글이름 (성: 이름:)	성별	남여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여 권	여권번호			
	여권유효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비자유효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입국일	20 년 월 일	입국목적	공무 · 방문 · 관광 · 취업 · 기타
체 류	회사이름			
	소재지			
	전화번호		직업	
병 력	균동태	양성() · 음성	병형	I. T. B. L, MB. PB
	발병년도		치료경력	
비고:				
- 한센사업자료실 기재란 -				
<input type="checkbox"/> 불법 <input type="checkbox"/> 적법				
◆ 질병관리본부 보고일자: 20 . . .				
(규격 210mm X 295mm)				
* 이름은 여권에 기재된 영어이름(FULL NAME), 모국어이름을 적고 한글이름이 있는 경우에는 한글이름도 기재한다. * 여권 및 체류사항은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재토록 한다. * 병력사항의 양성()란에는 세균지수를 기록하고 비고란에는 임상 및 관리소견을 기록한다. * 한센사업자료실 기재란은 한센사업자료실에서 기록한다.				

[제14호 서식] 접촉자명단 및 검진기록부

접촉자명단 및 검진기록부

한센병전문진료

기관명

* 감염지표구분은 신규 환센사업대상자 중 활동성 환자, 환센사업대상자 중 양성자 순으로 구분 기록함.

* 접촉자 이름란에는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자 모두를 기록한다.

* 비고란에는 검진을 실시치 못한 이유를 기재토록 한다.

(본인 또는 기관 한센사업 대상자의 불응, 장기출타 등)

[제15호 서식] 접촉자 검진실적 보고

접촉자 검진실적 보고

한센병전문진료기관명:

20 년 분기

감염지표 (한센사업 대상자수) (A)	접촉자 수 (B)	검사 내용				검진실적 (D)
		임상진찰 (C)	세균검사	PGL- I 항체검사	DNA PCR	
명	명	명	건	건	건	%

* 이 실적은 제14호서식 접촉자(가족, 친지) 명단 및 검진기록부를 이용하여 집계한다.

* 분기말 시점에서의 연간누계를 기록한다.

* 검진실적 D = (C / B) × 100

[제16호 서식] 지출결의서

지 출 결 의 서

작성 :

20 년도 예산

2

총 9

대 표

세출과목

•

결

재

	총 무	대 표
결 재		

[제17호 서식] 인건비 지급 내역서

인건비 지급 내역서

[제18호 서식] 근무상황부

근 무 상 황 부

20 년 월 근무상황부						
정착마을명 ()			총 무		대 표	
담당분야: ()						
성 명: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제19호 서식]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 선정기준표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 선정기준표

○ 시설명:

선정항목	평점	배점	배점 기준표
계		100	
사업의 시급성 (정밀안전등급)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급: 40 ◦ D급: 20 ◦ C급: 10
기능보강사업 경과연도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이상: 30 ◦ 15년 이상 ~ 20년 미만: 20 ◦ 10년 이상 ~ 15년 미만: 10 ◦ 10년 미만: 0
정착마을내 한센간이양로주택 설치유무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설치지역: 10 ◦ 설치지역: 5
정착마을내 한센인대비 한센간이양로주택수 보급현황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명 입소(비율): 10 ◦ 1~10명 입소(비율): 9 ◦ 11~20명 입소(비율): 8 ◦ 21~30명 입소(비율): 7 ◦ 31~40명 입소(비율): 6 ◦ 41~50명 입소(비율): 5 ◦ 51~60명 입소(비율): 4 ◦ 61~70명 입소(비율): 3 ◦ 71~80명 입소(비율): 2 ◦ 81~90명 입소(비율): 1 ◦ 91~100명 입소(비율): 0
사업의 적정성 및 효과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 10 ◦ 중: 5 ◦ 하: 2

※ 정착마을 내 한센인 세대수 30세대이상, 한센인 1세대 인구수가 50명 이상일 경우에만 신축 가능

※ 동점일 경우 1순위 사업의 시급성, 2순위 기능보강사업 경과연도 순으로 우선배정

※ 정밀안전등급: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준

[제20호 서식] 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

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

지역:

정착마을명:

점검일:

구분	수행자	구비서류	점검내용	점검결과
예산	시 · 도지사	○ 국고보조금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공통	시 · 도지사	○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 유무 ○ 보조사업기간 ○ 직인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유 □ 무 □
		○ 사업검토의견서	○ 유무 ○ 사업계획 타당성 ○ 사업수행능력 ○ 자부담화보 방안 ○ 직인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유 □ 무 □
	개인 또는 법인	○ 보조사업수행계획서	○ 유무 ○ 직인 날인	유 □ 무 □ 유 □ 무 □
신 · 증축	개인 또는 법인	○ 시설 신·증축 등 보조 사업 수행 계획서 -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 공사비 내역서	○ 유무 ○ 설치장소 ○ 부지 확보방안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 유무 ○ 건물용도	유 □ 무 □ 적정□ 부적정□
			○ 유무 ○ 건물구조	유 □ 무 □ 적정□ 부적정□
			○ 건물구조(사업량)	적정□ 부적정□
			○ 소요비용	적정□ 부적정□
			○ 세부 산출근거	적정□ 부적정□
			○ 재원 조달방법	적정□ 부적정□
			○ 사업별 추진일 정	적정□ 부적정□
			○ 유무 ○ 관계자 날인	유 □ 무 □ 적정□ 무 □
			○ 유무 ○ 소유권 ※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제21호 서식]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질병관리본부(시·도지사/시·군·구청장) 귀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5.

시도지사(시·군·구청장, 개인 또는 법인대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기타 _____
- 사업자 명칭:
- 사업자 대표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시설명:
- 소재지:
- 시설장: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 사업목적:
- 사업량:
- 사업장소:
- 사업기간: 20 . . . ~ 20 . . . (년 개월)
- 사업비: 천원(계속사업인 경우 총기간 사업비 천원)
 - 국고: 천원
 - 지방비: 천원(시도 천원, 시군구 천원)
 - 자부담: 천원

붙임. 1.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부
2.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1부
3. 기타 필요서류

[제22호 서식]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명 : (- -)
- 시설장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 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 사업명 :
- 사업량 :
- 사업장소 :

4. 사업에 관한 의견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장소의 적정성 :
- 사업량의 적정성 :
- 사업비의 적정성 :
- 사업전망 :
- 건축부지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등 검토사항 :
- 기타 국고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한 의견 등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법인대표)

[제23호 서식]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신축, 증축, 개보수)

1. 시설 현황

- 시설명 : (대표자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입소자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2013. . . 현재)
-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도별	건축년월일	건물구조	연면적(m ²)	비고
계				
.....				

※ 법인 명의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도록 작성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업 목적 :
- 사업의필요성 :
- 사업의효과 :
- 사업추진일정 :
- 사업규모 :

용도별	사업규모	사업비(천원)				산출내역
		계	국고	지방비	기타	
계						
.....						

※ 시설보강 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계"란만 기재, 자부담이 있는 경우 기타란에 기재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담방법	비고
.....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시·도지사(시·군·구청장/법인대표)

[제24호 서식] 감리원[기술직공무원] 설계 검토 의견서

감리원(기술직공무원) 설계 검토 의견서

시설명:

공사명:

공사위치:

건물구조:

건물용도:

설계검토의견:

공사비내역 적정여부:

건축허가 가능여부:

기타 검토의견:

20 . . .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 (인)

귀하

[제25호 서식]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군·구청장) 귀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시·도지사(시·군·구청장/법인대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기타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설명 : (☎ - - -)

- 소재지 :

○ 시설장 : (☎ - - -)

3. 당초·변경 대비표

변경대상	당초	변경	증(△)감	비고

4. 변경사유

별첨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공무원)현장확인 결과 보고서 사본 1부

[제26호 서식] 한센간이양로주택 현황

한센간이양로주택 현황

(12월 현재)

간이양로주택 등 현황(작성 예시)

농원명	시설명	건립년도	지원처	건립비 (억원)	면적(m ²)	대지 면적(m ²)	건물 면적 (m ²)	영양 급식비 (명)	보조원 (명)	취사· 세탁원 (명)	난방비 (세대)	유지보수비		정원 (세대/명)	입주인원 (세대/명)	동호
												연도	유지보수비 (천원)			
한센농원	양로시설	1987	일본구라회	1,4	250	100	3	1		1				1/2	1/2	현인101동 /101호
	양로시설	1996	서울특별시	2,4	300	150	5	-		1				15/30	12/26	현인101동 /102호
	양로주택	2011	서울특별시	2,4	300	150	6	-	-	-				1/2	1/2	현인102동 /101호
양로주택	국고50%, 지방비50%	1998	국고50%, 지방비50%	1,4	250	100	2	2	1	1				1/2	1/2	익산101동 /101호
	양로주택	1998	국고50%, 지방비50%	5,55	1,200	320	2			1				1/2	1/2	익산102동 /101호
	양로주택	2008	국고50%, 지방비50%	2,0	250	80	2			1				1/2	1/2	익산102동 /102호
성곡농원	양로주택	2004	국고50%, 지방비50%	2,64	250	100	2	1	1	-				10/20	8/14	성곡101동 /101호
	양로주택	2006	국고50%, 지방비50%	2,0	250	80	2	-	1	1				1/2	1/2	성곡102동 /101호

[제27호 서식]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1 면]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input type="checkbox"/> 신규(제공)신청 <input type="checkbox"/> 변경신청 <input type="checkbox"/> 연장신청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 자유)	연락처 (휴대전화 등)			
※ 배우자 관계 ¹⁾ (<input type="checkbox"/> 법률혼 <input type="checkbox"/> 사실혼 <input type="checkbox"/> 사실상 이혼)								

1) 해당자에 한함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

급여 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보장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²⁾	
						※대표계좌기재	
통지방법	<input type="checkbox"/> 서면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E-mail)	<input type="checkbox"/> 문자메시지서비스(SMS)	<input type="checkbox"/> 기타()			

위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2)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안 내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범위 본인, 가족,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
--------	---

신청시 구비서식	추가제출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3.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제출하는 곳 관할 보건소	

유의사항

- 보장 처리기한은 30일(60일까지 연장 가능) 이내입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 「기초연금법」 제19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장애인활동복지지원법」 제29조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기초연금법」 제29조제3항,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3항4호, 「장애인연금법」 제25조제3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9조, 「장애인활동복지지원법」 제39조 「의료급여법」 제35조제4항 등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파료에 처합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정당한 권리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 대신 대가성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 제23조, 「의료급여법」 제3조의3, 「기초연금법」 제11조,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제11조제4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7 등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 「기초연금법」 제31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27조에 의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조사 시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재산, 인적정보 등을 우선 적용 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향후 제공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복지서비스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및 보호 실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기타 보호의 실시에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선박·차량·주택분양권·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신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 일용근로자소득내역·사업자등록증·장애인여부 및 장애의 정도·고용정보·근로장려금·보건의료정보·노인장기요양보험·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출입국·병무·교정·초·중·고학생 재학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하며, 같은 법 제33조의8에 따라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폐기함을 고지합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_____ (대리신청의 경우)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제28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p>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사업 : 질병관리본부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사업</p> <p>2. 개인정보화일(DB)수집의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관리본부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동 사업을 신청한 대상자의 관할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관리) - 동 사업과 관련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내역, 건강보험정보 등의 자료를 제공받을 때 활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타법에 의해 실시되는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의 부정·중복수급여부 자료를 제공받을 때 활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 시 자료를 제공받을 때 활용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확인 시 자료를 제공받을 때 활용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사업 정책에 필요한 경우 활용 <p>3. 개인정보 수집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지원 대상자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자메일주소, 계좌번호, 주민등록등본) - 타법에 의해 실시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수혜이력으로서 유사서비스 종복수혜이력 <p>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사업을 신청한 대상자의 관할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관리 시 : 영구 			
본인은 ()년 ()월부터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보유기관으로부터 수집·제공을 포함)할 것을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년 ()월부터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민감정보를 제공(보유기관으로부터 수집·제공을 포함)할 것을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년 ()월부터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보유기관으로부터 수집·제공을 포함)할 것을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p>5. 제3자에게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확인 및 타법에 의해 실시되는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의 부정·중복수급여부 확인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처리결과 및 수혜이력 정보 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조사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음(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제공할 수 있음(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6. 제3자에게 제공 시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건강보험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 시 : 2년
 - 타법에 의해 실시되는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의 부정·중복수급여부 확인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제공 시 : 5년
 - 소득·재산조사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제공 시 : 2년
 -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제공 시 : 2년

본인은 ()년 ()월 부터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 등록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7.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동의 여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5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하여 동법 제22조5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8. 개인정보 취급자의 연락처 :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업무담당자

9. 개인정보 동의 확인여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동의 확인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10. 제가한센인 생계비지원사업에 등록된 개인의 정보화일(DB)은 위의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입)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 귀하

[제29호 서식]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1. 정보제공의 범위와 사용목적

- 정보제공 범위
 - 조사기준일 동의자 명의의 소득 및 재산 내용
- 사용목적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산조사

2. 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자

- 환자 인적사항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동의확인 (서명)
			인

- 동의자 범위(조사대상자 범위) : 환자 가구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동의확인 (서명)
			인

3. 동의서의 유효기간 : 작성일로부터 2년 뒤 소득재산조사 시행 년도 말

4. 동의서의 작성년월일: 년 월 일

5.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 _____도·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_____시·구·군 보건소

○ 동 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및 보호실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 상태에 관한 정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수혜 이력에 관한 정보, 기타 보호의 실시에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 33조의 8에 따라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환자가구) _____ (서명 또는 인)

_____ 시·구·군 통합조사팀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지원대상자격 박탈
- 동의자(환자, 환자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정보 등은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사업 지원자대상 선정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30호 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서식2호-공통서식 별지제1호의2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성명 ¹⁾						
소 득 사 항	근로 소득	상시근로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체배작물명)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자영업)	원 ()	원 ()	원 ()	
	재산 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 ²⁾	원	원	기타 (지자체 지원금등)	원
	재 산 사 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원			토지
		선 박	원			입목재산
		항공기	원			어업권
		자동차	<input type="checkbox"/> 차량명() <input type="checkbox"/>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input type="checkbox"/> 전·월세보증금(원)	<input type="checkbox"/> 상가보증금(원)	<input type="checkbox"/> 기타(원)	
동산		<input type="checkbox"/> 소 (마리, 원) <input type="checkbox"/> 돼지(마리, 원) <input type="checkbox"/> 기타가축(마리, 원) <input type="checkbox"/> 종묘(원) <input type="checkbox"/> 기계·기구류(원) <input type="checkbox"/> 기타(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회원권		원 원 원	
가구특성 지출요인 ³⁾	<input type="checkbox"/>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원) <input type="checkbox"/>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원) <input type="checkbox"/>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제활보조금 (원) <input type="checkbox"/>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가구특성지출요인 : 실제 소득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요인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제활용품)

[제31호 서식] 고용임금확인서

[제32호 서식] 무료임대확인서

무료임대확인서				
임 차 인	성명	①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통반)		
	임대인과관계	<input type="checkbox"/> 임대인이 임차인의 부양의무자에 해당 (관계 :) <input type="checkbox"/> 임대인이 임차인의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관계 :) * 부양의무자란 임차인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계부모)		
	임대인과의 주민등록 관계	<input type="checkbox"/> 임대인과 동일가구로 주민등록 함 <input type="checkbox"/> 임대인과 분리하여 별도로 주민등록 함		
무료 임대 내용	무료임대현황	<input type="checkbox"/> 임차인이 방, 주방, 욕실 등 주택 전체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임차인이 방, 주방, 욕실 중 일부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무료임대기간	20 . . . ~ 20 . . . 까지		
	현물(집수리)지원 동의 여부	<input type="checkbox"/> 주택 전체 무료임차자가 현물지원(수선서비스) 받는 것에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주택 전체 무료임차자가 현물지원(수선서비스) 받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을 위 임차인에게 무료로 임대를 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 대 인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_____ 읍·면·동장 귀하				

[제33호 서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제34호 서식]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대상자 소득재산 조사 의뢰서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대상자 소득·재산 조사 의뢰서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환자기구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의 재가한센인 생계비 대상자 및 가구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보장의뢰자 : 사회복지사/간호사		○○○		
확인자 : △△보건소장		○○○		
연락처 :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주소 등)				

[제35호 서식]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대상자 소득재산 조사 확인결과 통보서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대상자 소득·재산 조사 확인결과 통보서				
확인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구원인적사항		재산		
성명	주민등록번호	일반재산	자동차	
성명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귀하(기관)가 보장 의뢰한 위 대상자에 대한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대상자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_____ 시·군·구 통합조사팀				
(조사자 소속 및 직위: _____ 성명: _____ (전화: _____))				

[제36호 서식]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사업 결과 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사업 [<input type="checkbox"/> 결정(적합) <input type="checkbox"/> 결정(부적합) <input type="checkbox"/>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신청인/ 세대주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 적합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이 중지·변경되거나 급여가 감소 될 수 있습니다. - 중지 :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신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기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해당 사실을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등 - 변경 :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및 근로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 급여감소 : 3개월 중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경우 등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적합					
신청내용	보장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부적합사유	<input type="checkbox"/>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	<input type="checkbox"/> 부양의무자 부양기준 초과			
	<input type="checkbox"/> 수급자격심의결과 수급자격 미인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안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복지서비스·급여의 실시가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 등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사회복지서비스·급여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할 시는 사회복지서비스·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정지·중지·상실					
<input type="checkbox"/> 변경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input type="checkbox"/> 소득·재산·근로능력 변동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정지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input type="checkbox"/>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해외체류기간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경우 60일 이상) <input type="checkbox"/>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input type="checkbox"/>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중지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input type="checkbox"/>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상실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input type="checkbox"/> 사망 <input type="checkbox"/>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input type="checkbox"/> 국적상실 <input type="checkbox"/> 국외이주 <input type="checkbox"/>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input type="checkbox"/> 기타()			
비고					
년 월 일 담당자 : 직급 문의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 ² (재활용품))					

[제37호 서식]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대상자 관리대장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대상자 관리대장

○○시·군·구 ○○읍면동

※ 비고란 : 급여중지된 경우에는 급여중지사유를 기재. 특히, 타 시·군·구로 이동했을 시에는 타 시·군·구 지명을, 또는 이동한 지역을 모를 경우 '전출지 미상'으로 기재

[제38호 서식]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 시설운영위원회 제 차 정기(수시) 회의			
일 시		장 소	
참석자			
회의내용			
정책건의			

[제39호 서식] 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

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

○○시도 ○○ 시군구 시설정책 건의사항	
운영위원회 정책건의	
시군구 정책건의	
시도 정책건의	

[제40호 서식] 요치료자 및 연도별 치료종결 현황[지역협의회 보고서식]

요치료자 및 연도별 치료종결 현황

수신 권 위원장
보고기관 명

1) 년 월 현재 현황

요치료자		투 병 기 간					
		계	5년이하	6년~10년	11년~20년	21년~30년	31년이상
재 가	MB						
	PB						
정 착	MB						
	PB						
보 호	MB						
	PB						
총 계	MB						
	PB						

※ 요치료자의 투병기간: 발병시점에서 현년도까지 - (비투약기간 포함)

2) 연도별 치료종결 현황

연도	구분	MDT 종결협의
2012		
2013		
2014		
2015		
2016		
현년도		

<참고> 요치료자 중 치료종결 대상자를 파악하여 향후 한센사업협의 계획에 활용코자 함.

[제41호 서식] 한센병 치료종결 협의 의뢰서[협의 서식 1호]

한센병 치료종결 협의 의뢰서

수 신 : 권 위원장

한센병치료종결협의를 희망하는 자의 명단을 제출하오니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협의대상 및 내역

구 분	협의요청 대상자수	총 병력년수		
		<5년미만	5년≤	10년≤
MDT종결판정협의				

2. 대상자 명부 : 협의서식 2호(제43호 서식(협의용 : 3~6부, 회신용, 중앙보고용))
...별첨

3. 한센사업기록표 원본 및 사본(배면투약란 포함) 3~6부...별첨

년 월 일

기관명 및 기관장 : (서명)
책임 담당의사 : (서명)

[제42호 서식] 한센병 치료종결 협의결과 확인 통보[협의 서식 1호]

협의결과 확인 통보

수 신: ① 해당 한센병전문진료기관
② 한센사업자료실

협의판정내역

구 분	협의요청자수	판정결과	
		가(可)	보 류
MDT종결판정협의			

이상과 같이 협의판정하였으므로 협의대상자명부(협의서식 2호 – 위원장서명필(제43 서식))를 첨부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지역협의회위원장 (서명)

[제43 서식] 치료종결요청 대상자 명부[협의서식 2호]

치료종결요청 대상자 명부

기 관 명 :

제출일자 : 년 월 일

적격판정

명 중 명

협의위원

확인서명

[제44호 서식] 한센병 전문교육 대상자 명단

한센병 전문교육 대상자 명단

■ 과정(반)명 :

■ 기관(소속)명 :

소 속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한국한센복지협회 교육이수내역	
					연도	과정(반)명

[제45호 서식] 중요재산 현황

중요재산 현황

중앙관서명	
세부사업명	
재산명	
유형	
목적(용도)	
주소	시도
	상세주소
면적(m^2)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	
현재가액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3.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11>

I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지원 사업개요

< 추진 경과 >

- 한센인피해사건(단종, 낙태, 폭행, 강제노역 등)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등 지원법 제정('07.10.17 공포, '08.10.18 시행)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동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국무총리소속)와 진상규명실무위원회 운영으로 피해 사건 신고·접수 및 피해자 조사 실시('09.3~)
-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결정('12.1.12)
 - (지급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급금액) 예산 범위 내에서 매월 정액(150천원) 지급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15.12.29 공포, '16.3.30 시행)
 - (제명 변경) "피해자생활지원"을 "피해자 지원"으로 변경
 - (지급대상 확대) 소득에 관계없이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
 - (용어변경) "생활지원금"을 "위로지원금"으로 변경

사업 목표

-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위원회 결정)에게 위로지원금 지급하고,
- "계속치료"나 "상시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복지증진 도모

사업 대상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피해자(생존자 본인에 한함) 중
 - (위로지원금) 소득에 관계없이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
 - (의료지원금) 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자

1. 기관별 역할

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

-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 피해자 신청 접수, 면담조사, 심의 · 의결 및 피해자 결정통지
- 의료자문단 운영, 의료지원금 신청 접수 및 지급 결정
- 피해자 관리, 통계 등

나. 보건복지부

- 예산 편성 및 자치단체 예산 배정
- 법령 개정, 사업계획 및 지침 수립 등 사업총괄
-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운영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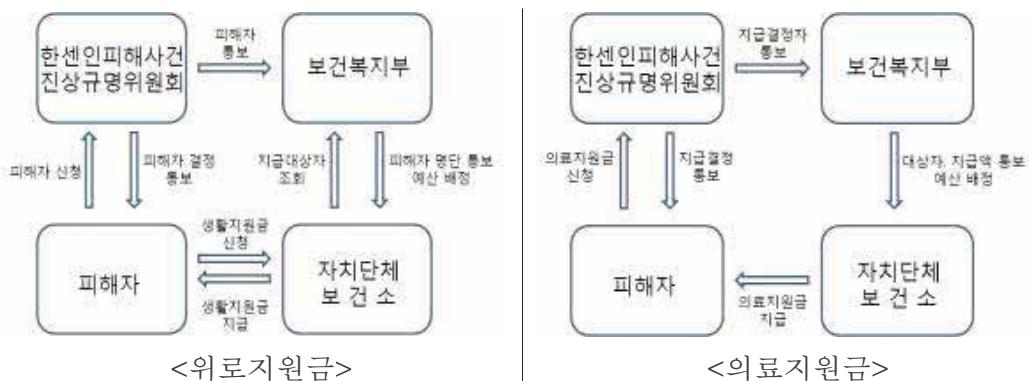
다.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시

- 예산 재배정 및 시 · 군 · 구 사업 총괄

라. 시 · 군 · 구 보건소

- 위로지원금 지급 신청접수, 위로지원금(의료지원금) 지급
- 지급대상자 관리(자격 · 변동관리)
- 위로지원금(의료지원금) 환수

2. 사업추진 체계



3. 세부 업무처리 절차

□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가. 위로지원금

- (신청방법) ①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보건소에 신청 → ②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확인 → ③ 본인 통장으로 지급
 - * 대리인 등 다른 명의 계좌로 입금 금지
- (구비서류) 피해자결정통지서,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피해자 본인명의 계좌(통장사본)

나. 의료지원금

- (신청방법) ①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실무 위원회에 신청 → ② 지급금액 산정 및 통보 → ③ 관할보건소에 해당자 명단 및 금액 통보, 예산 재배정 → ④ 본인 통장으로 지급
- (구비서류)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진단서, 향후 의료비 추정서

□ 지원내용 및 지급시기

가. 위로지원금

- (지급액) 월 15만원
 - (지급일) 매월 2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 (지급기준일) 매월 1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 신청 월 지급기준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당월부터 지급
- (예) 4.15일 신청한 A → 4.25일부터 지급(당월 지급효력 발생)
4.16일 신청한 B → 5.25일부터 지급(익월 지급효력 발생)

나. 의료지원금

- (지급액) 실무위원회에서 지급 결정한 금액
 - * 향후 치료비, 개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입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
- (지급시기) 복지부에서 명단 및 지급액을 통보한 시점
 - * 추경, 예산 재배정 등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가능

□ 행정사항

○ 대상자 발굴 및 신규 등록

- 각 광역 시·도(시·군·구), 한센총연합회, 한센복지협회 등은 추가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업 변경사항 적극 홍보
- 사업대상자 신규 접수 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로 사망, 전·출입 등 변동관리를 위해 필히 입력

○ 변동관리

- 사업대상자 생존여부는 매월 10일까지 별도 조회하고, 조회된 시점을 기준으로 생존여부 확정
 - 사망여부는 사망신고에 의한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며, 사망신고가 되지 않았더라도 공문 등 사망사실을 확인가능 한 경우는 사망으로 간주
 - 사망으로 조회된 경우 당해 월까지는 지급하고 익월 부터 미지급
- 대상자 거주지 변동 시 전출한 월까지는 전출한 지역에서 지급하고, 익월부터는 전입한 지역에서 지급

○ 실적관리

- 지급현황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며, 매 분기 지급현황(지급인원, 사망자 현황, 전·출입 현황) 및 집행내역 복지부에 보고
 - * 매 분기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보고(1분기의 경우 4.10)
-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위로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 사망, 전·출입 등 변동사항으로 인한 중복수급이 발견되었을 때 즉시 지원금 환수 조치

Q1. 2017년에도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신규 등록자에 한해 지급신청서를 받음(기존 등록자는 받을 필요 없음)

Q2. 피해자가 피해자결정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피해자결정통지서는 복지부에서 재발급하며, 민원인이 복지부에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 받기는 어려우므로 관할보건소에서 피해자 본인 확인 절차(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확인)를 거친 후 공문(피해자 성명, 주민번호 기재)으로 복지부에 재발급 요청

Q3.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언제부터 지급을 중지하면 되나요?

A.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위로지원금을 지급 하지 않음

(예) 피해자 홍길동씨가 4월 7일 사망한 경우

☞ 4월에 사망하였으므로 4월분까지는 위로지원금을 지급하고, 5월분부터 미지급

Q3-1. 사망자의 위로지원금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A. 본인(사망자) 통장이 사용 가능한 경우 본인통장에 입금하며, 본인 통장이 사용 불가한 경우 유족의 신청이 있을 시 유족에게 지급

* 유족의 범위 : 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통장사본을 제출받고 지급

Q4. 대상자가 전출을 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대상자 거주지 변동 시 전출한 월까지는 전출한 지역에서 지급하고, 익월부터는 전입한 지역에서 지급

대상자의 전입으로 추가 예산지원이 필요할 경우 시·도 및 복지부에 전출·입 상황을 보고하여 예산교부내역 조정

(예) 피해자 홍길동씨가 경북 의성군보건소에 위로지원금을 신청해 수급하다가, 7월 21일 소록도(고성군)로 전출한 경우

- ☞ 의성군 보건소에서 7월분까지 홍길동씨에게 위로지원금 지급하며, 8월부터 고성군 보건소에서 지급

Q5.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 거주지가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신청·접수 및 지급기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관할보건소로 하며, 실 거주지가 달라 신규 등록 시 민원인의 방문접수가 어려운 경우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관할보건소로 우편 접수하여 등록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센인"이란 한센병에 걸린 자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자를 말한다. 2. "한센인입소자"란 한센인으로서 국립소록도병원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에 격리 수용된 자를 말한다. 3. "한센인피해사건"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한센인입소자가 1945년 8월 16일부터 1963년 2월 8일까지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 부당한 감금 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수술을 당한 사건 나. 1945년 8월 20일을 전후하여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에서 소록도 간생원 직원에 의한 폭력으로 한센인이 사망, 행방불명 또는 부상을 당한 사건 다. 1962년 7월 10일부터 1964년 7월 25일까지 전남 고흥군 도양면 봉암반도와 풍양반도를 잇는 간척공사와 관련하여 한센인이 강제노역을 당한 사건 라.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결정한 사건 4. "피해자"란 위원회가 제2조제3호의 각 목에서 정한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자 중에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결정한 자를 말한다. 5. "유족"이란 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9조 (의료 지원금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는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u>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에 대하여 위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고</u>,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의료지원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③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와 의료지원금등의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의료 지원금)	<p>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의료지원금은 피해자 중 그 피해로 인하여 계속 치료 또는 상시 보호가 필요하거나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치료비: 국립종합병원·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법 제4조에 따른 한센인 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 등에서 향후 치료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유사 사례의 치료비를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2. 개호비(介護費):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관련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정부의 재정 사정, 실제 간병에 드는 비용 및 유사 사례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3. 보조장구 구입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보조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장구의 내구연수(耐久年數)에 따라 기대여명기간(期待餘命期間) 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 시가를 곱한 금액. 다만, 기대여명기간이 보조장구의 1회 내구 연수보다 짧을 경우에는 그 내구연수를 기대여명기간으로 본다. <p>② 제1항에 따른 치료비와 보조장구 구입비의 지급액을 산정할 때에는 법정 이율에 따른 단할인법(單割引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고, 보조 장구 구입 시 적용하는 기대여명기간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p>
제8조 (위로 지원금)	<p>① 삭제 <2016.3.29.></p> <p>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로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p>

참고 2

관련서식

[별지 제5호서식]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결정 통지서

피해 사건명	<input type="checkbox"/>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건(이른바 한센인 격리·폭행사건)			
	<input type="checkbox"/>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건(이른바 84인 학살사건)			
	<input type="checkbox"/>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건(이른바 오마도 간척사업사건)			
	<input type="checkbox"/>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건()			
	피해자	성명(한자)	()	성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본적				<input type="checkbox"/> 사망 <input type="checkbox"/> 행방불명
주소				
신고인	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해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피해 결정 내용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위원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 ² (재활용품)]				

[서식 제7호]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피 해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의료보장 현황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 1종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 2종 <input type="checkbox"/> 건강보험가입자		
장애인 등록현황		<input type="checkbox"/> 장애종류: <input type="checkbox"/> 장애등급:		
의료지원금 신청내용				
후유장애내용				
향후치료비		<input type="checkbox"/> 필요	<input type="checkbox"/> 불필요	
개 호 비		<input type="checkbox"/> 필요	<input type="checkbox"/> 불필요	
보조장구 구입비		<input type="checkbox"/> 필요	<input type="checkbox"/> 불필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1. 국립종합병원·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향후치료비 추정서 1부				

[서식 제8호]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

신 피 고 해 인 자 ()	성 명		주민등록번호	
	피해자와 관 계		피해자 결정일	
	주 소		전화번호	
신청대상		한센인사건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결정자		
수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관할보건소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1부피해자 본인명의 계좌(통장) 사본 1부주민등록등(초)본 1부
------	--

[서식 제9호]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

		접수번호			관리번호			
인 적 사 항	피 해 자	성명(한자)			생년월일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본 적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피해내용	사건명	<input type="checkbox"/> 『가』 목 <input type="checkbox"/> 『나』 목 <input type="checkbox"/> 『다』 목 <input type="checkbox"/> 『라』 목: _____					
		피해상태	<input type="checkbox"/> 사망	년	월	일	사망	
			<input type="checkbox"/> 행방불명	년	월	일	행방불명	
			<input type="checkbox"/> 후유장애					
			<input type="checkbox"/> 기타					
		당시연령		당시직업			사건발생 일시	
신 고 인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피해자와의 관 계							
의료 지원금 지급 결정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있음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향후치료비	<input type="checkbox"/> 불필요		<input type="checkbox"/> 필요 (지급내역:)					
개호비	<input type="checkbox"/> 불필요		<input type="checkbox"/> 필요 (지급내역:)					
보조장구구입비	<input type="checkbox"/> 불필요		<input type="checkbox"/> 필요 (지급내역:)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위원장								

4. 한센병 관련기관·시설·단체의 명칭 및 주소지 등

가. 한센병 관련기관

1) 질병관리본부

기 관 명	주 소 및 전 화
질병관리본부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의료 행정타운내 ☎ (043)719-7342, 7917, 7922 FAX (043)719-448

2) 한센병전문진료기관(22개)

가) 국립병원

기 관 명	주 소 및 전 화
국립소록도병원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해안길 65 ☎ (061)840-0500(代), FAX (061)840-0517

나) 한국한센복지협회 본·지부(12개소)

기 관 명	주 소 및 전 화
한국한센복지협회 본부 연구원	경기도 의왕시 원골로 59 ☎ (031)452-7091 ~4, FAX 455-6592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지부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170 ☎ (02)812-1894, FAX 815-6479
한국한센복지협회 부산지부	부산시 사하구 두송로 202-1 ☎ (051)262-7512, FAX 264-2058
한국한센복지협회 경기·인천지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98 ☎ (031)245-4430, FAX 251-6684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지부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157 ☎ (033)742-8718, FAX 744-8144
한국한센복지협회 충북·세종지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 850 ☎ (043)221-6685, FAX 252-9738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	대전시 대덕구 대전로 1424 ☎ (042)626-2765, FAX 627-7764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지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106 ☎ (063)251-9988, FAX 252-2689
한국한센복지협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시 동구 남문로 634 ☎ (062)222-3370, FAX 226-0370
한국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	대구시 동구 장등로 60 ☎ (053)755-2426, FAX 755-0860

기 관 명	주 소 및 전 화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본동로 33 ☎ (055)232-1243, FAX 232-5585
(진주진료소)	경남 진주시 남강로 1483 ☎ (055)752-1406, FAX 762-1408
한국한센복지협회 제주지부	제주도 제주시 신대로 128 ☎ (064)747-2559, FAX 748-2560

다) 민간한센병전문진료기관(9개소)

기 관 명	주 소 및 전 화	
가톨릭의대 한센병연구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가톨릭의과학연구원 별관1층 ☎ (02)2258-7453, FAX 595-2241	
가톨릭피부과의원	대구시 북구 구암로 15길 28 ☎ (053)320-2300, FAX 320-2370	
TLM코리아예수의원 <small>(1974년설립)</small>	대구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28길 31 ☎ (053)623-1001 ~ 5, FAX 654-7843	
여수애양병원	전남 여수시 율촌면 구암길 319 ☎ (061)640-8888, FAX 640-8899	
한센생활시설 <small>(6)</small>	여수애양병원 평안요양소 사회복지법인 <small>(1956년설립)</small>	전남 여수시 율촌면 구암길 319 ☎ (061)682-9595, FAX 690-8899
다미안의 집	사회복지법인 <small>(1991년설립)</small>	경북 영주시 봉화로 2 ☎ (054)632-6761, FAX 634-1061
안동성좌원	사회복지법인 <small>(1959년설립)</small>	경북 안동시 희망1길 17 ☎ (054)852-1448, FAX 855-8216
성라자로마을	재 단 법 인 <small>(1950년설립)</small>	경기도 의왕시 원골로 66 ☎ (031)452-5655, 451-2214, FAX 457-5146
대구애락원	재 단 법 인 <small>(1924년설립)</small>	대구시 서구 통학로 30 ☎ (053)564-0701 ~ 5, FAX 564-0705
산청성심원	재 단 법 인 <small>(1959년설립)</small>	경남 산청군 산청대로 1381길 10 ☎ (055)973-6966, 1636, FAX 973-6967

나. 한센인 자활단체

1) 한국한센총연합회

기관명	주소 및 전화	우편번호
한국한센총연합회 본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4(잠원동) 금정빌딩 603호 ☎ 1566-2339(代) FAX 1566-2032	06509
서울·중부지부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9길 10-20(방배동 202호) ☎ (02) 532-8011 FAX 532-9050	06573
부산시지부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4번길 3(2층) ☎ (051) 245-8207 FAX 245-8206	49246
인천시지부	인천시 부평구 서달로 298번길 60 ☎ (032) 515-5501 FAX 515-5503	21300
경기도지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총장로 11(402호) ☎ (031) 973-5329 FAX 973-3178	10523
전라북도지부	전북 김제시 서암동 갈공길 21 ☎ (063) 542-7822 FAX 545-7820	54370
광주·전남지부	광주광역시 북구 베들로 23 동방빌딩 3층 ☎ (062) 524-3485 FAX 524-3484	61239
대구·경북지부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4길 5 ☎ (054) 971-8975 FAX 977-8975	39859
울산·경남지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 1번길 18 ☎ (055) 255-4226 FAX 299-5201	51367

* 한국한센총연합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www.hansenkorea.org 참조

2) 정착마을

시.도별	마을명	한센사업대상자	주 소	우편번호
전국	83개소	3,098		
서울	1개소	소계35		
	현인마을	35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468길 45 ☎(02)445-2168 FAX)02-445-9656	06796
부산	4개소	소계161		
	구평마을	31	부산시 사하구 두송로144번길 10 ☎(051)262-3289 FAX)051-262-5281	49512
	계림마을	6	부산시 사하구 하신중앙로3번다길 7 ☎(051)263-4672	49479
	삼덕마을	47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삼덕길 2 ☎(051)721-4428	46048
	낙원마을	77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용수공단2길 64-20 ☎(051)727-0069 FAX)051-727-8910	46006
인천	3개소	소계150		
	부평마을	79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북로 41 ☎(032)522-0164	21515
	청천마을	42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달로298번길 60 ☎(032)515-5501	21300
	경인마을	29	인천시 부평구 동암광장로 12번길171 ☎(032)937-5519	21444
울산	1개소	소계54		
	성혜마을	54	울산광역시 북구 안시례길 28-1 ☎(052)292-4677	44212
세종	1개소	소계35		
	충광마을	35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등곡길 33-34 ☎(043)275-5011 FAX)043-275-4395	30078
경기	6개소	소계238		
	천성마을	47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241번길 6 ☎(031)840-1714 FAX)031-840-1871	11499
	포천마을	26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장지마을1길 5 ☎(031)531-0402 FAX)031-534-0405	11138
	성생마을	99	경기도 남양주시 회도읍 마치로 326 ☎(031)594-1640 FAX)031-594-4306	12178
	협동마을	18	경기도 남양주시 의안로 260번길 36-51 ☎(031)591-7384 FAX)031-591-1407	12220
	상록마을	19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상록안길 15 ☎(031)773-1069 FAX)031-773-1609	12537
	청산마을	29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대로 220 ☎(031)832-8022 FAX)031-832-8228	11022
강원	1개소	소계69		
	대명마을	69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하만종3길 23 ☎(033)742-3644 FAX)033-731-3644	26375
충북	1개소	소계11		
	청원마을	11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원통숲안길 70 ☎(043)214-0948	28152

시.도 별	마을명	한선사업대상자	주 소	우편번호
충남	2개소	소계57		
	성광마을	32	충남 논산시 광석면 장미루로 598길 26-3 ☎(041)732-8721 FAX)041-734-4120	32919
	영락마을	25	충남 서산시 운산면 군정동대길 135-3 ☎(041)663-4235	31950
전북	11개소	소계823		
	익산마을	341	전북 익산시 왕궁면 구은동길 5 ☎(063)291-2763 FAX)063-291-2761	54579
	금오마을	142	전북 익산시 왕궁면 금오1길 12 ☎(063)291-5066 FAX)063-291-2259	54577
	신촌마을	36	전북 익산시 왕궁면 구덕신촌길 49-1 ☎(063)291-2763 FAX)063-291-2259	54579
	상지마을	48	전북 익산시 함열읍 상지원길 67 ☎(063)861-0882 FAX)063-862-1814	54526
	비룡마을	59	전북 김제시 용지면 용수3길 3 ☎(063)543-4510	54333
	신암마을	47	전북 김제시 용지면 신암길 57 ☎(063)542-3773	54335
	신흥마을	46	전북 김제시 용지면 용수6길 124 ☎(063)542-3931	54333
	정애마을	40	전북 정읍시 이평면 궁동길 241-3 ☎(063)534-1516	56145
	보성마을	44	전북 남원시 보성길 76-2 ☎(063)632-3809	55729
	성자마을	10	전북 순창군 순창읍 성자길 116 ☎(063)652-0977	56051
	동혜마을	10	전북 고창군 고창읍 신월리 499-37 ☎(063)562-1308	56442
전남	8개소	소계290		
	현애마을	53	전남 나주시 노안면 현애3길 65 ☎(061)335-8367	58207
	호혜마을	65	전남 나주시 산포면 새벽길 30 ☎(061)336-2711	58218
	여천마을	38	전남 여수시 율촌면 구암길 289 ☎(061)609-8833	59606
	도성마을	77	전남 여수시 율촌면 도성길 54-12 ☎(061)682-7843	59606
	영민마을	14	전남 영광군 묘량면 덕흥길 83 ☎(061)335-0049	57056
	영호마을	30	전남 영광군 도포면 영호길 2-6 ☎(061)472-2992	58430
	성진마을	4	전남 장성군 북일면 성진길 56 ☎(061)393-0793	57229
	재생마을	9	전남 험평군 학교면 영산로 3933-50 ☎(061)323-3794	57160
	19개소	소계592		
경북	성곡마을	45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길 182-39 ☎(054)261-0807	37559

시.도 별	마을명	한센사업대상자	주 소	우편번호
경북	희망마을	67	경북 경주시 천북면 신당소토고개길 125-4 ☎(054)774-0549	38041
	삼애마을	86	경북 김천시 삼애 1길 17 ☎(054)431-0501	39555
	광신마을	8	경북 김천시 대덕면 화전 4길 257-25 ☎(054)435-3989	39698
	계명마을	13	경북 안동시 풍산읍 죽전길 309-11 ☎(054)841-3055	36620
	영천마을	23	경북 영천시 오수동 유봉길 37 ☎(054)332-9957	38840
	성심마을	22	경북 상주시 공검면 역곡 4길 22 ☎(054)541-1052	37131
	상신마을	13	경북 문경시 농암면 산신농장길 62-61 ☎(054)571-5980	37001
	금성마을	36	경북 의성군 금성면 도경 4길 127 ☎(054)832-7742	37357
	경애마을	47	경북 의성군 금성면 탑리 6길 39-15 ☎(054)832-8584	37353
	신락마을	13	경북 의성군 다인면 신락 3길 47 ☎(054)862-4884	37304
	신애마을	18	경북 영덕군 지평면 신애길 83 ☎(054)732-3439	36445
	명진마을	3	경북 청도군 매진면 중앙로 84-388 ☎(054)371-2061	38358
	성신마을	19	경북 성주군 초전면 용봉길 80 ☎(054)932-6988	40008
	칠곡마을	93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호 2길 33 ☎(054)972-3942	39865
	삼청마을	35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삼청 5길 35 ☎(054)973-6581	39871
	낙산마을	36	경북 칠곡군 지천면 새마을 1길 8 ☎(054)314-1849	39865
	강화마을	8	경북 봉화군 봉성면 봉명로 92-64 ☎(054)672-8854	36225
	벨엘마을	7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 4길 38-15 ☎(054)313-1817	39865
경남	25개소	소계 583		
	덕촌마을	54	경남 김해시 한림면 용덕로 114번길 26 ☎(055)343-0542	50853
	양지마을	23	경남 김해시 상동면 인양로 274번길 156 ☎(055)335-9749	50800
	낙동마을	19	경남 김해시 대동면 동북로 178번길 11-1 ☎(055)323-0613	50806
	대동마을	10	경남 김해시 대동면 동북로 227번길 12 ☎(055)323-0577	50806
	상동마을	13	경남 김해시 상동면 동북로 473번길 370-4 ☎(055)331-8219	50804
	득성마을	40	경남 함안군 함안면 괴산 2길 132 ☎(055)582-0950	52051

시.도 별	마을명	한센사업대상자	주 소	우편번호
	향촌마을	23	경남 함안군 칠서면 향촌길 123-2 ☎(055)587-5706	52003
	여명마을	33	경남 함안군 군북면 여명안길 41-6 ☎(055)585-5387	52066
	신생마을	61	경남 밀양시 무안면 신생길 107-20 ☎(055)354-2374	50405
	소혜마을	34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서1길 33 ☎(055)532-1987	50317
	신촌마을	11	경남 의령군 용덕면 용덕2길 40 ☎(055)573-4093	52128
	광명마을	19	경남 진주시 수곡면 원외길 22번길 ☎(055)759-3250	52646
	신평마을	17	경남 진주시 내동면 삼계로140번길 29-1 ☎(055)756-3771	52848
	소아마을	32	경남 진주시 일봉성면 반성로127번길 31 ☎(055)756-6824	52617
	영복마을	22	경남 사천시 영복1길 74-11 ☎(055)834-4587	52554
	염광마을	13	경남 사천시 정동면 염광길 150 ☎(055)852-5570	52922
	승의마을	35	경남 고성군 거류면 감서5길 96 ☎(055)672-1788	52922
	성진마을	17	경남 고성군 고성을 교사4길 171-8 ☎(055)674-6040	52931
	영신마을	43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애조원길 36 ☎(055)649-0192	53021
	팔복마을	5	경남 하동군 적량면 상동산길 8 ☎(055)883-8931	52321
	거창마을	13	경남 합천군 율곡면 영전1길 15-36 ☎(055)933-3841	50243
	협성마을	19	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산길 41 ☎(055)944-3174	50127
	금호마을	13	경남 거창군 거창읍 성산길 241 ☎(055)944-4347	50130
	성애마을	11	경남 함양군 수동면 금호길 17-10 ☎(055)962-0492	50015
	경호마을	3	경남 함양군 유림면 유림북로 530-3 ☎(055)962-1858	50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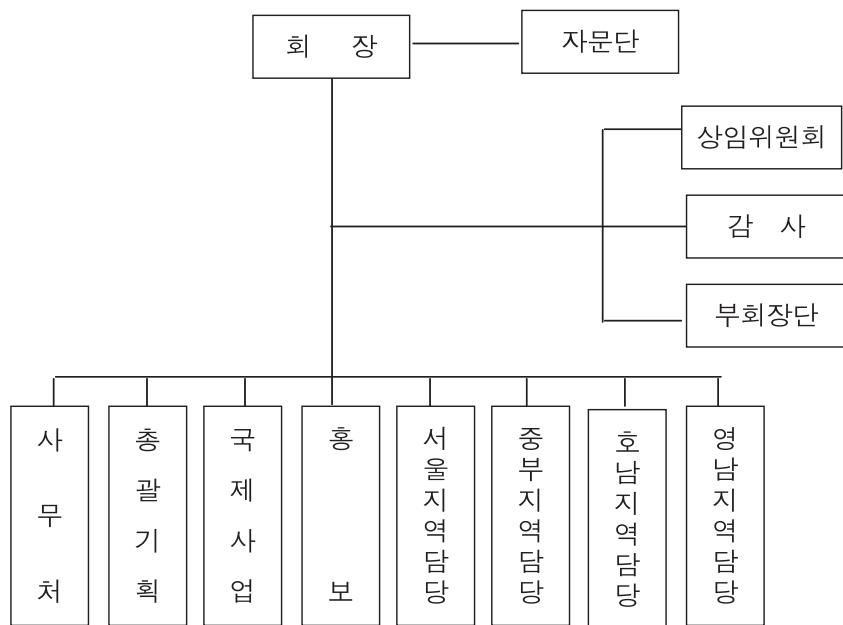
다. 봉사단체

1) 민간봉사단체

시 설 명	설립 구 분	설립 년도	주 소	전 화 번 호
유준의과학연구소	사 립	1959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 107	☎(02)393-4542 FAX 393-4543
한국기독교구라회	사 회 단 체	1970	서울 광진구 자양로 53길 30	☎(02)455-9060 FAX 447-9838
한국구라봉사회	사 단 법 인	1982	서울 송파구 가락로 65 (선일빌딩 2층)	☎(02)424-2875 FAX 424-2876
첨단과학의원	사 립	1990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2 (한신빌딩 B-113호)	☎(02)701-5047 FAX 701-5047
한국가톨릭나사업 연합회	사 회 단 체	1961	서울 마포구 양화로 8길 25-8 (성보빌라트 402호)	☎(02)3144-6311 FAX 3144-6312
천주교 구라회	사 회 단 체	1956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48 6-5	(031)841-2238

2) 한국 IDEA협회(세계 한센병력자들로 구성 설립된 단체)

-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법 31장에 등록된 국제 IDEA협회 한국지회임.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ntegration, Dignity and Economic Advancement)
- 설립목적: 자립정신과 경제발전으로 인간성회복 및 사회복귀를 위해 전 세계 한센병력자들로 구성 설립된 단체임.
- 사업목적:
 - 1) 한센병관련 편견해소 및 이해를 위한 홍보사업
 - 2) 경제발전으로 인간성회복
 - 3) 환자구료 및 학자금 지원
 - 4) 자녀 기술교육 및 취업알선
 - 5) 비정부단체와 연계사업
 - 6) 수혜자적 입장전환을 통한 미개발국 지원활동
 - 7) 한센병관리 성공사례 전수
 - 8) 미개발국과의 인적자원 교류
 - 9) 병력자 및 관계자 초청 선진산업현장 연수교육



5. 한센병 관련용어

가. 한센병의 호칭

- ① WHO를 비롯 한국, 일본 등 세계각국에서 Leprosy와 Hansen's Disease를 모두 사용하나, 용어순화를 위해 Hansen's Disease 사용을 권장한다.
- ② 사회적 용어로 사용할 때는
 - 한국, 일본, 미국은 한센병(Hansen's Disease: HD)으로 표현
 - 중국은 마풍(麻風), 독일은 아우샵쓰(Aussätzigen), 아랍국가는 조삼(ZOSSAM), 인도네시아는 패니키트구스타(Penikit-kusta)로 사용

나. 한센병력자의 호칭

- ① 임상의학적 측면에서는
 - arrested cases (정지된 환자)
 - cared cases (치유된 환자)
- ② 관리적 측면에서는
 - 일본: 元患者 또는 回復者
 - 한국: 한센사업대상자, 한센인
 - 영어권 (세계나학회)

PALs (Persons Affected by Leprosy): 한센병에 이환되었던 사람

다. MDT 종결(WHO: Completion of Treatment: COT = 치료종결)

- MDT(다제요법)에 의하여 활동성 임상증상이 치유·정지되어 투약을 종결시키고 한센병환자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임.

라. 서비스 종료 (WHO: Release from Control: RFC)

- 한센서비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된 자로서 본인 자유의사에 따라 서비스 종료를 희망하여 한센 서비스 대상자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임.

마. 한센병 관리분야 용어

Hansen's Disease	한센병: 공식 명칭으로 사용
leprosy	나병(癩病) : 醫學問 關係時에만 使用
leprosy control	한센병관리事業
leprosy patient	한센병환자(Hansen病患者)
leprosyarium	한센요양시설(Hansen療養施設)
invalid home	장애인 요양시설(障礙人 療養施設)
resettlement village	정착마을(定着마을)
contact person	접촉자(接觸者)
inactive	비활동성(非活動性)
arrested	정지(靜止)된
reactivation	재활성화(再活性化)
relapse	재발(再發)
subclinical relapse	불현재발(不顯再發)
subclinical infection	불현감염(不顯感染)
MDT : multidrug therapy	다제요법(複合化學療法)
DR : drug resistance	약제내성(藥劑耐性)
Persons affected by Hansen's Disease	한센인

바. 병형관계 용어

type classification	병형분류(病型分類)
PB : paucibacillary type	희균형(稀菌型)
SLPB: single lesion PB	단일병소 희균형(單一病巢 稀菌型)
MB : multi bacillary type	다균형(多菌型)
I : indeterminate group	부정형군(不定型群)
T : tuberculoid type	결핵양형(結核樣型)
B : borderline group	중간형(中間型群)
L : lepromatous type	나종형(癩腫型)
TT : polar—tuberculoid type	결핵양형(結核樣型)
BT : borderline tuberculoid type	근결핵양형(近結核樣型)
BB : mid—borderline type	중간형(中間型)
BL : borderline lepromatous type	근나종형(近癩腫型)
LL : polar—lepromatous type	나종형(癩腫型)
polar type	극형(極型)
sub polar	아극형(亞極型)
non polar type	비극형(非極型)
neural type	신경형(神經型)
dimorphous	이상성(二相性)
histoid type	조직구양형(組織球樣型)
mononeuritis	단발신경염(單發神經炎)

2017 한센사업지침

인 쇄 : 2017년 3월

발 행 : 2017년 3월

발 행 처 : 질병관리본부

발 행 인 : 정기석

편 집 인 : 고운영

담당팀장 : 김 현(043-719-7911)

담 당 자 : 오은정(043-719-7942)

편 집 :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에이즈결핵관리과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내 질병관리본부(우 28159)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 결핵관리과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내 질병관리본부
전화 043-719-7342, 7311 / 팩스 043-719-7339

질병정보 궁금할 때
김염병이 의심될 때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